



기본 | 20-16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Enhancing inter Ministry Linkage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김정희, 임세희, 함영진

기본 20-16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Enhancing inter Ministry Linkage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김정희, 임세희, 함영진

## ■ 저자

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김정희, 임세희, 함영진

## ■ 연구진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 외부연구진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임세희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 ■ 연구심의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

신익승 국토교통부 사무관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주거취약계층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가구의 주거 현황과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 및 한계 등을 분석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
- 2 아동·청소년 가구 중 약 60만 가구(11.0%), 노인·장애인 가구 중 약 62만 가구(1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부담 과다, 혹은 비주택에 거주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분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과 밀접히 관련
- 3 관련 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

## 이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주거지원 정책연계의 기본방향은 ‘연속성’, ‘포괄성’, 그리고 ‘효과성’, 실천방안은 법 제도 정비, 재정지원 확충 및 개선, 그리고 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 2 (기본방향 ① 연속성) 생애주기별 단절 없는 주거서비스 확보, 탈시설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중간단계 주거 공급 및 주거서비스 제공
- 3 (기본방향 ② 포괄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렴주택과 지원주택 공급 확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및 주택물색 도우미 지원 확대, 상담원의 민원 책임제 운영
- 4 (기본방향 ③ 효과성) 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정보시스템 개선, 공동 기획,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 단순화 및 매뉴얼 작성 등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연계·협력사업에 대하여 추가가점 부여제도, 공동성과제 도입 추진, 공동예산항목 마련





## 1. 연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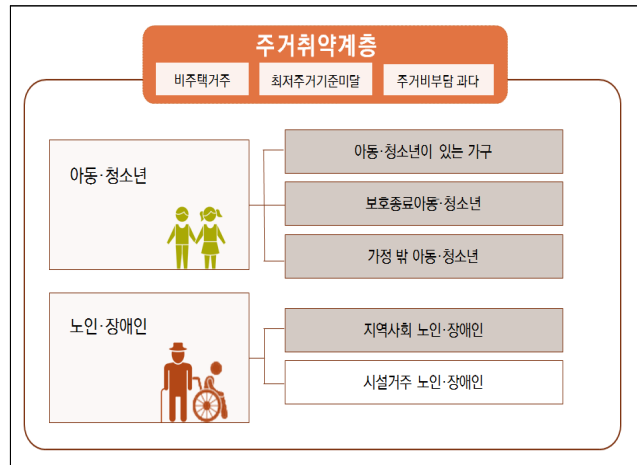
### □ 연구의 목적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 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음
- 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는 주거취약계층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대상의 각종 주거 관련 제도와 정책, 지원체계, 정책연계 강화 방안 제안임
-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담당 공무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현장조사, 업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포럼 운영 등임

그림 1 | 연구대상에 대한 개념도



주: 음영은 주 분석대상

자료: 저자 작성

## 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의 개념정립과 이슈

###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로 본 주거취약계층

- 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혹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보고 연구대상은 이들 가구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가구로 함
- 우리나라 전체 주거취약가구 290만 가구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가구가 42%
- 아동·청소년 가구 전체 540만 가구 중 60만 가구(약 11%)가 해당
- 노인·장애인 가구 전체 547만 가구 중 62만 가구(약 11.3%), 노인이면서 장애인 가구는 6만 5천 가구가 해당
- 주거취약가구의 대부분이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정책 수혜가구는 21~39%에 불과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가구의 수혜율(25.8%)은 낮음(<표 2-7> 참조)

그림 2 | 연구대상별 주거취약가구 규모

|                   | 아동·청소년<br>(540만 가구) | 노인·장애인<br>(547만 가구)             |
|-------------------|---------------------|---------------------------------|
| 총 주거취약<br>대상가구 규모 | 59만 4천 가구(11.0%)    | 62만 2천 가구(11.3%)<br>(6만 6천 가구*) |
| 비주택거주<br>가구       | 1만 4천 가구            | 7만 4천 가구<br>(6천 가구*)            |
| 최저주거기준<br>미달 가구   | 18만 3천 가구           | 21만 3천 가구<br>(2만 5천 가구*)        |
| 주거비부담<br>과다 가구    | 41만 6천 가구           | 42만 8천 가구<br>(4만 1천 가구*)        |

주: 노인장애인 가구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합집합 개념이며, \*은 노인이면서 장애인 가구인 교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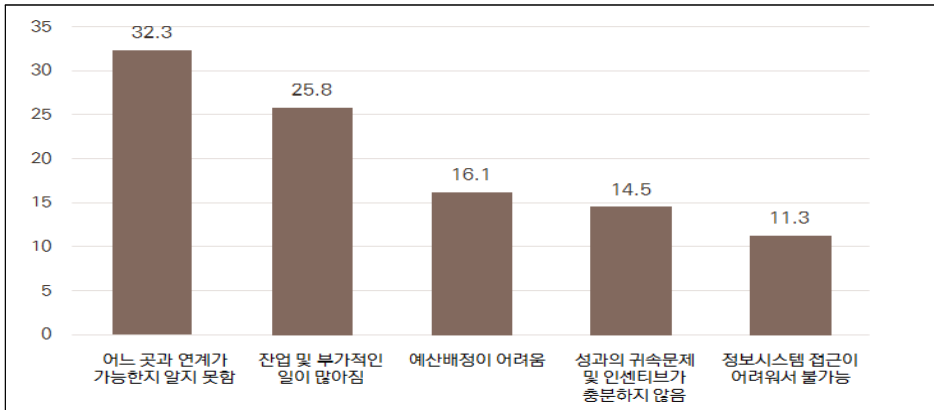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저자 분석 및 작성

## □ 정책대상별 주거지원정책 현황과 전달체계 운영 실태

- 법마다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정의와 연령대가 달라서 대상자 정의에 혼란이 야기되고, 정책대상이 중첩
- 아동양육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의 절대 수 부족 및 자격요건의 현실성 결여,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분리기준 적용 강화 긴급
- 장시간 근로나 한부모 가구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서류작성 시기를 놓치는 등 주거탐색과 신청상 문제에 직면
- 미성인 아동·청소년은 직접 주택 신청 자격이 없고,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열악한 주거상황에 노출된 비슷한 처지의 아동 간에도 처음 어디에 발을 디디는가에 따라서 퇴소후의 처지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담당기관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차이가 있고 “가정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비행청소년’이라는 굴레와 인식이 함께 하기 때문
- 노인과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시설장애인은 주거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그림 3 | 주거지원정책 연계협업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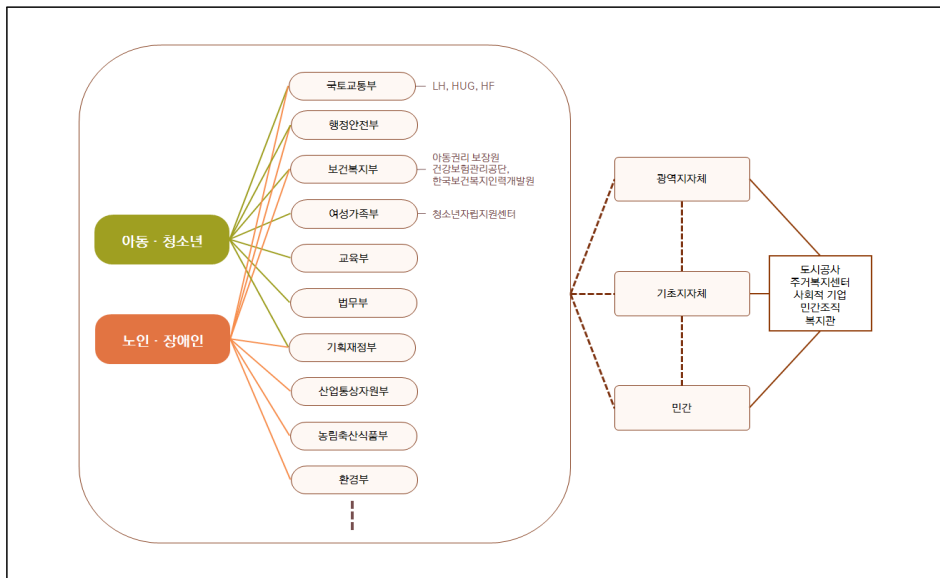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이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분석(부록 5과 6 참조)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식품부, 환경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이 각각 담당하면서 일부 정책프로그램은 상호 협력하여 수행
- 유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사업과 정책을 공동으로 기획, 정보 제공, 공동 집행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면 정책 효과가 배가되고 소요 비용의 절감 기대

그림 4 | 주거지원 대상별 관련 기관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 3.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 □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정책 개요

- 아동·청소년 가구 중 약 11%에 해당하는 약 60만 가구가 주거취약계층이며, 주거위기 청소년인 가정 밖 보호아동은 약 3만 명, 보호종료 아동은 매년 2600명
- (주거지원정책 현황) 공급 측면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수요측면 정책인 주거급여로 나눌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격은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가구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 쉼터 등의 퇴소아동이 서로 다름

- 아동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유형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 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임대주택
- 보호종료 아동 대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주거급여: 아동가구 대상 주거급여, 보호종료 아동 대상 주거급여
- (문제점) 아동의 주거권이 명시적이지 않음. 아동·청소년 주거취약계층 간 형평적인 기준 결여, 아동가구 규모에 비해 저렴하고 규모와 시설이 적절한 주택 부족과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의 현실성 결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 기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문제점

- 아동·청소년 양육가구, 보호종료 아동, 가정 밖 아동·청소년 가구에서 차이 발생
- (아동·청소년 가구) 국토교통부는 다자녀매입임대주택 공급,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만들기’라는 비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계획’ 제시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동학대전담요원 제도 운영
- (보호종료 아동)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전담하며 가정위탁, 시설위탁 등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담당
- (가정 밖 아동·청소년 가구) 여성가족부가 주로 담당하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청소년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주거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의 주거 지원, 쉼터 퇴소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 (문제점)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법령과 제도에 따라 상이하여 연령에 따른 서비스 지속성이 단절, 지자체 복지담당 인력의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저조, 주거위기정보 부족과 정보연계 미비로 민관 및 지역 간 서비스 단절 야기, 주거

지원통합서비스 주택물색 도우미의 역할과 서비스 확대 필요, 상담원의 민원책임제 등은 앞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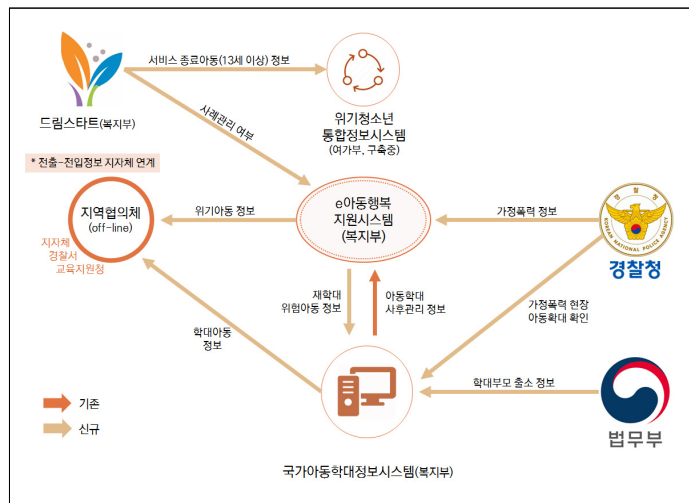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주거권의 명시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저렴하고 규모와 시설이 적절한 주택의 확대

- 아동양육가구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  
금 대출 지원 확대

- 2020년 주거종합계획상에서 발표한 2천 호의 보호종료 아동 우선 지원(국토교통부 2020a) 역시 공급량이 수요

그림 5 |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연계(안)



자료: 교육부 2020, 3. 그림 재인용

-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정책 설계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확대
- 주거욕구 사정 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침실분리기준 적용 강화
-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주거정보 및 주거탐색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기관의 확대와 연계 필요
- 아동청소년 연령에 따른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보연계를 강화(주거에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검토)

## 4.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 □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개요

-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4.3%(2005년 9.1%), 전체 노인가구는 438.8만 가구로 전체의 21.8%(2019년), 장애인가구 비율은 전체가구 중 4.7%에 해당
-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하향추세이며(「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2017 노인실태조사」)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주로 물리적인 주택에 초점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두 부처 사업 간 연계가 필요
- 노인·장애인 관련 공급지원 제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급, 주거급여 제공(임대료 및 주택개조)
- 지원주택: 공공이 제공하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 탈시설 정책이 지자체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부재하여 노인·장애인과 거주시설 등의 이해당사자의 혼란 야기
- 사회적 약자이자 주거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함
- (법률) 노인·장애인이 정책대상으로 직접 언급되거나 주거취약계층 혹은 수급권자가 언급된 관련 법률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주택도시보증법」 등이 있으나 개선 필요

## □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문제점

-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연계 협력의 시스템으로 현재 1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중
- 고령화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주거, 의료, 복지, 그리고 돌봄을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정착·확산되어야 할 제도
- (노인)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 (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 및 인권제고를 목표로 함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의 서비스는 자립체험주택 운영, 종합케어서비스, 방문관리 및 동료상담가 지원 등이며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반영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물리적 환경개선도 중요

## □ 노인 장애인 주거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을 검토하여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기조와 연관된 법률과 각종 제도에 개선사항을 반영
- 현재 통합돌봄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없으므로 지원주택의 안정된 물량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 일정 물량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연계 필요
- 주거약자인 노인·장애인을 위해 주택과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지원센터 역할 및 전달체계를 정리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제도 개선 필요

## 5.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연계 방향과 개선방안

### □ 기본방향과 정책 제안

| 기본 방향                           | 추진과제              | 아동·청소년 정책분야                                                                                                                                                                        | 노인·장애인 정책분야                                                                                                                              | 실천수단    |
|---------------------------------|-------------------|------------------------------------------------------------------------------------------------------------------------------------------------------------------------------------|------------------------------------------------------------------------------------------------------------------------------------------|---------|
| 연속성:<br>생애주기별<br>연속적인<br>서비스 지원 | 법·제도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권 명시적 명기</li> <li>아동, 청소년, 청년의 정의 명확화 및 관련 법령 정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약자법」 등에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등 명기</li> <li>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li> </ul>                                      | 법 제도    |
|                                 | 기준 적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이 있는 가구/보호종료 아동/가정 밖 아동 대상 기준의 형평성 제고</li> <li>최저주거기준 활용 강화-침실 분리기준 적용 강화</li> <li>임대주택 입주자격 현실화 및 형평성 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개조 설계 시 작업치료사 참여로 노인·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li> <li>UD(Universal Design) 반영한 주택개조 및 주거환경 개선</li> </ul>   | 기준      |
|                                 | 주거서비스 지속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복지센터의 연계 및 역할 강화</li> <li>아동청소년 연령에 따라 분절없는 서비스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시설 및 자립 생활 지원 강화</li> <li>시설 장애인에게 중간단계의 주거 공급 및 주거탐색 지원</li> <li>IoT·AI를 접목한 주거지원 확대</li> </ul> | 제도개선    |
| 포괄성:<br>주거지원<br>사각지대<br>해소      | 재정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렴주택 공급 확대</li> <li>주거급여 신설</li> <li>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li> <li>아동연령에 따른 주거지원 연계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렴주택/지원주택 공급 확대</li> <li>주거지원 관련 예산 확보</li> <li>장애인 주거수당 도입</li> </ul>                            | 재정지원    |
|                                 | 사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 협업 사례관리 강화</li> <li>주거복지서비스에서 사례관리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 협업 사례관리 강화</li> <li>주거서비스에서도 사례관리 기법 도입</li> <li>통합돌봄의 정착 및 확산</li> </ul>                      | 전달·거버넌스 |
| 효과성:<br>효율적·<br>효과적인<br>전달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표준화</li> <li>공공-민간, 민간-민간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li> <li>주거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li> <li>정보관리 방안</li> </ul>                                     |                                                                                                                                          | 전달·거버넌스 |
|                                 |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목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li> <li>주거복지 교육 확대</li> <li>공동 기획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li> <li>인센티브 및 연계성과 귀속 방안 마련</li> <li>업무단순화 및 매뉴얼 작성 배포</li> </ul> |                                                                                                                                          | 제도개선    |
|                                 | 원스톱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기관 확대 및 콜센터 운영</li> <li>상담원의 민원 책임제 운영</li> <li>주민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연계체계 구축</li> </ul>                                                          |                                                                                                                                          | 거버넌스    |

자료: 저자 작성

####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강화 법령 정비

-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여 주거권에 ‘적절성’을 명기하고 관련 법률에 대상을 적시, 관련 법률에 위임을 받도록 구체화, 실행 가능한 시행령, 조례 제정 및 개정
- 노인·장애인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 ‘Aging in Place’, ‘탈시설화 지역 내 통합돌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적인 제도 및 법제 마련
- 주거복지 업무 근거를 적시(조례 등에서 명기)하여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전달 및 파악하고 업무의 소관부서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함

#### □ 기준 적정화를 통한 제도 간 형평성 있는 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상 연령을 통일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며, 보호자의 여부에 따른 대상 구분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
- 독립된 침실을 확보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해서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분리기준 적용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이행기준 혹은 권고기준을 마련
- 임대주택 입주자격 현실화 및 형평성 확보

#### □ 주거서비스 지속성 확보

-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분절 없이 주거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드림스타트와 연계 강화
-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중간단계의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종합계획에 이를 반영
- 주거탐색에서 문의와 상담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주거복지센터,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과 연계해서 주거탐색을 지원하며 주택물색 도우미를 확대 지원
- IoT·AI를 접목한 주거지원 확대

#### □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례관리 확대 적용

- 저렴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 조례나 규정을 점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물량의 적정 공급 확대 계획 수립

- 아동대상 주거급여 및 장애인가구 대상 주거수당 신설, 집수리(주거급여) 관련 사업 연계 및 예산 효율화
- 지자체 선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은 지역에 맞는 모형을 구축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개보수 사업들을 연계해서 노인·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택 혹은 통합돌봄의케어안심주택 등으로 활용
- 사례관리 기법을 주거복지서비스에서도 확대 적용하고, 통합돌봄 등에서 민관 협업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며,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

#### □ 효율적·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 방안

- (정보시스템 개선)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발굴, 신청, 조사, 집행, 사후관리 단계의 서식 표준화를 통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 간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연계, 구조화 및 체계화, 민간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확대
-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인센티브 부여) 부처(기관 간), 부처내(기관 내) 공동 학습 및 공동 문제 제기 등의 장을 마련, 공동의 목표추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동 기획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업무를 단순화하여 이를 매뉴얼화
  - 연계사업에 대한 추가가점제 등 인센티브 부여, 연계성과의 공동 성과제 도입으로 기관 간 복지서비스 업무 연계 촉진, 공동 예산항목 마련
- (원스톱 서비스 제공)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및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 확대 및 콜센터 운영, 상담원의 민원 책임제 운영
- (주거복지 교육 확대) 주거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기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주거복지 정책을 교육하여 안내와 상담 역할 수행 시스템 마련

---

# 차례

## CONTENTS

---

|                    |     |
|--------------------|-----|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 iii |
| 요 약 .....          | v   |

---

### 제1장 서론

|                         |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3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5  |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 8  |
|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 | 11 |

---

### 제2장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의 개념정립과 이슈

|                        |    |
|------------------------|----|
| 1. 정책대상 개념 정립 .....    | 15 |
| 2. 주거지원 정책 추진 동향 ..... | 24 |
| 3. 정책연계의 필요성과 실태 ..... | 39 |
| 4. 소결 .....            | 52 |

---

### 제3장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                                       |    |
|---------------------------------------|----|
| 1.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개요 .....            | 57 |
| 2.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문제점 .....     | 66 |
| 3.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 86 |

#### 제4장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                                       |     |
|---------------------------------------|-----|
| 1.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개요 .....            | 95  |
| 2.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문제점 .....     | 108 |
| 3.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 120 |

#### 제5장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연계 방향과 개선방안

|                                |     |
|--------------------------------|-----|
| 1. 기본 방향 .....                 | 131 |
| 2. 연속성: 생애주기별 연속적 서비스 지원 ..... | 133 |
| 3. 포괄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   | 146 |
| 4. 효과성: 정책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 | 152 |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     |
|------------------------|-----|
| 1. 결론 .....            | 165 |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 167 |

|            |     |
|------------|-----|
| 참고문헌 ..... | 169 |
|------------|-----|

|               |     |
|---------------|-----|
| SUMMARY ..... | 180 |
|---------------|-----|

|           |     |
|-----------|-----|
| 부 록 ..... | 182 |
|-----------|-----|

---

## 표차례

### LIST OF TABLES

---

|                                                 |    |
|-------------------------------------------------|----|
| 〈표 1-1〉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 요약 (종합) .....           | 9  |
|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10 |
| 〈표 2-1〉 주거취약계층 범위(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             | 16 |
| 〈표 2-2〉 주거취약계층 가구 특성별 가구 수 규모 .....             | 19 |
| 〈표 2-3〉 최저주거기준 미달 정도 .....                      | 20 |
| 〈표 2-4〉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택유형 .....                   | 21 |
| 〈표 2-5〉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점유형태 .....                   | 22 |
| 〈표 2-6〉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주거비 부담 .....          | 22 |
| 〈표 2-7〉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지원정책 인지 및 수혜 여부 비율 .....   | 23 |
| 〈표 2-8〉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 | 24 |
| 〈표 2-9〉 대상별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명시적인 대상 포함 현황 .....      | 26 |
| 〈표 2-10〉 아동·청소년 대상별 주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현황 .....     | 28 |
| 〈표 2-11〉 주거취약계층별 주거지원 정책별 연계 협력 관련 기관 .....     | 30 |
| 〈표 2-12〉 협업행정의 특징 .....                         | 42 |
| 〈표 2-13〉 연계 협력 현황 조사 표본 수 (기획안) .....           | 46 |
| 〈표 2-14〉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                      | 46 |
| 〈표 3-1〉 주거빈곤이 아동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 .....              | 58 |
| 〈표 3-2〉 아동청소년 주거취약계층 가구수 규모 .....               | 59 |
| 〈표 3-3〉 아동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기준 .....                  | 60 |
| 〈표 3-4〉 보호종료 아동대상의 공공주택 입주 기준 .....             | 62 |
| 〈표 3-5〉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모형(안) .....          | 68 |
| 〈표 3-6〉 복지사각지대 주요 정보연계 현황 .....                 | 71 |
| 〈표 3-7〉 아동복지시설의 시설별 기준 .....                    | 76 |
| 〈표 3-8〉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시설별 입소기준 .....           | 79 |
| 〈표 3-9〉 청소년 쉼터의 종류 .....                        | 80 |
| 〈표 3-10〉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류 .....                     | 81 |

|                                             |     |
|---------------------------------------------|-----|
| 〈표 3-11〉 부처별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         | 85  |
| 〈표 4-1〉 전체 중앙부처 주거관련 복지서비스 .....            | 99  |
| 〈표 4-2〉 노인·장애인 관련 임대주택 공급지원 제도 .....        | 101 |
| 〈표 4-3〉 지방정부별 탈시설 추진 계획 수립 현황 .....         | 104 |
| 〈표 4-4〉 국내 주거 및 주택 관련 법률 .....              | 106 |
| 〈표 4-5〉 노인·장애인 주거 관련 법률 .....               | 107 |
| 〈표 4-6〉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                  | 109 |
| 〈표 4-7〉 연계형 케어안심주택 공급 사례 .....              | 114 |
| 〈표 4-8〉 2020년 중점 주거지원 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     | 115 |
| 〈표 4-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과제별 소관부처·부서 .....   | 122 |
| 〈표 5-1〉 기본방향 및 정책제안 .....                   | 132 |
| 〈표 5-2〉 아동·청소년 법에 따른 연령 구분 .....            | 134 |
| 〈표 5-3〉 주거약자법 검토사항 .....                    | 135 |
| 〈표 5-4〉 원스크린 정보 항목 .....                    | 154 |
| 〈표 5-5〉 민간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행복e음 정보연계 필요 항목 ..... | 155 |
| 〈표 5-6〉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민간시설 항목 .....         | 156 |
| 〈부표 1〉 주거빈곤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선행연구 .....   | 182 |
| 〈부표 2〉 아동, 노인, 장애인의 주거관련 선행연구 .....         | 183 |
| 〈부표 3〉 드림스타트 인적정보관리상 주거에 관한 사항 .....        | 185 |
| 〈부표 4〉 드림스타트 욕구조사의 5. 경제 영역 .....           | 185 |
| 〈부표 5〉 드림스타트 욕구조사의 8. 생활환경 영역 .....         | 186 |
| 〈부표 6〉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사정도구에서 주거관련 항목 .....      | 188 |
| 〈부표 7〉 드림스타트 복지지원 분류체계상의 주거지원 .....         | 189 |
| 〈부표 8〉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 양식 1 .....     | 198 |
| 〈부표 9〉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 양식 2 .....     | 199 |
| 〈부표 10〉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 양식 3 .....    | 199 |

---

## 표차례

LIST OF TABLES

---

|                                          |     |
|------------------------------------------|-----|
| 〈부표 11〉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 양식 4 ..... | 200 |
| 〈부표 12〉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 양식 5 ..... | 200 |
| 〈부표 13〉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 양식 6 ..... | 201 |
| 〈부표 14〉 민간영역 사회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목록 .....      | 202 |

## 그림차례

### LIST OF FIGURES

|                                           |    |
|-------------------------------------------|----|
| 〈그림 1-1〉 연구대상에 대한 개념도 .....               | 6  |
| 〈그림 1-2〉 연구의 틀 .....                      | 7  |
| 〈그림 2-1〉 연구 대상별 주거취약가구 규모 .....           | 20 |
| 〈그림 2-2〉 주거지원 대상별 관련 기관 개념도 .....         | 31 |
| 〈그림 2-3〉 정보시스템 편리성과 개선 필요도 .....          | 32 |
| 〈그림 2-4〉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항목 .....             | 32 |
| 〈그림 2-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체계도 .....   | 33 |
| 〈그림 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시스템 구성도 .....   | 34 |
| 〈그림 2-7〉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시스템 구성도 .....     | 34 |
| 〈그림 2-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기능 구성도 .....       | 35 |
| 〈그림 2-9〉 복지지원업무의 연계·협력 필요성 대두 배경 .....    | 41 |
| 〈그림 2-10〉 협업행정의 핵심요소 .....                | 42 |
| 〈그림 2-11〉 연계 협력 필요성 인식과 실태(분석의 틀) .....   | 44 |
| 〈그림 2-12〉 중앙부처의 협업기관 .....                | 47 |
| 〈그림 2-13〉 지자체의 협업기관 .....                 | 47 |
| 〈그림 2-14〉 중앙부처 및 공사의 협업사업 .....           | 48 |
| 〈그림 2-15〉 지자체의 협업사업 .....                 | 48 |
| 〈그림 2-16〉 중앙부처 및 공사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 정도 .....  | 49 |
| 〈그림 2-17〉 지자체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 정도 .....        | 50 |
| 〈그림 2-18〉 소속기관별 연계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 .....     | 51 |
| 〈그림 2-19〉 현재 연계 협력의 방법 (1순위) .....        | 51 |
| 〈그림 2-20〉 소속기관별 연계 협력 시 어려운 점 (1순위) ..... | 52 |
| 〈그림 2-21〉 주거지원정책 연계 협업의 장애요인 .....        | 53 |
| 〈그림 3-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020년 추진계획 .....    | 67 |
| 〈그림 3-2〉 종합상담 업무절차도 .....                 | 69 |
| 〈그림 3-3〉 드림스타트 조직체계 .....                 | 74 |

# 그림차례

## LIST OF FIGURES

|                                                   |     |
|---------------------------------------------------|-----|
| 〈그림 3-4〉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체계 .....                    | 78  |
| 〈그림 3-5〉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서비스 연계 협력 추진 시 필요사항 및 장애요인 ... | 86  |
| 〈그림 3-6〉 아동·청소년 주거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 91  |
| 〈그림 4-1〉 일본 지역주민조직 운영 사례 .....                    | 116 |
| 〈그림 4-2〉 일본 지역복지 네트워크 거점 운영 사례 .....              | 117 |
| 〈그림 4-3〉 노인·장애인 주거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 127 |
| 〈그림 5-1〉 지역사회 전환 절차 .....                         | 143 |
| 〈그림 5-2〉 스마트 홈케어 기기 .....                         | 145 |
| 〈그림 5-3〉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연계(안) .....                  | 149 |
| 〈그림 5-4〉 통합 사례관리 업무절차 .....                       | 150 |
| 〈부도 1〉 일본 지역주민조직 운영 사례 .....                      | 191 |
| 〈부도 2〉 일본 지역복지 네트워크 거점 사례 .....                   | 194 |
| 〈부도 3〉 중앙부처의 협업기관 .....                           | 212 |
| 〈부도 4〉 지자체의 협업기관 .....                            | 212 |
| 〈부도 5〉 중앙부처 및 공사의 협업사업 .....                      | 212 |
| 〈부도 6〉 지자체의 협업사업 .....                            | 212 |
| 〈부도 7〉 사업단계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213 |
| 〈부도 8〉 부처 및 업무별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               | 213 |
| 〈부도 9〉 중앙부처 및 공사, 지자체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         | 214 |
| 〈부도 10〉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담당자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       | 214 |
| 〈부도 11〉 아동·청소년정책 담당자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          | 215 |
| 〈부도 12〉 노인·장애인·커뮤니티 케어 담당자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    | 215 |
| 〈부도 13〉 현재 연계 협력 방법 (1순위) .....                   | 216 |
| 〈부도 14〉 현재 연계 협력 방법 (2순위) .....                   | 216 |
| 〈부도 15〉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현재 연계 협력 방법 (1순위) .....       | 216 |
| 〈부도 16〉 현재 연계 협력 성과 .....                         | 217 |

|                                                         |     |
|---------------------------------------------------------|-----|
| 〈부도 17〉 중앙부처 및 공사, 지자체의 연계 협력 성과 평가 .....               | 217 |
| 〈부도 18〉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예산절감효과 평가 .....                     | 218 |
| 〈부도 19〉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시간절감효과 평가 .....                     | 218 |
| 〈부도 20〉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중복수혜 해소효과 평가 .....                  | 219 |
| 〈부도 21〉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사각지대 해소효과 평가 .....                  | 219 |
| 〈부도 22〉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주거수준 질적 제고효과 평가 .....               | 220 |
| 〈부도 23〉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국민체감도 제고효과 평가 .....                 | 220 |
| 〈부도 24〉 연계 협력시 어려운 점 (1순위) .....                        | 221 |
| 〈부도 25〉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연계 협력시 어려운 점 (1순위) .....            | 221 |
| 〈부도 26〉 연계 협력시 필요한 것 (1순위) .....                        | 222 |
| 〈부도 27〉 소속기관별 연계 협력시 필요한 것 (1순위) .....                  | 222 |
| 〈부도 28〉 효율적인 연계추진 방법 (1순위) .....                        | 223 |
| 〈부도 29〉 소속기관별 효율적인 연계추진 방법 (1순위) .....                  | 223 |
| 〈부도 30〉 연계 협력을 위한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                   | 224 |
| 〈부도 31〉 연계 협력을 위한 중앙부처 및 공사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         | 224 |
| 〈부도 32〉 연계 협력을 위한 지자체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               | 225 |
| 〈부도 33〉 연계 협력을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       | 225 |
| 〈부도 34〉 연계 협력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            | 226 |
| 〈부도 35〉 연계 협력을 위한 노인·장애인·커뮤니티 케어 정보현황과<br>개선 필요사항 ..... | 226 |





# CHAPTER 1

##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 11



---

# 01 서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중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기관 간의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연구 배경에서 연구의 목적과 이슈, 분석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주거취약 대상의 주거지원 상의 문제점과 이슈 발굴뿐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련 기관 간의 정책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체감도가 향상되고 주거복지 수준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과거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은 주로 주택물량의 절대적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신주택보급률 개념을 적용한 주택보급률이 2008년 이후 100%를 상회(100.7%)하면서 주택 재고의 절대적 부족문제는 일정 부분 완화되었다. 반면에 주택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주택소유 및 주거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조윤지 2019). 아동·청소년 가구 중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약 6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보호종료 아동이나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경우 약 6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부담 과다, 비주택 거주 상황이어서

---

주거 격차가 매우 크다. 노인가구는 저소득비율이 높고(74.5%) 혼자 거주하는 비율이 37.6%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3.9%이다. 주택구입능력을 나타내는 PIR(Price Income Ratio)은 11.4배(일반가구 5.4배), 주거비 부담인 RIR(Rent Income Ratio)이 32.6%로 일반가구(16.1%)에 비해 주거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가구 역시 PIR(6.6배)이나 RIR(25.3%)이 일반가구보다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율이 4.6%로 높은 편이다(국토교통부 2020).

사회보장 관련 취약계층의 특징은 위기도가 높으며 복지 욕구가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관간 협업을 통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그간 주거지원정책은 물리적 주거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주로 저소득과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개별 가구의 맞춤형 지원에 대한 지원서비스 논의는 상대적으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 2020)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획이 제시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제고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해결해야 할 주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거취약계층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다. 사회복지취약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서 기관간 연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기준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한 대상기준이 서로 다르고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넘어서서,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간의 주거지원정책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주거안정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취약계층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의 주거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연계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부처 간, 관련 기관 간 분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시너지효과를 통해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부목표는 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현황 분석, ②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주거지원 정책연계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③ 정책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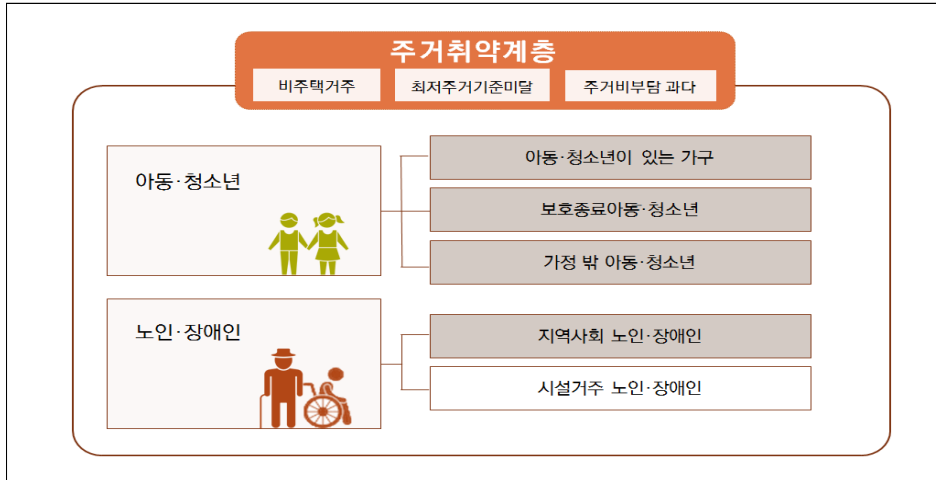
### 1) 연구 범위

연구의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그림 1-1> 참조).

그리고 현재 개별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주거 관련 제도와 정책, 지원체계 등을 파악하고 연계방안 및 과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정책연계 및 협력에 관한 이론 검토
- 주거취약계층 주거 현황
-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정책연계 및 협력 현황과 과제
-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그림 1-1 | 연구대상에 대한 개념도



주: 음영은 주 분석대상

자료: 저자 작성

##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주거취약계층 현황, 정책 및 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 조사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통계자료는 최신 자료인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제도 및 사업 등의 근거 법령, 대상기준, 전달체계(조직과 운영) 등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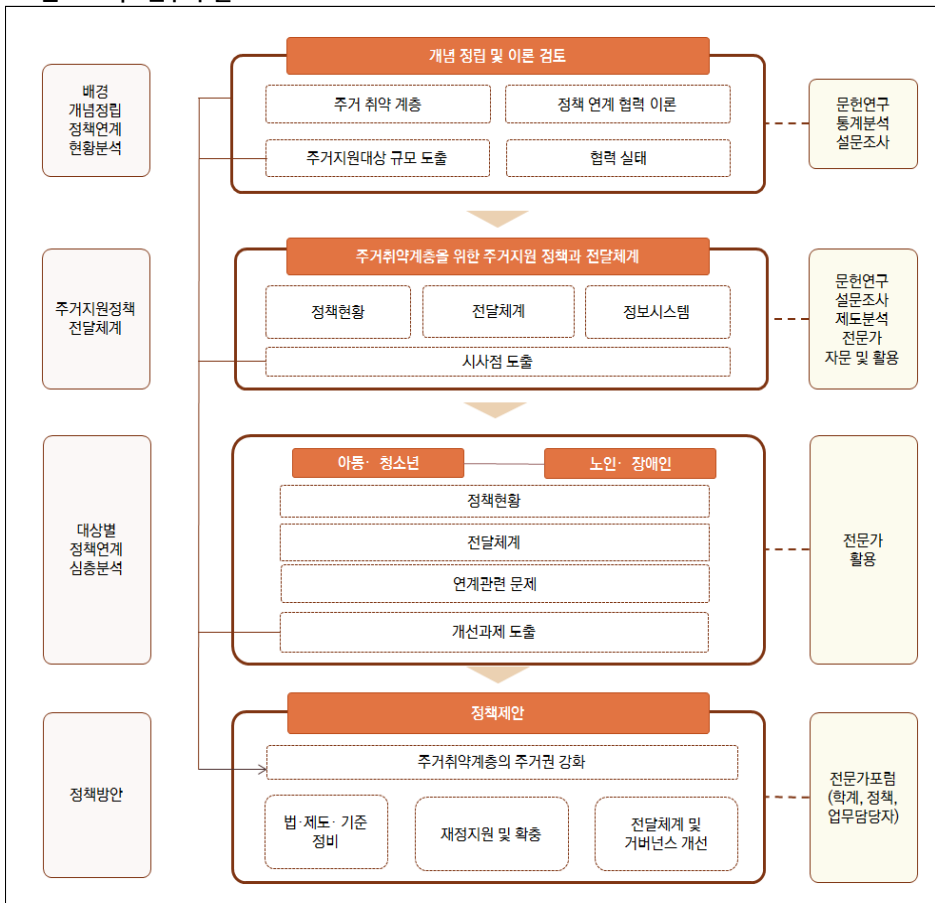
조사 및 현황 파악, 연구 자문을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학계 등 여러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관간의 연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 조사를 시행한다. 현행 제도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연계의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근거로 주거지원정책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총 62건의 인터넷 메일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이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 곳을 방문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 외에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그리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를 외부연구진으로 영입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굴된 이슈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실제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전문가, 내·외부 연구진 등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정부부처 및 사업 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연계방안에 대하여 검토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그림 1-2 | 연구의 틀



자료: 저자 작성

---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 선행연구 현황

주거지원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주거 빈곤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생애주기별 대상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주거빈곤 대상 특성에 대한 연구, 주거지원 프로그램인 공공임대, 주거급여, 주택개량,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부표 1> 참조).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 관련 연구가 있다(<부표 2> 참조). 주거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개별 주거지원정책의 수요자 특징이나 입주자 선호, 정책효과 및 정책상의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 지역적인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아동 양육 및 보육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각각의 복지, 빈곤, 교육, 사회보장 혹은 주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책연계와 관련해서는 행정학 중심으로 협력 행정을 위한 연구가 있다. 지역간 연계 협력 효과에 대하여 규모/크기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네트워크 경제(network economies) 효과(김현호 2012), 연결의 경제성, 네트워크의 경제성, 시스템 경제성(이원섭 외 2004)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공간단위 협력(생활권, 협력권 등), 사업단위 협력(지역연계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는 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들이다.

하지만 주거지원 정책연계 추진을 위한 부처 및 관계 기관 간 정책연계 관련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주거지원정책의 대상이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있고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연계가 특히 중요하다.

## 2) 선행연구와 이 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이들 대상가구에 대한 관련 기관간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대상을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으로 구체화한다. 연구 목적은 협업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표 1-1 |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 요약 (종합)

| 구분   | 선행 연구                                                  | 이 연구                                                                                                                      |
|------|--------------------------------------------------------|---------------------------------------------------------------------------------------------------------------------------|
| 연구목적 | - 주거빈곤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연구 수행                    |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의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기관간 주거지원 정책연계 방안 검토 및 제시                                                        |
| 연구내용 | -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가구 대상으로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현황,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행 | -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가구 대상으로 현행 주거복지 정책현황 및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로 정책의 효과성, 체감도 제고                                               |
| 연구방법 | - 설문조사<br>- 통계분석<br>- 제도분석<br>- 인터뷰 등                  | - 설문조사(중앙-지자체 정책실무자, 전문가) 및 통계분석<br>- 자료분석(주거실태조사)<br>- 현장 인터뷰(지역통합돌봄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br>- 협동연구(전문가 및 국책연구기관)<br>- 전문가포럼 등 |

자료: 저자 작성

표 1-2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구 분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주요 선행 연구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li> <li>• 연구자: 변용찬 외 (2010)</li> <li>• 연구목적: 주거취약계층의 현황과 이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현황 분석</li> <li>• 통계분석</li> <li>• 국내외 제도 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 연구</li> <li>• 주거지원정책 평가</li> <li>•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li> <li>• 장애인 및 노인 가구들의 실내 행동특성 파악과 개선방향 제시</li> </ul>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li> <li>• 연구자: 김성희 외 (2013)</li> <li>• 연구목적: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등 정책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2차자료분석</li> <li>•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li> <li>• 워크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검토, 현황 파악 및 연구의 흐름 제시</li> <li>• 국내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시</li> <li>• 국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파악 및 시사점 제시</li> <li>• 인터뷰 분석결과 제시 및 자립생활 지원방안 제시</li> </ul>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주요 분야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 연구용역</li> <li>• 연구자: 엄석진 외 (2019)</li> <li>• 연구목적: 일자리와 돌봄분야에서 협업 프로세스와 네트워크를 분석 진단하여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협업을 활성화 방안을 제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프로세스분석</li> <li>• 네트워크분석</li> <li>• 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돌봄 영역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협업 현황과 인식 파악</li> <li>•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애로요인 발견, 활성화의 필요한 조건</li> <li>• 협업 매뉴얼 작성</li> </ul>                                                                     |
| 이 연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li> <li>• 연구자: 강미나 외</li> <li>• 연구목적: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에 대한 관계 기관간 주거지원 정책연계성을 강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과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 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li> <li>• 전문가자문</li> <li>• 심층인터뷰/설문조사/전문가 조사</li> <li>• 해외사례조사</li> <li>• 협동연구</li> <li>• 포럼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취약계층 사업 현황분석</li> <li>• 부처간 지원 사업 및 서비스 공급시스템 분석</li> <li>• 해외사례</li> <li>• 연계방안 검토</li> </ul>                                                                                 |

자료: 저자 작성

---

##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 1) 정책적 기대효과

관련 기관간 파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의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책적 기대효과로는 부처 간, 관계기관 간 정책대상에 대한 기준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간 연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해소, 이에 대한 사전 대응전략 수립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적 주거복지 추구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법령, 예산, 조직을 포함한 전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업 기획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사업 실행 시 검토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정책 대상자에게 직접적이고 신청 간편한 찾아가는 복지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거안정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학술적 기대효과

주거지원정책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영역을 확장하였다.

한편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행 정책수행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학술적인 결과물로 재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CHAPTER 2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의 개념정립과 이슈

- 1. 정책대상 개념 정립 ..... 15
- 2. 주거지원 정책 추진 동향 ..... 24
- 3. 정책연계의 필요성과 실태 ..... 39
- 4. 소결 ..... 52



---

## 0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의 개념정립과 이슈

이 장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혹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이들 가구의 규모와 주거 특성을 파악한 결과 총 122만 가구가 정책대상이다. 정책연계·협력의 개념과 관련이론을 검토하고, 주거지원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계·협력 현황과 장애요인,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요건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기관 간 협업 대상 찾기'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 가구들의 주거지원정책 관련 기관과 사업, 이슈를 검토하여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 1. 정책대상 개념 정립

#### 1) 주거취약계층 개념

##### (1) 조작적 정의

주거복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상인 주거취약계층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업무처리지침 2020, 서울시 주거포탈<sup>1)</sup>, 박금령 외 2019).

<표 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물리적 거처 유형 중심에서 점차 사람 중심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주로 비주택 거주인 혹은 거주가구였던 대상

---

1) 서울시 주거포탈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10000](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10000), 2020.3.3. 검색

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유자녀(2018년 3월 포함), 미혼모(2018년 7월 포함)를 추가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생애주기별로 재해석하면 주거취약계층 중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 포함된다.

표 2-1 | 주거취약계층 범위(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           |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 등 |        |     |     |       |       |         |               |           |     |
|-----------|------------------------|--------|-----|-----|-------|-------|---------|---------------|-----------|-----|
|           | 쪽방                     | 비닐 하우스 | 고시원 | 여인숙 | 범죄피해자 | 노숙인시설 | 컨테이너 움막 | 최저주거기준 미달 유자녀 | PC방 및 만화방 | 미혼모 |
| 2009년 8월  | ○                      | ○      |     |     |       |       |         |               |           |     |
| 2010년 3월  | ○                      | ○      | ○   | ○   | ○     |       |         |               |           |     |
| 2012년 8월  | ○                      | ○      | ○   | ○   | ○     | ○     |         |               |           |     |
| 2014년 4월  | ○                      | ○      | ○   | ○   | ○     | ○     |         |               |           |     |
| 2015년 12월 | ○                      | ○      | ○   | ○   | ○     | ○     | ○       |               |           |     |
| 2018년 3월  | ○                      | ○      | ○   | ○   | ○     | ○     | ○       | ○             |           |     |
| 2018년 7월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이재춘 외 2020, 69 인용

한편 주거빈곤가구라는 개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박신영 2012)로 정의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거 빈곤을 사용하고 있다. 「주택종합계획(‘03~’12)」(건설교통부 2004)에서 보편적인 주거복지 추진을 공표함에 따라 전 국민이 주거복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20c)에서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 질서, 편안한 주거 환경’을 계획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명시하여 포용적인 복지 대상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주목받고 있다. 즉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 7.6만 호 공급, 주거급여의 수급가구 수 확대(’19년 104만 가구→’20년 113만 가구),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4→45%), 기준임대로 현실화의 지속적 추진, 고령층 대상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

대 1만호 공급, 재가요양·돌봄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협업)이 추진계획에 담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보다 확장적인 개념으로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비주택 거주 포함)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로 정의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생애주기인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을 포용적 주거복지의 우선 대상으로 설정한다.

■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료: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AJAX>

(2021.1.5. 검색)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 가구원 수(인) | 표준 가구구성1)  | 실(방) 구성2) | 총주거면적(㎡) |
|----------|------------|-----------|----------|
| 1        | 1인 가구      | 1 K       | 14       |
| 2        | 부부         | 1 DK      | 26       |
| 3        | 부부+자녀1     | 2 DK      | 36       |
| 4        | 부부+자녀2     | 3 DK      | 43       |
| 5        | 부부+자녀3     | 3 DK      | 46       |
| 6        | 노부모+부부+자녀2 | 4 DK      | 55       |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3) 비교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자료: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AJAX>

(2021.1.5. 검색)

## (2)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로 본 주거취약계층 현황

### ① 주거취약계층 규모

주거취약계층인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 과다이거나 비주택 거주 가구 가운데 이 연구의 대상인 아동·청소년 가구와 노인가구·장애인 가구의 절대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부담 과다가구는 소득 중 임대료 비율인 RIR(Rent to Income Ratio)이 30% 이상인 가구이다.

아동·청소년 가구는 가구원 중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정의한

다. 최신 자료인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0)를 활용하여 이들 가구의 규모와 주거 현황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약 2천만 가구이다. 이중 약 290만 가구가 주거취약계층인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부담 과다인 가구이다(<표 2-2 참조>). 아동·청소년 가구는 전체가 약 540만 가구이다. 이중 약 10%인 59만 가구가 주거 취약에 속한다. 그리고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도 약 1만 4천 가구가 있다. 이를 합하면 약 60만(아동·청소년 가구 중 약 11.0%)의 아동·청소년 가구가 주거 취약에 속하는 가구이다. 한편 노인·장애인 가구는 약 550만 가구인데 이중 6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 과다이고 비주택 거주 가구가 약 7만 가구이다. 총합 약 62만(노인·장애인 가구 중 약 11.3%)가 주거취약가구이다.

표 2-2 | 주거취약계층 가구 특성별 가구 수 규모

(단위: 천 가구)

|        | 가구수    | 최저주거<br>기준미달<br>(A) | 주거비<br>부담과다<br>(B) | (A U B) | 비주택<br>가구<br>(C) | (A U B U C) |
|--------|--------|---------------------|--------------------|---------|------------------|-------------|
| 전체     | 19,979 | 1,060               | 2,000              | 2,854   | 456              | 2,925       |
| 아동·청소년 | 5,450  | 183                 | 416                | 588     | 14               | 594         |
| 노인·장애인 | 5,467  | 213                 | 428                | 601     | 74               | 622         |

주 1): 아동·청소년 가구는 가구원 중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정의

주 2): 주거비부담과다가구는 RIR 30% 이상인 가구

주 3): 비주택거주가구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음막, 기타)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2-1 | 연구 대상별 주거취약가구 규모

|                   | 아동·청소년<br>(540만 가구) | 노인·장애인<br>(547만 가구)             |
|-------------------|---------------------|---------------------------------|
| 총 주거취약<br>대상가구 규모 | 59만 4천 가구(11.0%)    | 62만 2천 가구(11.3%)<br>(6만 6천 가구*) |
| 비주택거주<br>가구       | 1만 4천 가구            | 7만 4천 가구<br>(6천 가구*)            |
| 최저주거기준<br>미달 가구   | 18만 3천 가구           | 21만 3천 가구<br>(2만 5천 가구*)        |
| 주거비부담<br>과다 가구    | 41만 6천 가구           | 42만 8천 가구<br>(4만 1천 가구*)        |

주: 노인·장애인 가구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합집합 개념이며, \*은 노인이면서 장애인 가구인 교집합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저자 분석 및 작성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정도를 면적 미달, 침실 미달, 시설 미달로 분석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일반가구중 전체의 약 5.3%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속한다. 아동·청소년 가구는 3.4%로써 주로 면적기준 미달이 높은 편이다(3.0%). 그런데 노인·장애인 가구는 3.9%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서 시설 기준 미달(2.8%)의 비율이 높다.

표 2-3 | 최저주거기준 미달 정도

(단위: %)

|           | 최저주거기준<br>미달 | 면적 미달 비율 | 침실 미달 | 시설 미달 |
|-----------|--------------|----------|-------|-------|
| 전체        | 5.3          | 3.8      | 0.3   | 3.0   |
| 아동·청소년 가구 | 3.4          | 3.0      | 0.7   | 0.2   |
| 노인·장애인 가구 | 3.9          | 1.8      | 0.1   | 2.8   |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해 저자 작성

## ② 주거취약계층 주거 현황 및 정책 수혜 현황

주거취약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일반가구 중 주거취약가구는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35.3%). 주거취약가구의 거주 주택유형은 생애단계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 아동·청소년 가구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노인·장애인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으며 주택 이외의 거처에도 많이 거주한다. 즉 아동·청소년 주거취약가구 아파트 거주비율은 63.8%이다. 한편 노인·장애인가구 주거취약가구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41.7%, 아파트 거주비율이 31.6%,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12.8%이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0% 수준이다(〈표 2-4〉 참조).

표 2-4 |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택유형

(단위: %)

|           | 단독   | 아파트  | 연립<br>다세대 | 비거주용<br>건물내<br>주택 | 주택이외의<br>거처 | 계     |
|-----------|------|------|-----------|-------------------|-------------|-------|
| 전체        | 35.3 | 31.0 | 11.0      | 3.0               | 19.6        | 100.0 |
| 아동·청소년 가구 | 17.4 | 63.8 | 14.8      | 1.0               | 3.0         | 100.0 |
| 노인·장애인 가구 | 41.7 | 31.6 | 9.9       | 4.0               | 12.8        | 100.0 |

주: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주거비부담과다 가구· 비주택 거주가구를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해 저자 작성

주거취약계층의 점유형태 역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 일반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40.9%), 전세(32.7%), 보증금 없는 월세(15.7%) 순이다. 이러한 추세는 노인·장애인가구도 유사하다. 보증금 있는 월세(40.0%), 전세(29.7%), 자가(15.1%), 보증금 없는 월세(11.9%) 순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주거취약계층인 가구는 패턴이 좀 달라서 전세(62.6%)비율이 가장 높고, 보증금 있는 월세(25.4%), 자가(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5〉 참조).

표 2-5 |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점유형태

(단위: %)

|           | 자가   | 전세   | 보증금<br>있는 월세 | 보증금<br>없는 월세 | 무상  | 계     |
|-----------|------|------|--------------|--------------|-----|-------|
| 전체        | 7.4  | 32.7 | 40.9         | 15.7         | 3.2 | 100.0 |
| 아동·청소년 가구 | 7.9  | 62.6 | 25.4         | 1.3          | 2.9 | 100.0 |
| 노인·장애인 가구 | 15.1 | 29.7 | 40.0         | 11.9         | 3.3 | 100.0 |

주: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주거비부담과다 가구·비주택 거주가구를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2020. 저자 작성

이들 주거취약가구의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일반가구 중 주거취약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7만원이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가구는 364만 원, 노인·장애인가구는 129만원으로 소득의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평균 생활비의 비중은 70%대(전체 주거취약계층 71.1%, 아동·청소년가구 70.9%, 노인·장애인가구 78.9%)이다(<표 2-6> 참조). 노인·장애인 가구에서 다소 높은 편이다. 아동·청소년 가구는 양육 보육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소득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비용도 높은 셈이다.

주거비를 포함한 월평균 생활비와 월평균 주거비가 월평균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가구 76.8%, 아동·청소년가구 76.9%, 노인·장애인가구 87.4%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주거취약계층이 모두 30%를 상회했다. 중위수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가구는 39%, 노인·장애인가구는 43%로 부담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표 2-6 |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주거비 부담

(단위: 만원, %)

|           | 월평균<br>소득(만원) | 월평균생활비<br>(만원) | 월평균주거비<br>(만원) | RIR(%) |      |
|-----------|---------------|----------------|----------------|--------|------|
|           |               |                |                | 중위수    | 평균   |
| 전체        | 206.8         | 147.1          | 11.7           | 29.7   | 37.9 |
| 아동·청소년 가구 | 363.9         | 258.4          | 18.5           | 39.1   | 39.3 |
| 노인·장애인 가구 | 129.1         | 101.9          | 10.9           | 42.9   | 46.3 |

주: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주거비부담과다 가구·비주택 거주가구를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해 저자 작성

주거취약가구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예상보다 높은 편이다. 대체로 주거취약가구의 88~94%가 주거지원 정책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주거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21~38%의 가구만이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가구는 약 26%에 불과하고 노인·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도 약 38%의 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표 2-7> 참조).

표 2-7 |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지원정책 인지 및 수혜 여부 비율

|           | (단위: %) |            |
|-----------|---------|------------|
|           | 알고 있다.  | 수혜를 받고 있다. |
| 전체        | 88.5    | 21.0       |
| 아동·청소년 가구 | 94.3    | 25.8       |
| 노인·장애인 가구 | 88.9    | 38.3       |

주 1):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주거비부담과다 가구·비주택 거주가구를 의미

주 2): 인지비율은 주거지원정책(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분양 특별공급, 주거급여, 기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중 하나라도 알고 있는 비율

주 3): 수혜비율은 주거지원정책중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해 저자 작성

주거취약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생애주기의 단계별로 다르다. 전체 주거취약계층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순이다. 이에 비하여 노인·장애인 가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높고(27.7%), 월세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의 순이다. 한편 아동·청소년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34.8%)의 필요성이 가장 높고 전세자금대출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8> 참조).

표 2-8 |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단위: %)

|           | 월세보조금지원 | 전세자금대출지원 |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 주택개량·개보수지원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 공공분양주택공급 | 주거상담·정보제공 등 | 합계    |
|-----------|---------|----------|------------|------------|---------------|------------|----------|-------------|-------|
| 전체        | 21.4    | 29.2     | 17.4       | 2.4        | 6.2           | 15.6       | 6.0      | 1.8         | 100.0 |
| 아동·청소년 가구 | 6.5     | 33.1     | 34.8       | 1.4        | 7.5           | 7.9        | 7.0      | 1.6         | 100.0 |
| 노인·장애인 가구 | 25.7    | 16.9     | 8.1        | 5.7        | 8.4           | 27.7       | 5.7      | 1.8         | 100.0 |

주 1):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주거비부담과다 가구·비주택 거주가구를 의미

주 2):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해 저자 작성

## 2. 주거지원 정책 추진 동향

### 1) 정책대상별 주거지원 정책 현황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의는 법마다 명칭과 연령대가 다르고 일부는 서로 중첩되어 있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0~6세, 「아동복지법」은 아동 0~18세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9~24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0~18세, 「청년기본법」은 청년 19~34세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 일부는 아동이면서 청소년이고, 일부는 청소년이면서 청년이다.

주거약자로서 노인과 장애인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복지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주택 공급, 주택금융 지원, 주거급여 등에 대한 업무는 주로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한다. 아동·청소년에 관하여는 보호자의 여부에 따라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업무는 교육부, 소년원 등 범죄 관련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주로 담당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주거 이외의 양육시설, 보호시설, 자립시설, 쉼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

---

처가 업무를 담당한다. 즉 보건복지부는 보호·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을 관리한다. 쉼터, 자립지원센터 등은 여성가족부의 소관사항이다. 교육부에서도 위기학생의 학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시설 위(WEE)<sup>2)</sup>를 운영한다. 이들 부처는 소관사항의 대상에 대한 주거 소요가 있을 때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매입임대주택이나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형태이다.

〈표 2-9〉에 대상별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신청 공고, 신청서류 점검 및 대상가구 선정 등의 실무업무는 LH나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저소득기준(소득자산 기준 충족)과 무주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저소득가구로 소득과 자산기준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격이 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에 맞도록 주택 규모와 기존 주거지를 고려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더욱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 즉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은 직접 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은 주거급여의 수혜자격도 없다.

〈표 2-9〉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은 신혼부부의 요건이 결혼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 중에서 규정 연령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가구만 정책의 대상이 된다. 한편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영구, 국민,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신청대상이지만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것도 2019년 이후 일부 물량만이 할당되어 있어 신청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지원은 아동·청소년보다는 정책대상이 폭넓게 명시되어 있다. 우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고 노인과 장애인을 특화한 주택과 주거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다.

---

2)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안전망구축사업의 2차안전망. 지역교육청에 위 센터가 있고 일선 학교에 위 클래스가 있음. 단위학교에서 선도하거나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의 3단계로 운영

표 2-9 | 대상별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명시적인 대상 포함 현황

| 주거지원 프로그램       | 아동 · 청소년        |                   |                | 노인 · 장애인 |         |
|-----------------|-----------------|-------------------|----------------|----------|---------|
|                 | 아동이 있는 가구       | 아동양육시설<br>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쉼터<br>퇴소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 국토교통부 관련\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br>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 영구임대주택          | ○               | ○                 |                | ○        | ○       |
| 국민임대주택          | ○               | ○                 |                | ○        | ○       |
| 행복주택            | ○               |                   |                | ○        |         |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               |                   |                |          |         |
| 신혼희망타운          | ○               |                   |                |          |         |
| 분양전환임대주택        | ○               |                   |                |          |         |
| 고령자복지주택         |                 |                   |                | ○        |         |
| 장기전세            | ○               |                   |                | ○        | ○       |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               |                   |                |          | ○       |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               |                   |                | ○        | ○       |
| 청년전세임대주택        |                 | ○                 | ○              |          |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                 | ○                 | ○              |          |         |
| 청년매입임대주택        |                 | ○                 | ○              |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                | ○        |         |
| 주택전세자금대출        |                 |                   |                | ○        | ○       |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 ○               |                   |                |          | ○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 ○*                |                |          |         |
| 주거급여            | ○**             |                   |                | ○        | ○       |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                |          | ○       |
| 지원주택            |                 |                   |                | ○        | ○       |

주 1):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주 부처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통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

주 2): 서울 시흥시에서 아동주거비 추가지원

자료: 마이홈포털 (myhome.go.kr)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주거상황이 열악한 처지의 아동은 어디에서 첫 발을 디디는가에 따라서 퇴소 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4호에서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처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입소로 나뉜다. 가정위탁은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다른 가정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보호하는 것이다. 시설입소는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시설, 그룹홈 등의 보호를 말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라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 어느 시설에 가느냐에 따라 독립 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과 자립지원금, 각종 지원 등에서 차이가 크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에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반면 시설 입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등 차이가 있다. 이는 단지 담당부서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비행청소년’이라는 굴레와 인식이 함께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자립의지는 복불복?

이수경(22·가명)씨는 17살 때 청소년쉼터로 보내졌다. 요보호아동이라도 어떤 시설에 있느냐에 따라 자립에 관한 복지 혜택이 다르다.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생들은 자립정착금 300만~500만원, 디딤씨앗통장 등을 받고 나가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퇴소생들은 자립정착금 없이 나가야 한다. 이씨가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다면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뿐 아니라 청소년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출 비행청소년’ ‘문제아’라는 오랜 편견도 한 몫 한다. 가정 해체, 방임, 학대, 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탈출’하거나 버림받은 그들은 국가로부터 자립 복지에 관한 정책적 차별도 받고 있다.

자료: 한겨레 21. 2019b. 1256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6859.html](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6859.html)) 2021.1.5.검색)

표 2-10 | 아동·청소년 대상별 주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현황

|                  |               | 아동이 있는 가구                    |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쉼터<br>퇴소청소년 |
|------------------|---------------|------------------------------|-----------------------------------------|----------------|
| 주<br>거<br>지<br>원 | 공공임대주택        | 우선공급대상(신혼부부)<br>일반공급(한부모 가족) |                                         | 매입임대           |
|                  | 주거급여          | 수급가구                         |                                         |                |
|                  | 자립수당          |                              | 매월 30만원                                 |                |
|                  | LH 주거지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br>택 지원 보증금, 월세 무료 |                |
|                  |               |                              | 주거환경조성(기본 가전, 가구 구비)                    |                |
| 자<br>립<br>지<br>원 |               |                              | 월 2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br>(연 최대 240만원)      |                |
|                  | 대학생 교육비<br>지원 |                              | 연 40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br>(연 최대 240만원)     |                |
|                  | 어학교육지원        |                              | 수강권 현물 지원                               |                |
|                  | 진로지원          |                              | 직업훈련비 최대 300만원                          |                |
|                  |               |                              | 훈련장려금 50만원                              | 없음             |
|                  |               |                              | 진로장려금 월 20-만원(최대 200만원)                 |                |
|                  | 자립준비 지원       |                              | 프로그램 제공 및 25만원                          |                |
|                  | 청년사회진출지<br>원  |                              | 주거 연 최대 500만원                           |                |
|                  |               |                              | 자기계발비 연 최대 300만원                        |                |
|                  |               |                              | 의료실비보험 가입 및 유지                          |                |
|                  |               |                              | 자립정착금 300~500만원                         |                |
|                  | 디딤씨앗통장        |                              | 1:1정부매칭지원금                              |                |
|                  | 자립지원시설지<br>원  |                              | 1년 이내 자립생활관 거주                          |                |

자료: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2019. 2 활용해 저자 재작성.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병모 소장은 “우리 쉼터에 온 청소년 중 50~60%는 단순 가출이 아니라,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집이 안전하지 않아 살기 위해 나온 경우”라며 “그들에게는 가정 복귀가 아니라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원 없이 자립하는 쉼터 청소년 3만2109명. “퇴소를 앞둔 한 학생이 ‘선생님, 눈을 감아보세요. 깜깜하고 불안하죠? 저희 심정이 그래요’라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주거 문제예요. 당장 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이 절실해요.” (한겨레 21. 2019c. 1286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800.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800.html), 2021.1.5. 검색)

“LH전세를 구하지 못한 자립생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1인가구라 자격 순위가 밀리는 자립생에게 영구 임대주택 1순위 자격을 주면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주택 지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겨레 21. 2019a. 1255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95.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95.html), 2021.1.5. 검색).

## 2) 정책대상별 주거지원정책 관계기관 및 전달체계 현황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정책은 「주거복지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을 출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대상과도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기존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우선대상으로 하였는데, 「주거복지 로드맵 2.0」((관계부처 합동 2020)은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책 소요를 반영하여 발전된 형태이다.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대상의 주거지원 사업과 주무부처, 관련 부처와 기관을 정리하면 <표 2-11>와 <그림 2-2>와 같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일부 정책프로그램은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산하 공사 등이 정책의 기획과 전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데에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센터, 민간 등의 역할이 지대하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은 국토교통부-LH,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아동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협력)-LH(협력)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국토교통부-(LH)-광역시자체-기초지자체, 주거급여의 간접 지원으로 제공되는 주택개보수는 국토교통부-(LH), 주택개량사업 중 에너지효율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관련이 있고 이들 기관에서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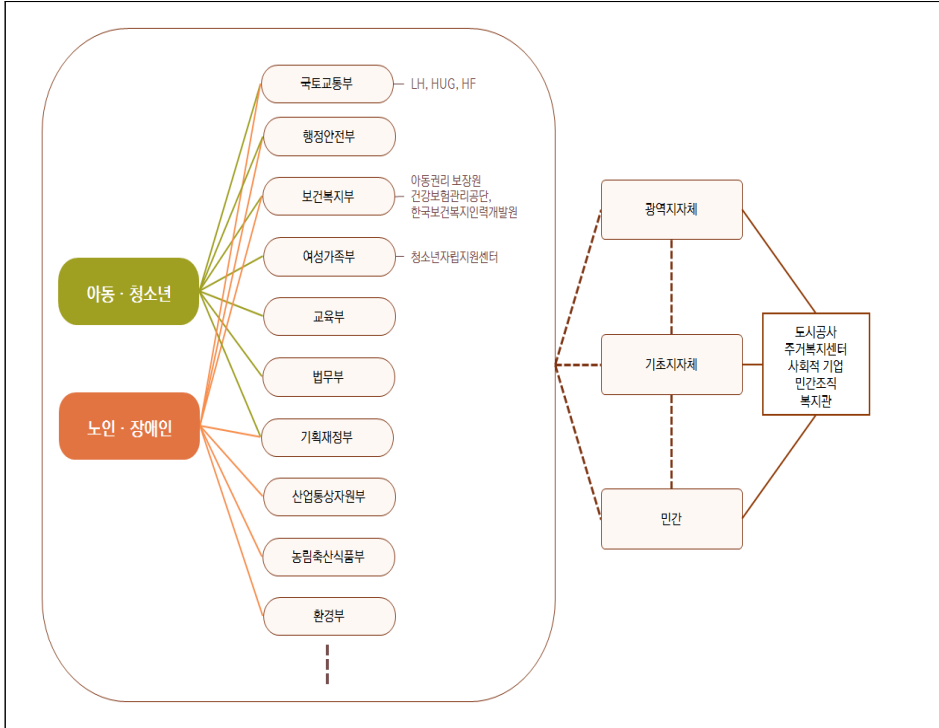
주거급여지원 사업도 저소득, 무주택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 그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은 우선 지원받는다.

표 2-11 | 주거취약계층별 주거지원 정책별 연계 협력 관련 기관

| 주거지원정책<br>대분류 | 지원 | 사업명                                     | 주관부처  | 관련부처                      | 관련 사업                      | 관련 사업의<br>관련 부처        |
|---------------|----|-----------------------------------------|-------|---------------------------|----------------------------|------------------------|
| 공공임대주택        | 직접 | 영구, 국민, 매<br>입임대, 전세<br>임대 등            | 국토교통부 | LH                        | 커뮤니티 케어<br>아동주거지원통합<br>서비스 | 보건복지부,<br>행정안전부        |
| 주거급여          | 직접 | 임대료 지원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br>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생계급여                   | 보건복지부,<br>사회보장위원회      |
| 주택개량          | 직접 | 주거급여 중 개<br>보수 지원(간<br>접지원),<br>에너지 바우처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br>농림축산식품부<br>환경부 | 에너지바우처<br>에너지효율화사업         | 산업통상자원부<br>농림축산식품부     |
| 주거복지 서비스      | 직접 | 상담, 안심확<br>인, 사례관리<br>등                 | 국토교통부 | LH<br>보건복지부               | 아동주거지원통합<br>서비스<br>노인 사례관리 | 보건복지부,<br>건강보험관리공<br>단 |
| 금융지원          | 간접 | 전세자금, 매<br>입자금 대출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 주거지원 대상별 관련 기관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 3)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과 과제

#### (1) 정보시스템 현황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기관 간의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업무를 위한 데이터 및 정보 활용의 필요도에 비해 편리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그림 2-3> 참조).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데이터 양식의 표준화, 자료의 접근권한 개선,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연계이다(<그림 2-4> 참조).

그림 2-3 | 정보시스템 편리성과 개선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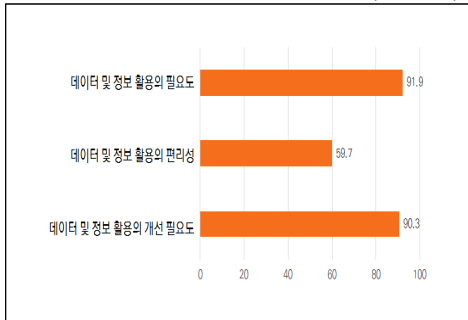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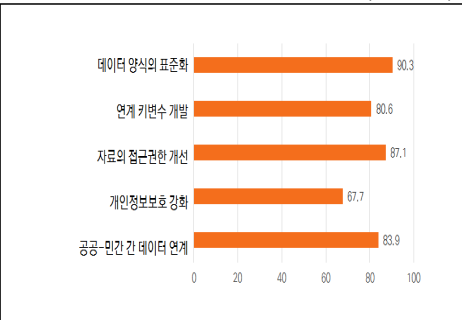


그림 2-4 |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항목

(단위 : %)



자료: 저자 작성

최근 들어서는 사업집행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 등 복지행정 업무 처리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간 연계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이 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정보시스템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① 공공영역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에 따라 2010년도부터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및 복지 관련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복e음’과 ‘범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e음’은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활용한다. ‘범정부’는 범부처 복지사업의 전자적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행복e음’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이 주로 활용한다. 복지급여의 신청, 조사, 지급, 사후관리에 활용하며, ‘범정부’ 시스템은 각 범부처 복지급여 집행기관에서 사용한다(강혜규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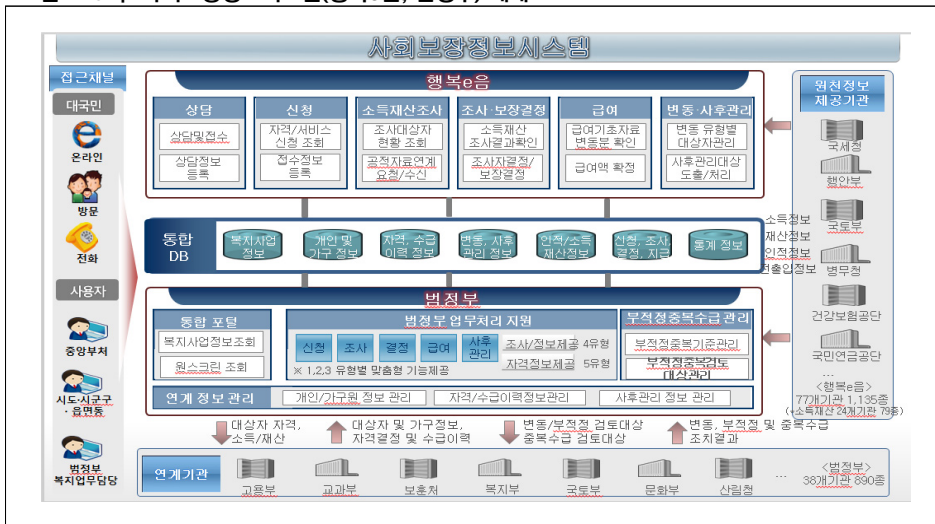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핵심은 정보연계와 정보의 통합관리이다.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연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정보플랫폼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공공영역에서의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원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 기준 ‘행복e음’의 연계정보 현황은 31개 부처와 75개의 운영기관에서 1,003개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은희 20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은 정부부처별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된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주택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12개 사업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7b).

그림 2-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법정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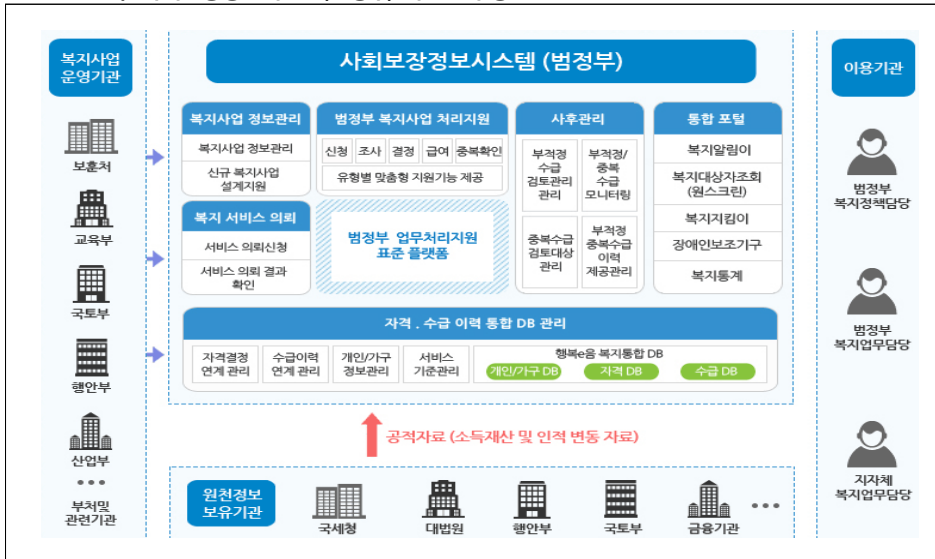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2020년 9월 28일 접속)

그림 2-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시스템 구성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2020년 9월 28일 접속)

그림 2-7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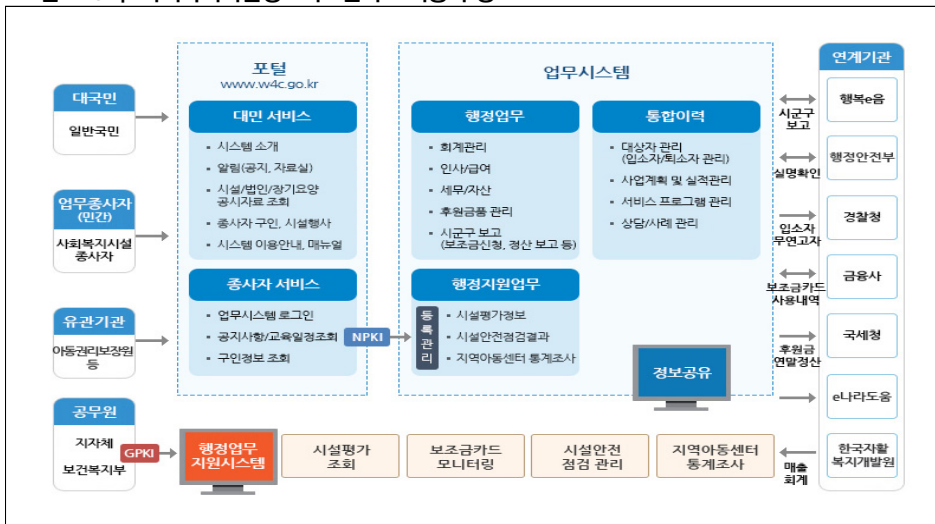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2020년 9월 28일 접속)

## ② 민간영역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다양한 시설들이 민간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민간영역 정보시스템이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여러 종류의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표준화하고 행정적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민관 정보공유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서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등의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자원 연계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많은 민간기관에서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기능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함영진 외 2017).

그림 2-8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기능 구성도



자료: 한국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2020년 10월 5일 접속)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민간영역의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역시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정보연계가 활발하지 않다.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민간영역에서는 각 기관별로 사례관리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

### ③ 공공-민간 연계 협력을 위한 시스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은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발전되어 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영역 접근을 위해 민간영역 정보의 필요성에 의해 점차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개발, 발전되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나 민관정보공유 통합지원시스템 모두 공공-민간영역의 정보연계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LH공사에서 활용하는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정보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스템이 해당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있으나, 영역을 뛰어넘는 차원의 정보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의 경우, 그 영역이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거, 소득, 건강, 돌봄, 정신, 근로 등 영역을 넘나드는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관부처, 영역, 대상 등을 초월하는 정보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④ 민간영역의 사설 시스템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공공-민간 정보의 연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주 이유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있는 반면, 전산입력 양식이나 항목, 방법이 달라서 공공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 또한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능과 영역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공통적인 기능 중심으로 제공하므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존에 축적된 정보를 모두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바꾸어서 정보로 전환하는 것이

---

보통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과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 사례관리 프로세스상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민간영역의 사례관리체계의 개별성 문제이다. 공공은 통합 사례관리라는 표준을 제시하여 많은 민간기관에서 이러한 표준에 따라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민간기관이 동일한 체계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각기 다른 사례관리 프로세스는 사례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다른 필요성을 파생하였고, 그 결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시스템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려면, 사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통합된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단일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민간영역 내에서 시스템 통합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공공-민간영역 간의 정보 공유 부재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관리는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공공영역, 민간영역에서 사례관리를 함께 실시하되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내용, 정보의 공유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공공-민간영역의 정보 공유 기능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민관정보공유 통합지원시스템 역시 개발되었다. 하지만 정보 공유 기능을 담당하는 두 시스템의 활용이 미미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영역의 정보시스템 분절성이다. 현재 민간영역을 통합하고자 개발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민간시설들을 온전히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회계, 정산 등의 일부 업무에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배제하고 사설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적지 않다.

---

따라서 공공, 민간영역을 통합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민간영역에서 그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운영체계에 통일성이 없다. 공공과 민간의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민간 정보시스템보다 불편한 부분이나 민간이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정보 및 운영체계를 표준화하여 기능적 포괄성과 운영적 편리성을 갖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운영체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정보관리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정보 공유의 책임 역할, 시스템상의 사례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 복합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업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의 투명화와 통일적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내에 통일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통일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만 공공의 업무지원 제공, 인센티브 수여 대상 배제 등의 강제성을 띤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 3. 정책연계의 필요성과 실태

#### 1) 정책연계 관련 이론 검토

##### (1) 연계의 개념 정의

연계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또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미<sup>3)</sup>하며, 협력, 연합, 연결 등과 유사한 의미이다. 그리고 협력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으로서 자율적인 조직 간에 개별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긴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연계와 협력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해 관계를 맺고 힘을 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된다. 따라서 과정적으로 [인지→연계→협력→신뢰]의 4단계를 거쳐 형성되며, 최종적으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창출 및 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차미숙 외 2014, 16-17)한다고 할 수 있다.

##### (2) 배경 및 필요성

복지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의 정부 부처 간, 정책 간, 그리고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에 대한 요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욕구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비효율’과 ‘종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으로 인하여 정부 불신”이 팽배하다는 평가와 함께 “정책의 투명성·적시성·일관성을 제고하여 정부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협업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행정안전부 2019a, 1).

---

3)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7%B0%EA%B3%84&range=all>, 2020.12.28. 검색

※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업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

‘협업행정’이란,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기관간, 민·관간 협력을 통해 시설·정보 등을 공유하고 기능을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방식을 뜻함(행정안전부 201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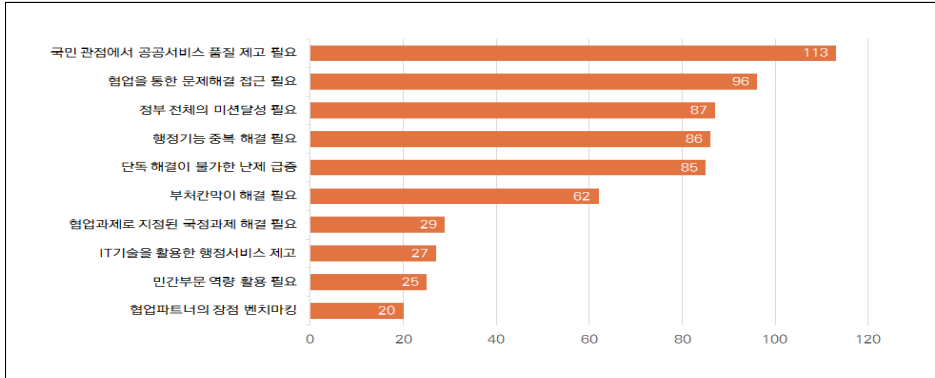
※ ‘업무협조’는 한 기관이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협업행정’은 다수 기관이 수요자인 국민을 위하여 공동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행정안전부 2019a, 11)

정책연계는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부처 이기주의’ 또는 ‘칸막이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 기관 간 협력이 중요(행정안전부 2019a, 5)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데서 출발하였다. 또한 국민이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복합민원 성격의 업무 혹은 여러 유관기관이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행정 내부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가 필요(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하다는 문제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전문화, 분업화되다 보니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들이 속출하고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접근 필요’, ‘정부 전체의 미션 달성 필요’, ‘행정수요 증가 및 행정기능 중복해결 필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단독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 급증’ 등으로 인하여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부 외 2019, <그림 2-9> 참조). 즉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업무방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처럼 연계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부처를 설립하고 협업을 독려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및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주되어 왔다. 즉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기관 간 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를 핵심정책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에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 3.0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 내 정부혁신 조직  
실-정부혁신기획관-협업정책과가 정부조직으로 설립된 것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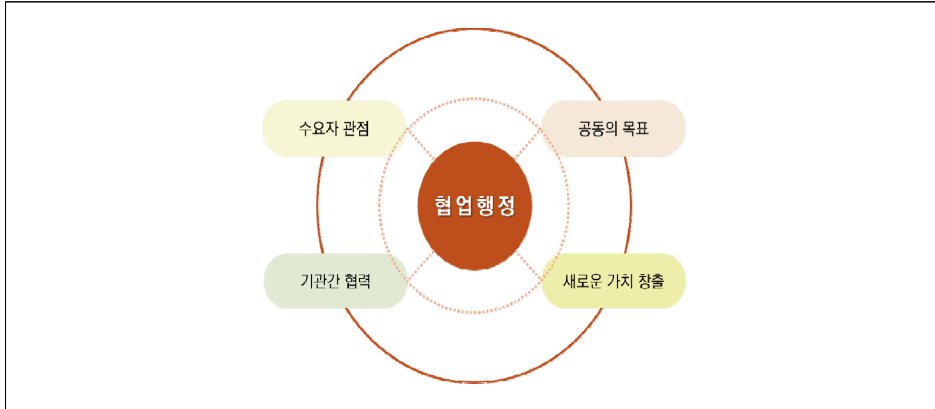
그림 2-9 | 복지지원업무의 연계·협력 필요성 대두 배경



주: 가장 높은 순위 항목 3개를 선택하는 설문에서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으로 하여 합산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외 2019, 424. <그림 52> 내용을 재구성

협업행정의 핵심요소를 행정안전부는 수요자 관점, 공동의 목표, 기관간 협력, 가치 창출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a, 5. <그림 2-3> 참조). 수요자 관점이란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지양하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관간에 공유함을 의미한다. 기관간 협력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유 및 공동 활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치 창출은 비용은 낮추면서(Cheaper) 더 빠른 속도로(Faster) 더 좋은(Better)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너지효과 창출을 의미한다.

그림 2-10 | 협업행정의 핵심요소



자료: 행정안전부 2019a, 5. 재작성

표 2-12 | 협업행정의 특징

| 구분       | 기존 행정       | 협업행정<br>(부처간 정책연계) |
|----------|-------------|--------------------|
| 강조점      | 기관 내부업무 효율성 | 수요자 관점             |
| 기관목표의 특징 | 기관별 개별 목표   | 공동의 목표             |
| 업무협조방식   | 수직적 계층제     | 정부기관간 협력           |

자료: 행정안전부 외. 2019. 13 참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업행정의 효과사례로 제시된 것을 보면, 서비스의 중복 방지<sup>4)</sup>,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sup>5)</sup>, 규제 적합성 확보<sup>6)</sup>, 부처간 칸막이 극복<sup>7)</sup>, 그리고 기존 조직 효과적 활용<sup>8)</sup>이 있다.

4) 예: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구조를 위해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각각 독자적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 발생 → 관련기능 연계, 시설·장비 공동활용으로 중복 방지. (행정안전부 2019a, 8.)

5) 예: 수용자 위기가족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지원정책 부재→ 관계기관간 소통과 정보공유 및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극복(행정안전부 2019a, 8.)

6) 예: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아이스크림(유지방 6% 이상)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빙과류(6% 미만)는 식약처가 각각 별도로 관리→ 부처간 정책협약과 협력을 통해 식약처로 일원화(행정안전부 2019a, 8.)

7) 예: 협업행정은 개별부처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공동목표 설정 및 대안 마련→ 협업행정 성공모델 창출·확산시 칸막이 극복 가능(행정안전부 2019a, 8)

---

협업행정의 법적 근거는 협업행정매뉴얼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제46조(‘12.1월)에서 찾을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9a, 9).

- 제44조 : 각 행정기관이 융합행정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5조 :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46조 : 각 기관은 추진한 융합행정의 성과평가·분석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제46조를 개정하여 협업행정 촉진조항을 신설·보완 추진 중에 있다(2023년 11월 개정 예정).

### (3) 최근 정책연계 연구동향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삼아,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런 목적 하에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하여 협업 실태를 분석(행정안전부 외 2019)한 연구가 있다. 연구의 목적은 행정안전부 돌봄 분야에서 협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관리적 개선방안 마련 및 협업 촉진 도구 개발이다.

이 연구는 중앙행정기관과 기관간의 3년간(‘17~’19)의 공문서 및 이메일 등을 전수 취합하여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설문조사(105명)를 통한 정성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돌봄과 관련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온종일지원단 등 돌봄과 관련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자료를 수집하였다. 정보의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공문서(공문서(1,521개), 메모보고(2,385건), 공문서와 메모보고(3,906건), 이메일(16,963건)을 활용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돌봄 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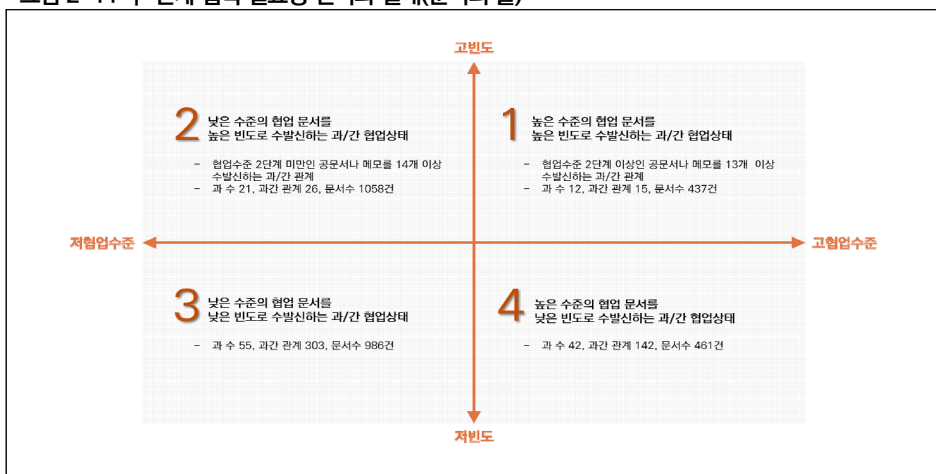
---

8) 예: 조직개편 등 H/W적 접근은 조직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빈번한 활용 곤란→ 협업행정은 S/W적 접근, 기존의 조직·기능·자원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행정안전부 2019a, 8)

원 10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명의 담당공무원(교육부 A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에 대하여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방식을 이용한 협업실태조사 결과 협업단계를 협업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공문서 등의 수발신 빈도와 수를 기준으로 제4사분면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그림 2-11〉 참조).

그림 2-11 | 연계 협력 필요성 인식과 실태(분석의 틀)



주 1): 협업수준 기준은 2단계(공동의사결정)이상과 미만으로 분할

주 2): 빈도기준은 문서셋트가 각각 50%씩 분할되도록 중앙값을 사용

자료: 행정안전부 외 2019, 177 재구성.

#### (4) 연계·협력의 효과와 추진체계 관련 연구동향

미국 오바마정부는 GPRAMA(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Modernization Act) of 2010(협업 및 지식공유부터 공동정책 결정·운영에 이르기까지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률)<sup>9)</sup>을 제시한 바 있다.

9) 이 법은 기존의 GPRAMA를 확장한 법률로서 범정부 차원의 목표 설정과 부처간 조정 및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통적인 관료제에 기반한 정부운영방식과는 다르게 정부의 계획, 우선순위, 정책목표의 선정에 있어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창업지원 분야 공간통합형의 다부처 서비스 전달체계 협업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으로 부처간 협업, 중앙정부-지자체간 협업, 지자체와 민간간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sup>10)</sup> 중 두 번째 추진과제인 기관간-기관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시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외(2019b)는 주요 정부업무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을 위해 사회연결망(공문을) 분석하여 협업 실태와 수준을 제시하였다.

## 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실태

### (1) 조사개요: 조사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정책연계는 조작적으로 협업 행정으로 정의한다. 연계는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 기관간의 정책연계는 다수의 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한 업무 처리 방식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연계라는 용어와 행정학적 차원의 협업(협력) 행정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주거취약계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관련 공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연계 실태를 파악하고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하였다. 조사는 2020년 6월23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조사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 중앙 및 지자체 실무자 및 관련 공사 담당자이다. 중앙부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그리고 LH 공사의 담당자 등이다. 지자체(광역시, 기초)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전주

---

10) 정부혁신 6대 추진과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간-기관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행정안전부 2019b.2.29. 보도자료 중)

시와 광주시 서구를 선정하였고 연계 선상에서 광역지자체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시흥시)는 인터뷰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시 협업 현황, ②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연계(협업) 계기와 추진 과정, 그리고 ③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협업 추진성 과에 대한 실태 및 현황 파악이다. 조사지는 부록 5, 설문결과는 부록 6에 첨부되어있다.

**표 2-13 | 연계 협력 현황 조사 표본 수 (기획안)**

| 구분         |      | 영역: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
|------------|------|-----------------------------------|
| 중앙<br>시행기관 | 60부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
| 지자체        |      | LH, SH                            |
| 기초         | 20부  | 서울시, 전라북도                         |
| 계          | 20부  | 전주시, 광주시 서구                       |
| 계          | 100부 |                                   |

자료: 저자 작성

**표 2-14 |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                |                | 사례수 (명) | 계 (%) |
|----------------|----------------|---------|-------|
| 소속<br>기관       | 전체             | (62)    | 100.0 |
|                | 중앙부처 및 공사      | (33)    | 53.2  |
|                | 지방자치단체         | (29)    | 46.8  |
| 담당<br>업무<br>분야 |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 (32)    | 51.6  |
|                | 아동·청소년         | (11)    | 17.7  |
|                | 노인·장애인/커뮤니티 케어 | (19)    | 30.6  |

자료: 저자 작성

## (2) 주거지원 업무 연계 현황(설문조사결과)

### ① 연계 추진 대상 및 사업

주거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 협업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중앙부처 및 공사 담당자는 업무 수행시 중앙부처(39.4%), 공사(25.8%)와 주로 협업을 추진한다(<그림 2-12>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29.8%), 기초자치단체(19.1%), 공사(19.1%), 민간(17.0%) 순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그림 2-13> 참조). 중앙은 관계부처와 관련된 공사와 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에서 기초로 그리고 민간으로 주거지원 정책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 중앙부처의 협업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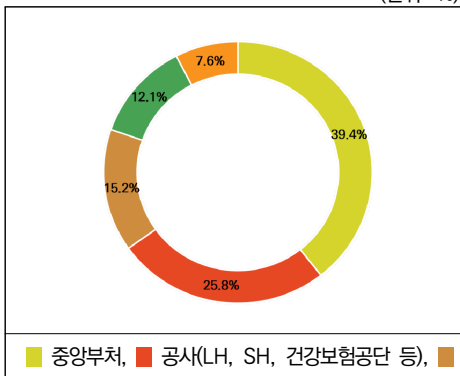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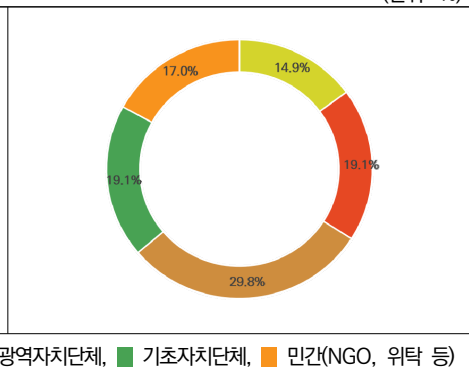


그림 2-13 | 지자체의 협업기관

(단위: %)



주: 복수응답결과를 100% 기준으로 조정

자료: 저자 작성

주로 추진하는 협업사업은 중앙부처 및 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21.5%), 특정대상 주거지원(19.0%), 그리고 주택개량 관련, 아동·청소년 관련 순이다(<그림 2-14>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지역특화된 사업으로서 특정대상 주거지원(18.9%),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17.6%), 주택개량 관련(17.6%),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순으로 협업을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15> 참조).

그림 2-14 | 중앙부처 및 공사의 협업사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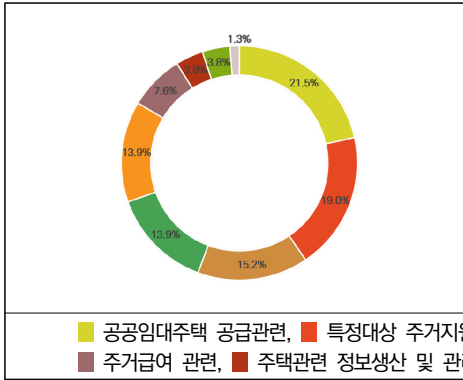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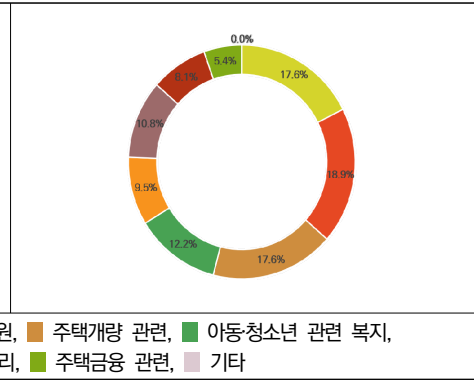


그림 2-15 | 지자체의 협업사업

(단위: %)



주: 복수응답결과를 100% 기준으로 조정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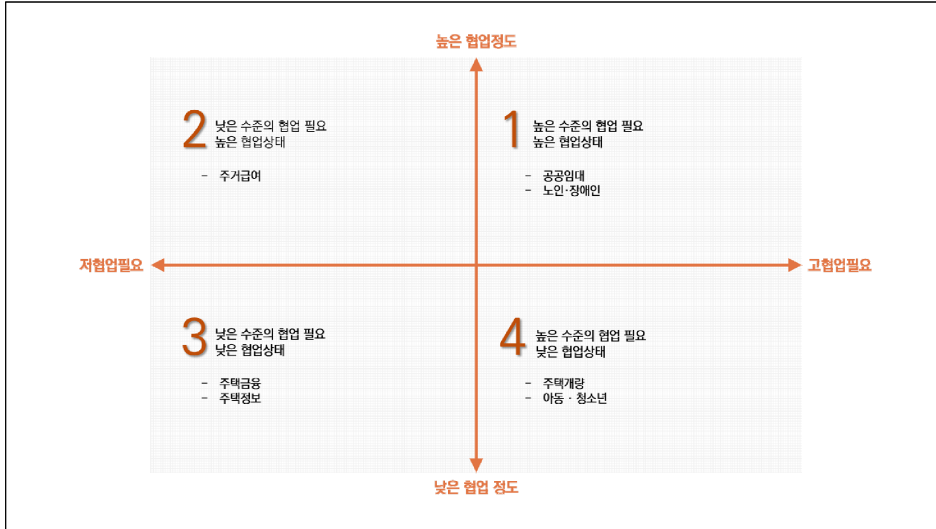
## ② 연계의 필요성과 연계 현황

주거지원업무의 연계 필요성과 현재의 연계 정도 결과를 <그림 2-16>과 <그림 2-17>와 같이 사분면 그래프로 정리하여 각 분면에 속하는 정책분야를 나타냈다(직접 점수화된 그림은 부도 8~12 참조)<sup>11)</sup>.

주거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출발점인 중앙부처 및 공사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계 협력의 필요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정책(1사분면)은 주로 공공임대와 노인·장애인 대상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필요성은 높는데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정책(4사분면)이 주택개량과 아동·청소년 관련 주거지원정책으로 응답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그림 2-16> 참조).

11) 사분면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7점 척도로 질문한 응답의 전체 평균. 즉 연계 협력의 필요성(X 축)은 평균값인 5.9점, 연계 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축(Y 축)은 평균값인 4.4점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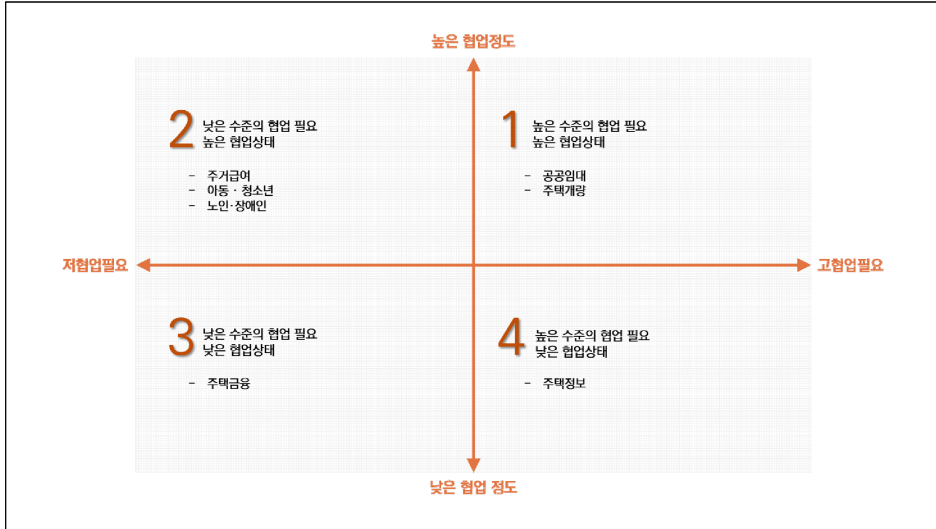
그림 2-16 | 중앙부처 및 공사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 정도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지자체의 경우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이 잘되고 있는 정책업무 영역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연계 협력의 필요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정책(제1사분면)은 주로 공공임대와 주택개량 관련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2-17> 참조). 그리고 필요성은 높는데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정책(제4사분면)이 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응답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2-17 | 지자체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 정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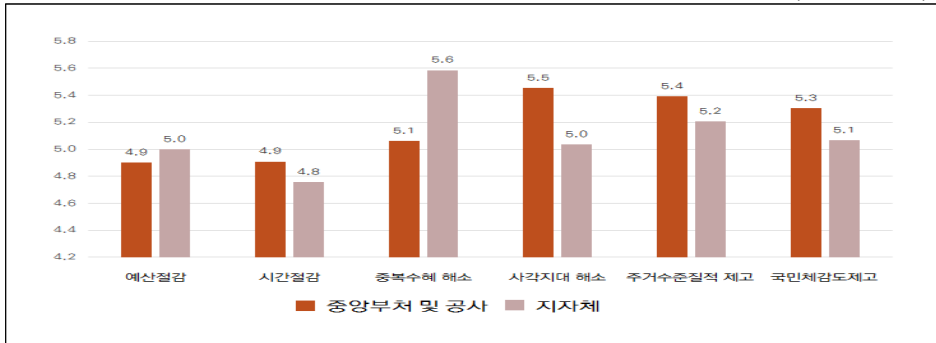
### ③ 연계의 성과

연계 협력의 성과는 ‘중복수혜 해소’, ‘사각지대 해소’,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가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 ‘국민체감도 제고’이다. 가장 낮은 성과는 ‘시간 절감’과 ‘예산 절감’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부처 및 공사는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수준 질적 제고가 높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자체는 중복 수혜 해소가 가장 높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2-18> 참조).

그림 2-18 | 소속기관별 연계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

(단위: 7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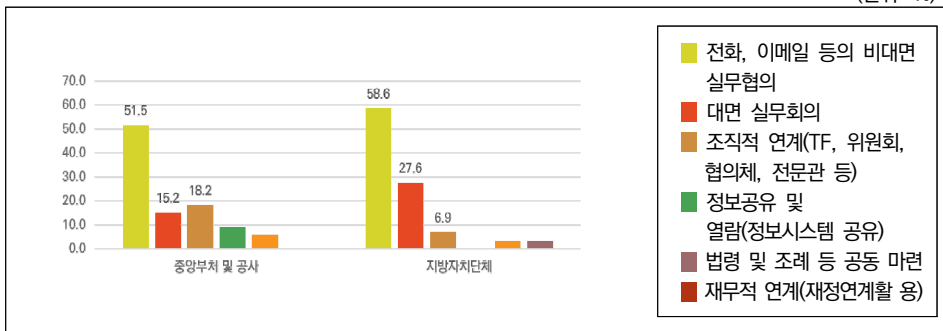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④ 연계 협력 방식과 어려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의 방법(1순위)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의 비대면 실무협의를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다. 두 번째로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중앙부처와 공사에서는 조직적 연계, 그리고 지자체는 대면 실무협의를 실제적 연계 협력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19> 참조).

그림 2-19 | 현재 연계 협력의 방법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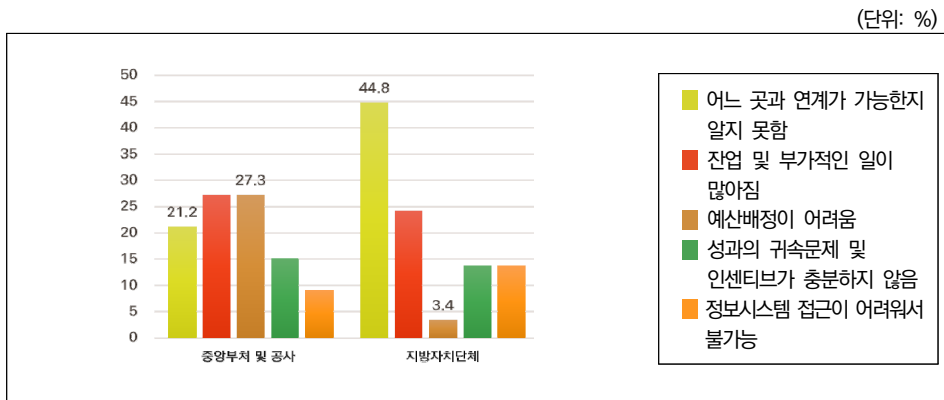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연계 협력 시 어려운 점은 업무 담당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 및 공사는 ‘예산배정의 어려움’, ‘잔업 및 부가적인 일이 많아짐’, 지자체는 ‘어느 곳과 연계가 가능한지 알지 못함’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그림 2-20> 참조).

그림 2-20 | 소속기관별 연계 협력 시 어려운 점 (1순위)



자료: 저자 작성

##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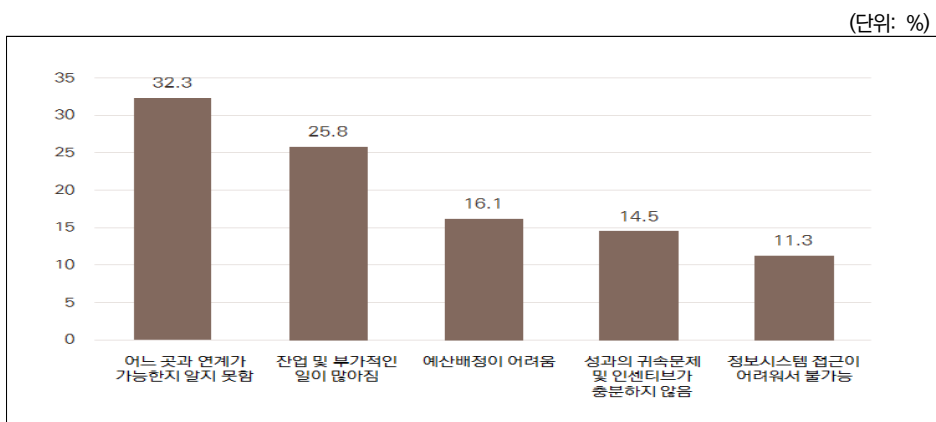
주거취약계층과 정책대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역시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비주택 거주라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 중심의 관점에서, 생애주기에 대한 관점이 첨가되면서 사람 중심의 관점과 주거취약계층이 점차 다면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기초하에 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확장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가구,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생애주기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정의한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로 주거취약 대상가구의 규모를 분석해보면, 주거취약 대상가구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122만 가구이다. 이중 약 60만 가구가 아동·청소년 가구이고 약 62만 가구가 노인·장애인 가구, 노인이면서 장애인 가구는 약 6만 5천 가구 규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간 정책을 연계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에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정책전달에 있어서도 상호 관련성이 많지만 실제로는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책 담당기관들과의 소통 혹은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파편적이고 상호 전달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림 2-21〉 참조). 정보시스템이 전달되는 거버넌스가 구성되지 않은 현재 체제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수집, 활용되고 있다. 이는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받거나 기다리는 것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그림 2-21 | 주거지원정책 연계 협업의 장애요인



자료: 저자 작성

---

주거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연계될 때 주거복지수준의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정보관리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영역의 주거복지 지원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통일된 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의무규정과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통일된 정보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에 한하여 정책현황과 전달체계, 연계상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조회 및 연계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한다.



## CHAPTER 3

#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1.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개요 ..... 57
2.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문제점 ..... 66
3.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86



---

## 03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생애주기의 초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는 국내 사회복지 영역에서 최근 들어 제도와 논의와 법령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부처별 주거지원서비스 추진과 연계 실태 분석을 토대로, 대상 정의의 일관성 결여, 저렴주택 수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양육 가구가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법제도 개선, 저렴주택 공급 확대와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 1.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개요

#### 1) 아동·청소년 주거권 인식과 필요성 증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은 1959년 '아동권리선언' 원칙<sup>1)</sup>,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3항<sup>2)</sup>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아동 발달에

---

1) <https://www.un.org/en/sections/issues-depth/children/>, 2020. 11. 30. 검색

1959년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의 권리로 보호권(protection), 교육권(education), 의료권(health care) 주거권(shelter), 좋은 영양(good nutrition)의 권리를 정의.

2)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2020. 11. 30. 검색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제16조 제1항: 어떤 아동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나 통신에 임의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침해를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비합법적인 공격을 받아서는 안된다.
- 제27조 제1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에 적절한 생활 기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제27조 제3항: 정부는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수단들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하면 특히 영양, 의복과 주거에 대해 물질적인 지원과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주거기준의 철저한 충족,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공간 필수 마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지, 통학 및 이동에 있어 안전 보장과 함께, 주거권은 대상이 누구든 정의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양질의 적절한 상태에서 거주할 권리, 강제퇴거 등 위협받지 않는 상태가 중요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장과 자립을 저해하지 않는 주거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김지연 외 2020).

아동의 주거권은 주거빈곤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에 대한 영향이 지대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여러 문제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거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3-1 | 주거빈곤이 아동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

|     |                                                                                                                                                                                                   |
|-----|---------------------------------------------------------------------------------------------------------------------------------------------------------------------------------------------------|
| 생존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 부담으로 식료, 교육 등의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주거 강제퇴거 위험 노출, 박탈 경험</li> <li>- 적절한 주거 및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고나 재해, 질병 위험, 위해물질에 노출, 스트레스, 수면방해 등 경험</li> </ul> |
| 발달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과소 지출,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에 노출, 공부와 놀 공간 부족 및 부적절, 기타 사회관계 네트워크 형성에 부정적(반복적인 이사 등)</li> </ul>                                                                |
| 보호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와 성적 착취 등 위험성에 노출가능성 높음</li> <li>- 아동 노동(아르바이트 등)을 할 가능성이 높음</li> </ul>                                                                                |
| 참여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생활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li> <li>- 교류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li> </ul>                                                                                   |

자료: 임세희 외 2018, 45. 표10.

## 2) 국내 아동 주거취약가구와 주거 위기 청소년 현황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 복지는 각기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 주거취약가구와 주거위기 청소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가구는 총 540만 가구이며, 이 중 약 10%인 59만 가구가 주거 취약에 해당한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약 1만 4천 가구이다. 이를 합하면 아동·청소년 가구 중 약 11%에 해당하는 60만 가구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한다

(〈표 2-2〉, 〈표 3-2〉 참조).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침실 미달 가구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2-3〉, 〈표 2-4〉 참조).

표 3-2 | 아동·청소년 주거취약계층 가구수 규모

(단위: 천 가구)

|              | 가구수    | 최저주거<br>기준미달<br>(A) | 주거비부담<br>과다<br>(B) | (A U B) | 비주택<br>거주<br>(C) | (A U B U C) |
|--------------|--------|---------------------|--------------------|---------|------------------|-------------|
| 전체           | 19,979 | 1,060               | 2,000              | 2,854   | 456              | 2,925       |
| 아동·청소년<br>가구 | 5,450  | 183                 | 416                | 588     | 14               | 594         |

주 1): 주거비부담과다가구는 RIR 30% 이상인 가구

주 2): 비주택거주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주(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오피스텔, 기타) 거주가구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19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저자 작성, 앞장의 〈표 2-2〉 재정리.

한편, 주거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가정 밖 보호아동이 약 3만 명이다. 이 중 매년 2,600명의 아동이 만 18세를 기점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종료 아동)하고, 청소년쉼터(2년 이상 이용) 퇴소 아동은 100여 명에 달한다(국토교통부 2019. 10. 24. 보도자료). 즉 주거취약 아동·청소년 60만 가구와 청소년 2700명이 긴급한 주거문제에 봉착해 있다.

### 3)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1)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정책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주거정책은 공급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수요 정책인 주거급여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가구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가. 아동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유형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이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요건이 있다(<표 3-3><sup>3)</sup>참조). 분양주택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및 분양과 임대의 중간단계인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다.

표 3-3 | 아동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기준

|              |                 |                                                                                                                                                                                                                                                                                                                                                                                                                                                                                                                               |
|--------------|-----------------|-------------------------------------------------------------------------------------------------------------------------------------------------------------------------------------------------------------------------------------------------------------------------------------------------------------------------------------------------------------------------------------------------------------------------------------------------------------------------------------------------------------------------------|
| 영구임대주택       | • 일반<br>공통조건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
|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 우선공급대상으로 혼인가간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일반공급대상으로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br>-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
| 매입임대주택       | • 일반<br>공통조건    |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
|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br>-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
| 전세임대주택       | • 일반<br>공통조건    | - 전용 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을 대상<br>-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 ① 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소년소녀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일반가정위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동생활가정 ③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가구 ④ 보충거절자 ⑤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⑦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⑧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 |                 | -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무주택가구에게 매입형은 1.6억원, 리모델링형                                                                                                                                                                                                                                                                                                                                                                                                                                                                                    |

3) 2020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보호자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와 관련된 명시된 규정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정리함.

|                |                 |                                                                                                                                                                                                                                                                                                                                                                                                       |
|----------------|-----------------|-------------------------------------------------------------------------------------------------------------------------------------------------------------------------------------------------------------------------------------------------------------------------------------------------------------------------------------------------------------------------------------------------------|
|                |                 | <p>은 2.3억원, 전세형은 1.1억원을 지원(일반지원금액보다 상향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이 1순위, 그 외(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자산기준 2억 8천만원)는 2순위로 하되 가점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 자녀수, 현주거환경(방수, 지하층 거주 등)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가점</li> <li>-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li> <li>- 2020년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는 무보증금·보증금 50% 할인을 적용하며, 전세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인하고,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li> </ul> |
| 국민임대주택         | • 일반<br>공동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li> </ul>                                                                                                                                                                                                                                           |
|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입주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신혼부부 입주 1순위 부여.</li> </ul>                                                                                                                                                                                                                                   |
| 장기전세주택         | • 일반<br>공동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장 20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은 60㎡이하이며 보증금은 시중시세의 80% 수준</li> </ul>                                                                                                                                                                                                                                                                                      |
|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공급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소년 소녀가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태아 포함)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지정. 혼인기간 중 출산 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신혼부부 입주 1순위 부여</li> </ul>                                                                                       |
| 행복주택           | • 일반<br>공동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이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 혹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li> </ul>                                                                                                                                                                                                                                                                                      |
|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자격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입주기간은 무자녀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li> </ul>                                                                                                                                                                                                                                                         |
| 신혼부부전세<br>임대주택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li> <li>-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서 'Ⅰ형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Ⅱ형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로 제한</li> <li>- 총자산은 2억 8천 만원 이하(2019년도 기준)</li> </ul>                                                              |
| 신혼희망타운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용 6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li> <li>-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li> </ul>                                                                                                                                                                                              |
| 분양전환<br>임대주택   | • 일반 공동<br>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가구를 대상</li> </ul>                                                                                                                                                                                                                                                                                                                 |
|                | • 아동가구<br>관련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 건설량의 10%, 혼인기간 3년(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건설량의 15%를 배정</li> <li>-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까지 지원이 가능</li> </ul>                                                                                                                                                                                                    |

자료: LH청약센터 마이홈 포털, 요약 재정리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2020. 10. 11. 검색)

## 나. 보호종료 아동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호종료 아동의 입주자격을 규정한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있다. 보호종료 아동은 청년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일상적 지원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는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다른 청년들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주거정책과 구분하여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에서만 별도로 보호종료 아동의 입주자격을 규정하였다. 2019년 10월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국토교통부 2019)에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매입임대주택 형태의 주거 지원과 통합사례관리가 결합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표 3-4 | 보호종료 아동대상의 공공주택 입주 기준

|                         |                                                                                                                                                                                                                                                                                                                                                                                                       |
|-------------------------|-------------------------------------------------------------------------------------------------------------------------------------------------------------------------------------------------------------------------------------------------------------------------------------------------------------------------------------------------------------------------------------------------------|
| 건설임대주택<br>(영구, 국민, 행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보장원의 추천을 받은 보호시설 퇴소 예정자 및 5년 이내의 퇴소자</li> <li>- 임대유형에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고정</li> <li>- 월임대료는 기본임대료에 보증금 차액 전환 임대료로 구성</li> <li>- 기본 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 입주자격 검증을 통해 최장 영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행복주택은 6년까지 거주</li> </ul>                                                                                                                                          |
| 매입임대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li> <li>- 보증금 100만원, 임대기간은 2년,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6년까지 거주</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li> </ul>                                                                                                                                                                                            |
| 소년소녀가정 등<br>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가정위탁아동 포함)</li> <li>- 임대보증금 부담이 없으며, 월임대료는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li> <li>-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기본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기본임대료(1~2%)를 적용</li> <li>- 보호대상 아동수 1명: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 6천만원 지원</li> <li>- 만 20세 이후에는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계속 거주 희망시 기존주택유형으로 전환하여 소득 10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계속 거주</li> </ul>                                        |
| 청년전세임대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 혹은 퇴소한 지 5년 이하 인자</li> <li>-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 자격기준 충족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li> <li>- 1인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까지 지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주택 대상</li> <li>- 만 20세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 무이자 지원, 만21세 이상의 경우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대출이자의 50% 감면</li> </ul> |
| 청년매입임대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 혹은 퇴소한 지 5년 이하 인자</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의 6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비치,</li> <li>-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li> <li>-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이 가능, 최장 20년 거주</li> </ul> |
|--|--------------------------------------------------------------------------------------------------------------------------------------------------------------------------------------------------------------------------------|

자료: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1>

2020.10.11. 검색, 보건복지부 2020c, 21, 23 재정리

## 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과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 지원과 사례 관리가 결합 된 지원주택의 일종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5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종료 아동 중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혹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1호당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며, 아동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사례관리비를 지급한다(복지로<sup>4)</sup>, 2020.10.11. 검색).

## 라.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요 측면의 주거복지지원으로 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적절한 주거에서 살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하나로 중위 소득 45% 미만인 경우에 지급된다.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거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 ① 아동가구 대상 주거급여: 시흥형 아동주거비 추가지원 사례

2020년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가구 주거급여 지원은 없다. 아동

4)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16492>,

---

가구는 다른 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임차가구의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근거로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 필요성에 따른 주택개량지원을 주거급여로 받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가구의 추가 주거비 소요를 고려한 사례로 시흥형 아동주거비 추가 지원이 있다.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주거기본조례」를 시행하면서 ‘아동주거빈곤’의 개념을 신설하고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아동주거빈곤 가구 지원 내용을 포함하였다(임세희 외 2018, 187). 여기에 빈곤 아동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를 위한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1월 시흥시는 시흥형 아동주거급여를 시행하면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시흥형 아동주거급여비는 아동 주거권 개선을 목표로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아동 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아동주거비)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sup>5)</sup>

## ② 보호종료 아동대상 주거급여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급여는 2020년 현재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고 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이 사례관리가 결합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사례관리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를 지역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복지로, 2020. 10. 11. 검색).

## (2) 현행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정책의 문제점

현행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정책은 최근 아동 주거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아동이 없는 경우 14만 8,500원의 월 주거비를 받지만 이 가구에 아동이 1명 포함되면 4만 4,550원을 더 받아서 총 19만 3,050원을 주거비로 지급받음. 아동이 2인이면 8만 9,100원을 추가 지급받아서 가구의 주거급여액은 23만 7,600원이 됨(최은영 2019).

---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저렴하면서 적절한 규모의 주택이 부족하다. 아동가구의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면적과 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9년에 다자녀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었다. 이 주택은 2020~2022년 3년간 핵심대상으로 1.7만 가구, 2025년까지 총 3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b). 그러나 이 주택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동·청소년 주거취약계층 규모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공급 규모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의 현실성 결여 문제이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대상 주거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과 최저임금제의 정합성 부족으로 부모의 근로활동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sup>6)</sup> 즉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모들은 근로연령대에 속하며, 부모의 근로활동 여부는 아동에게 소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적어도 최저임금과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입주자격 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 기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 문제이다.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자녀 2인 이상)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소득기준은 매입임대주택 혹은 전세임대주택보다 높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있다. 신혼부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포함)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미만의 무주택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이미 자

---

6) 1순위를 기준으로 양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3조),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2020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9-49호).

2020년 중위소득은 3인가구 기준 3,870,577원으로(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보건복지부, 2019. 8.5), 중위소득 50%는 1,935,289원임.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638>, 2020. 10.12.검색), 아동 1명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맞벌이를 하는 아동가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 가구가 될 수 없음. 맞벌이를 하는 순간 설령 부모 모두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2순위도 되지 않으며 3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미만)로 밀려남. 2인가구 중위소득의 60%는 1,795,188원이므로, 아동 1명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순간 한부모가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 가구에서 제외되고 2순위가 됨.

---

녀가 있는 가구, 그것도 2자녀를 키우는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보다 신흥부부대상 주택의 소득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다. 아동가구의 경우 높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맞벌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성실하게 근로하면서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문제점

### 1) 부처별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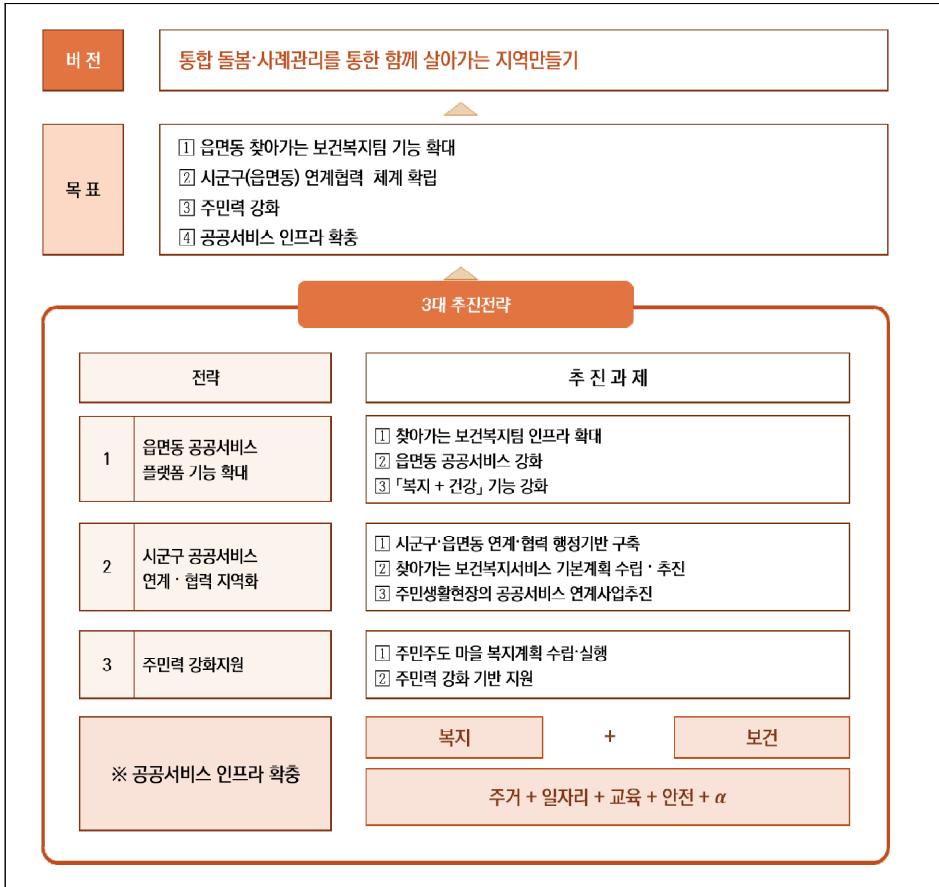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주거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가 주로 지원한다. 지원은 아동청소년 가구와 가정 밖 아동청소년 가구로 나누어 제공한다. 부처별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계 실태

공공서비스의 하나인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서비스의 주요 전달체계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통합돌봄과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0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례 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만들기’라는 비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그림 3-1〉). 이 계획은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 ‘주민력 강화 지원’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1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020년 추진계획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14.

주민들이 복지, 보건과 함께 주거, 일자리, 교육, 안전 등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대상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공공서비스 강화와 시·군·구의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예방·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자원을 만들어가는 주민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 □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착한 읍·면·동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를 위한 제1의 과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확대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고, 복지대상자 발굴, 방문 상담을 통하여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적 서비스나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보건복지부 2018). 2019년 현재 전체 읍·면·동사무소 3,480개소 중 2,911개소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대상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가구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 2020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조직모형(안)은 <표 3-5>와 같다.

표 3-5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모형(안)

| 구분  | 모델       | 기능                                               | 조직                            | 비고                         |
|-----|----------|--------------------------------------------------|-------------------------------|----------------------------|
| 동·읍 | 기본형      | ·종합상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br>·복지+건강 서비스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3명, 간호 1명  |
|     | 확장형      |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범위 확대<br>·종합상담 심화<br>·민간연계 실질화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7명, 간호 1명 |
| 면   | 기본형      | ·읍·동 기본형 모델과 동일                                  |                               |                            |
|     | 농어촌 특성화형 | ·기본형 모델과 동일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미설치<br>(전담 인력 배치) | ·복지 2명, 간호 1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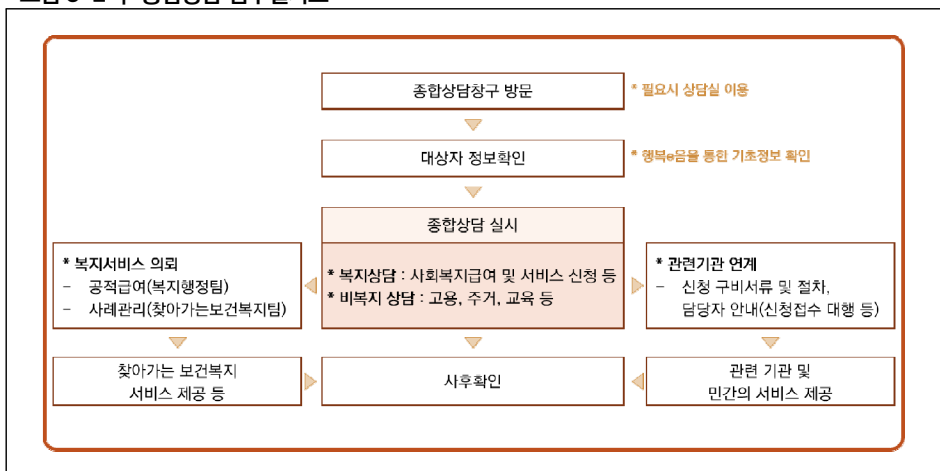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24.

특히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기존의 기본형에

서 확장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24). 인력도 복지 3명에서 복지 7명으로 확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 확충에 따른 추가 업무로 주거, 고용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의 통합 상담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37). 또 기존에는 거동불편대상 가구를 집중 방문하여 상담하던 것에서 방문대상을 출산양육가구,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빈곤가구, 주거취약가구, 아동학대피해가구, 한부모가구, 장애 등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방문 상담하는 등 예방적 관리로 확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35). 즉 확장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경우 ‘주거복지’ 업무를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에 「종합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유관 부서 및 관계 공공, 민간기관을 연계하고, 주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39). 타 기관 업무일 경우 관련 신청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신청절차 및 담당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후 최소 1회 이상 사후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2020, 42). 종합상담 업무절차도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 종합상담 업무절차도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39.

---

## □ 시·군·구

시·군·구는 지역사회 고유의 문제 해결 및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 구축의 중심이 된다. 시·군·구는 서비스·자원 등의 생산과 배분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1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계획을 지역 단위로 세우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세부사업,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17). 또한 기관별로 분절화된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69). 특히 시·군·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상시발굴하는 체계의 중심이 된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108). 시·군·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다음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107).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111).

### ●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총괄·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6). 일반 사례관리 업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함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의 상담 및 사례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서비스 질을 관리한다. 지역 자원의 총괄 관리가 일차적인 목표이다. 읍·면·동에서 다루기 힘든 고난도 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요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b).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20b, 7).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7).

## ●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은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여부 등 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복지 사각지대 주요 정보연계 현황은 다음의 <표 3-6>과 같다.

**표 3-6 | 복지사각지대 주요 정보연계 현황**

| 근거: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         | 근거: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                                            |
|---------------------------------------------------------------------------------------------------------------------------------------------------------------------------------------------------------------------------------|---------|-------------------------|--------------------------------------------|
| 정보내용                                                                                                                                                                                                                            | 보유기관    | 정보내용                    | 보유기관                                       |
| 단전                                                                                                                                                                                                                              | 한국전력공사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 건강보험공단                                     |
| 단수                                                                                                                                                                                                                              | 상수도사업본부 | 의료 위기 <sup>1)</sup>     |                                            |
| 단가스                                                                                                                                                                                                                             | 도시가스사   | 범죄 피해                   | 경찰청                                        |
| 학교장 추천                                                                                                                                                                                                                          | 교육부     | 화재 피해                   | 소방청                                        |
| 건보료 체납                                                                                                                                                                                                                          | 건강보험공단  | 재난 피해                   | 행정안전부                                      |
| 기초수급 탈락·중지                                                                                                                                                                                                                      | 보건복지부   | 주거 위기 <sup>2)</sup>     | 국토교통부<br>한국토지주택공사<br>각 지방개발공사<br>아파트 관리사무소 |
| 복지시설 퇴소                                                                                                                                                                                                                         |         | 고용 위기 <sup>3)</sup>     | 고용노동부<br>근로복지공단                            |
| 금융연계                                                                                                                                                                                                                            | 신용정보원   | 방문건강사업 대상               | 보건복지부                                      |
| 1) ①의료비 부담 과다, ②장기 요양<br>2) ①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br>②월세 30만원 이하<br>③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br>④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br>3) ①개별연장급여 대상자<br>②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br>③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br>자 중 실업 급여 미수급자<br>④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br>⑤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         | 기저귀 분유지원                |                                            |
|                                                                                                                                                                                                                                 |         | 신생아 난청지원                |                                            |
|                                                                                                                                                                                                                                 |         | 영양플러스 미지원               |                                            |
|                                                                                                                                                                                                                                 |         | 전기료 체납                  | 한국전력공사                                     |
|                                                                                                                                                                                                                                 |         | 자살고위험군                  | 자살예방센터                                     |
|                                                                                                                                                                                                                                 |         | 내원사유 자해·자살              | 응급의료센터                                     |
|                                                                                                                                                                                                                                 |         | 휴·폐업자                   | 국세청                                        |
|                                                                                                                                                                                                                                 |         |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 행정안전부                                      |

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취약 및 위기 가구 발굴 대상('19.12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112.

이 중 주거위기자의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관련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얻는다(<표 3-6> 주거위기 2 참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마이홈센터(LH) 등 기타 유관기관과 연계

읍·면·동 종합상담을 통해 파악된 서비스 욕구가 타 기관 업무일 경우 읍·면·동은 주거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및 신청 절차, 담당자를 안내하고, 사후 최소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sup>7)</sup>. 이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을 기초로, 각 부처(기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5개 보장기관이 서비스 의뢰 활용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5개 보장기관 중 주거 관련 기관으로는 LH공사의 마이홈상담센터(56개소)가<sup>8)</sup> 있다. 마이홈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마련금융자금 등 맞춤형 주거복지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 ②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지만,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조기 지원하기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증가하는 아동학대의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도 또는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 □ 드림스타트

전국 229개 시·군·구에 드림스타트가 설치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f, 21). 드림스타트는 읍·면·동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 통합 보호의 주요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보건복지

---

7)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42.

8)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201.

---

부 2020f, 20). 사업대상은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을 우선으로 하되, 만 12세 이후에도 지속사례관리가 필요하면 만 1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f,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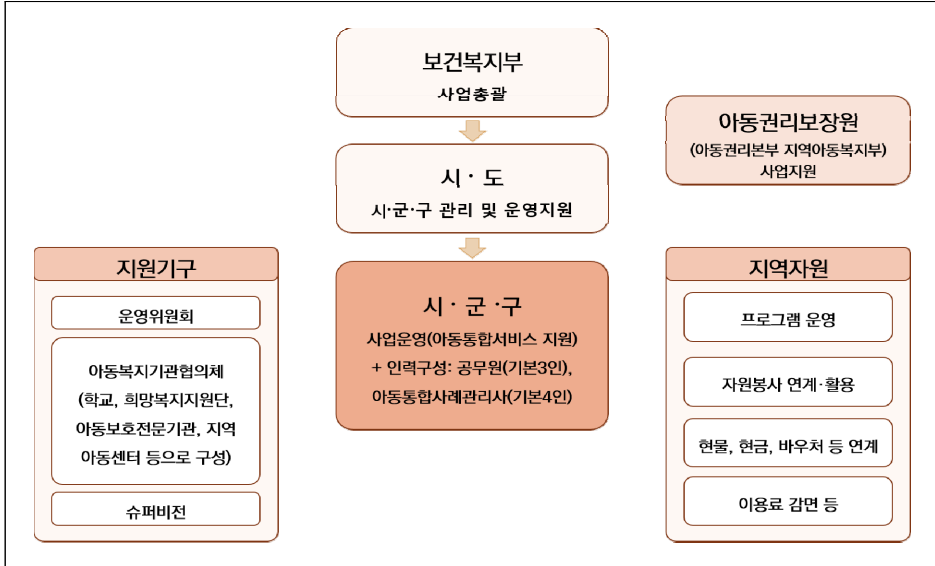
드림스타트는 전담공무원(3인)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4인)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20f, 29).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정책을 총괄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 총괄 및 지원을 담당한다. 시·군·구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인 드림스타트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사업지원이 이루어지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학교,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를 구성하고, 슈퍼비전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보건복지부 2020f, 21). 지역의 프로그램, 자원봉사, 현금, 현물, 바우처 등을 연계하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의 조직체계는 <그림 3-3>과 같다.

드림스타트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f, 50-51).

드림스타트 공무원의 전문분야는 사회복지, 보건(간호), 행정(보육)이다. 사례회의를 주관하고 월 1회 가정 방문을 실시한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 보건(간호), 보육(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며,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건강, 영양 등 방문 보건 프로그램, 보육/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접 수행한다.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공무원 및 지역 내 아동 관련 자원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관련 단체, 기업,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통합사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기관간 연계 방향을 설정하고 연계 내용, 연계 상황, 대상자의 변화 등을 점검한다.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에서 주거와 관련된 항목이 여러 욕구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다(부록 2 참조).

그림 3-3 | 드림스타트 조직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20g. 21.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란 장기 결석이나 예방접종 미 실시, 건강검진 미 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험 징후를 예측하고 읍·면·동 복지센터 전담 공무원이 고위험가정을 직접 방문 조사·상담하여 실제 위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복지로 복지뉴스·이슈<sup>9)</sup>, www.bokjiro.go.kr. 2018. 02. 21)

#### □ 아동학대 전담요원

2020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아동 학대로 인한 중상해·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비영리

9) <http://bokjiro.go.kr/nwel/welfareinfo/liivwelnews/news/retirevelIssueDetail.do?dataSid=6595171>, 2020.9.28 검색

---

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 대책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조사업무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제22조제3항~제5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을 조사 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였다(제22조의4)(법제처<sup>10)</sup>, [www.law.go.kr](http://www.law.go.kr))

## (2) 가정 밖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서비스

### 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sup>11)</sup>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한다. 보호조치의 결정은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여야 하며(「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 양육, 가정 위탁 등에 의한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동복지시설보호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20d, 3).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 □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 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다. 보호대상 아동이

---

1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279&ancYd=20200407&ancNo=17206&efYd=2020100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0.9.28 검색.

11)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13조의 2).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기 전에 일시 보호하거나 가정 복귀, 입양, 가정 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20d, 125). 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d, 125).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가 있다(보건복지부 2020d, 126). 시설별 기준은 <표 3-7>과 같다.

**표 3-7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별 기준**

| 구분                                                                                 | 설비기준                                                          |
|------------------------------------------------------------------------------------|---------------------------------------------------------------|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 66㎡ 이상의 강당 또는 오락실 설치<br>· 도서실 설치<br>· 16.5㎡ 이상의 심리검사·치료실 설치 |
| 공동생활가정                                                                             | · 82.5㎡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                                           |
| 자립지원시설                                                                             | ·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  |
| <b>공통기준</b><br>· 거실은 아동 1명당 6.6㎡ 이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br>자료: 보건복지부 2020d, 150~151. |                                                               |

#### □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의 근거규정은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제38조), 자원지원 계획 수립 (제39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제40조)이다.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 (제41조)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을 돕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9년 12월 현재 9개 시·도(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20e, 8). 자립지원 대상아동을 보호·사례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은 자립지원 관련 현황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

입력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e, 9).

30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 등은 자립 지원 전담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별로도 1명의 자립지원전담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도별 아동 100명당 자립전담요원을 1명씩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e, 11).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최소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e, 13)(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표 2-10 참조>).

## ② 여성가족부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394).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지자체 청소년안전망)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9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0조(운영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이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상담전화 설치·운영, 긴급구조 및 보호,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복지 사례관리도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20, 398).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실행위원회를 운영하며,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0, 399).

이 중 주거 지원과 연계되는 여성가족부의 사회서비스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쉼터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의 주거 지원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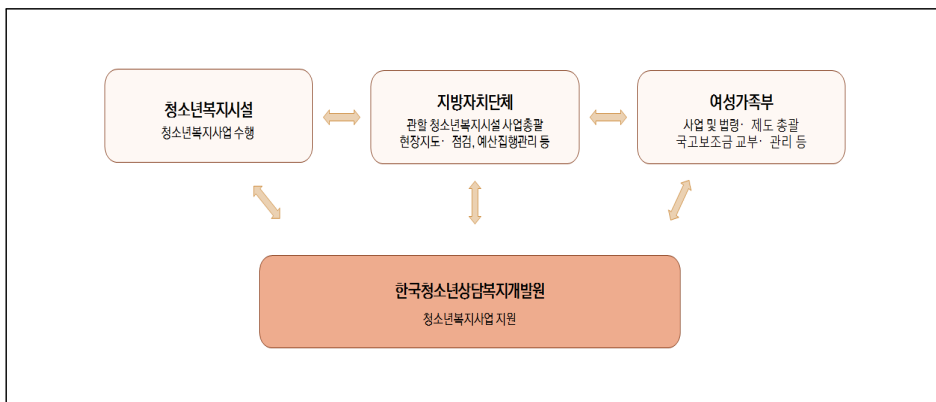
청소년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 주거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복지시설의 가출 청소년 주거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체계

여성가족부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지원한다<sup>12)</sup>.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사업 및 법령·제도를 총괄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청소년복지시설 사업을 총괄하고 현장지도·점검 및 예산 집행을 관리한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청소년복지지원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www. mogef.go.kr](http://www.mogef.go.kr). 2020. 9.13 검색

2019년 12월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현황은 다음 <표 3-8>과 같다. 전국에 청소년쉼터 134개소(일시쉼터 31개소, 단기쉼터 63개소, 중장기쉼터 40개소), 청소년 자립지원관 6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9개소이다.

12)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 2020. 9.13검색

표 3-8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시설별 입소기준 (2019년 12월 기준)

| 구분   | 청소년 쉼터                                 |                             |                            | 청소년<br>자립지원관<br>(6개소)    | 청소년<br>회복지원시설<br>(19개소) |
|------|----------------------------------------|-----------------------------|----------------------------|--------------------------|-------------------------|
|      | 일시쉼터<br>(31개소)                         | 단기쉼터<br>(63개소)              | 중장기쉼터<br>(40개소)            |                          |                         |
| 주요기능 | 거리상담, 가출<br>예방, 일시보호<br>및 단기쉼터<br>연계 등 | 신속한 가정복<br>귀 및 유관시설<br>연계 등 | 사회복귀를 위<br>한 학업 및 자립<br>지원 | 주거안정 기반<br>의 자립 사례관<br>리 | 훈육, 생활 지원<br>및 자립지원     |
| 입소기간 | 일시                                     | 3개월 이내                      | 3년 이내                      | 1년 이내                    | 6개월(법원 결<br>정)          |

자료: 여성가족부, www. mogef.go.kr. 2020. 9.13 검색

### ●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조, 제31조, 제32조를 근거로 한다. 가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비행 및 범죄 유입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의 생활(의·식·주)을 지원하고, 정서적 지지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이 밖에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학업 지원, 진로 탐색 및 훈련과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청소년 쉼터 지원대상의 1순위는 9~19세 미만이며, 2순위는 19~24세가 대상이다(여성가족부 2020, 469).

청소년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된다. 다음 <표 3-9>와 같이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 혹은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주거이다.

표 3-9 | 청소년 쉼터의 종류

| 구분   | 일시쉼터<br>(31개소)                                                                                                       | 단기쉼터<br>(63개소)                                                                                                                                                                      | 중장기쉼터<br>(40개소)                                                                                                               |
|------|----------------------------------------------------------------------------------------------------------------------|-------------------------------------------------------------------------------------------------------------------------------------------------------------------------------------|-------------------------------------------------------------------------------------------------------------------------------|
| 보호기간 | 24시간~7일 이내<br>일시보호                                                                                                   | 3개월 이내 단기보호<br>*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br>장가능(최장 9개월)                                                                                                                                       | 3년 이내 중장기 보호<br>*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br>능 <sup>13)</sup> (최장 4년)                                                                   |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 가출 청소년                                                                                                                                                                              |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
| 핵심기능 |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br>(아웃리치)                                                                                              | 심리·정서 상담지원<br>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br>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
|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br>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br>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br>단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br>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br>서비스 제공 등<br>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br>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br>동<br>-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br>스 제공<br>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br>연계<br>-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br>년 분류, 연계서비스<br>*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br>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br>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br>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br>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br>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br>*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br>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br>관 등에 연계 권장 |
| 위치   | 이동형(차량),<br>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 주요 도심별                                                                                                                                                                              | 주택가                                                                                                                           |
| 지향점  |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br>개입 및 보호                                                                                            |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 자립지원                                                                                                                          |
| 비고   |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br>남·여용 분리 운영                                                                                         |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 운영하여야 함                                                                                                                       |

자료: 여성가족부 2020, 470.

###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 제32조이다. 청소년쉼터  
폐소자 중 자립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여성가족부 2020, 643). 지원대상 1순위는 시설  
폐소 후기 청소년이다. 2순위는 그 밖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여성가족부  
2020, 643).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 지원 요원 1인당 사례관리 대상은 8명이다(여  
성가족부 2020, 643). 중장기쉼터와 마찬가지로 1인당 전용면적 11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다.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를 통  
해 6개월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0, 643).

13) 다만, 중장기 쉼터 폐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아직 개소 운영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청소년자  
립지원관 개소 시까지 한시적으로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음.

표 3-10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류

| 구분        | 숙박형 생활시설<br>(생활관형)                             | 비숙박형 이용시설<br>(주거연계형)                                                                    | 혼합형<br>(생활관+주거연계)                                                                                                                               |
|-----------|------------------------------------------------|-----------------------------------------------------------------------------------------|-------------------------------------------------------------------------------------------------------------------------------------------------|
| 지원내용      | 생활관 입소청소년<br>에 대한 자립지원서<br>비스                  | 독립주거 청소년에 대한 자립<br>지원 서비스(생활관 미운영)<br>*자립준비청소년은 독립된 주<br>거에서 생활하며 청소년자립<br>지원관의 서비스를 이용 | [생활관 운영+독립생활지원]+자<br>립지원 서비스<br>*자립준비청소년은 일정기간 생<br>활관을 이용하거나 독립생활을 하<br>면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서비스<br>를 이용                                               |
| 생활관 입소 기간 | 생활관 입소기간은<br>최소화하고, 독립<br>주거 생활을 할 수<br>있도록 조치 | -                                                                                       | 생활관 입소기간은 사례심의위원<br>회에서 결정(최초 3개월 이내, 추<br>가 3개월 연장 가능(1회))<br>*경계선 지능 청소년, 미성년자<br>등으로서 독립생활이 곤란하다<br>고 인정되는 경우는 생활관 이용<br>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기간      | 기본 1년 이내(6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지원종료 후 6개월 사후 관리      |                                                                                         |                                                                                                                                                 |

자료: 여성가족부 2020, 644.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법적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이다.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6개월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을 실시하고 주거, 학업과 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여성가족부 2020, 676). 법원(소년부 판사)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0, 706).

### □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의 주거 지원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치료비 및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sup>14)</sup>.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만 19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초·중등 교육법」 제2조

14)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9.do](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9.do), 2020.9.13. 검색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sup>15)</sup>(여성가족부, www. mogef. go. kr, 2020. 9. 13. 검색).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이다.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이 중 주거 지원과 연관된 것은 생활 지원으로 의·식·주 등을 위한 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이다. 생활지원의 지원금액은 2020년 현재 월 50만원 이내<sup>16)</sup>이다. 이는 2020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인 52만 7153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 □ 쉼터 퇴소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쉼터 퇴소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569).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10조(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5항2호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의 2항 1호 다목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제2조 제7호의 자격<sup>17)</sup>을 갖춘 자)으로 제한하고 있다.

15)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9.do](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9.do), 2020. 9. 13. 검색.

16)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9.do](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9.do), 2020. 9. 13. 검색.

17) 제 2조 7호의 자격은 ‘청년’이란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

## ● 지원 절차

2019년 7월 개정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이다.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혹은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는 쉼터 퇴소 청소년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만일 24세 퇴소하였다면 2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0, 571).

쉼터 퇴소 청소년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를 최종쉼터에 제출한다(여성가족부 2020, 569). 최종쉼터 소장은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입소기간 확인서를 발급하고 추천공문과 함께 원본을 관할 지자체로 제출한다. 여가부에서 그 명단과 입소기간 확인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한다(여성가족부 2020, 570). LH는 신청자가 원하는 임대주택을 안내하고 계약과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청소년쉼터는 입소자에 대한 고유식별 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기존 입소 이력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569-570). 이 경우 기존 쉼터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상담일지 등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퇴소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570).

## ● 지원 내용

매입임대주택은 LH 소유의 임대주택으로써 냉장고·세탁기·책상 등 필수 생활집기를 제공한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약 10~20만원) 및 관리비를 부담한다(여성가족부 2020, 571).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LH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LH가 주택 물색과 계약을 지원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한도는 서울·인천·경기는 1억 2천 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은 9,500만 원, 기타 도는 8,500만 원이다. 쉼터 퇴소 청소년은 이 중 보증금 100만원을 지불한다.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의 이자(연 1~2%)를 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만 20세까지는 월 임

---

포함)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대료가 무료이다(여성가족부 2020, 570). 쉼터 퇴소 후 5년 이내에는 월 임대료를 50% 감면함으로써 자립 준비단계에서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추었다(여성가족부 2020, 570).

## 2) 아동·청소년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정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주도한다. 연계기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마이홈센터(LH) 등이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처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서비스의 정책 목적 및 전달체계 운영상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2020년 보건복지부와 정책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이다. 시·군·구와 읍·면·동 복지지원센터를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 복지담당 인력의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도 저조,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의 주거위기정보 부족 등은 향후 개선과제이다. 그러나 주거복지 연계기관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마이홈센터 등 주거지원 관련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 정책 연계의 좋은 사례로 기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주무부서로서 가정 내·외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가정은 여러 문제 요인이 있지만 주거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드림스타트, 아동학대 전담요원 신설 및 가정 밖 아동·청소년 주거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최저주거기준과 연동, 욕구 사정 주거 관련 항목 미비, 주거 관련 민간정보와 연계 미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관 등 시설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스크리닝척도에 주거 관련 문항 미비, 청소년복지시설의 주거

공간 기능 미비, 자립지원관의 주거 연계 기능 구체화 미비, 쉼터퇴소 청소년과 아동보육시설 보호종료 아동 간 주거 지원의 비형평성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표 3-11 | 부처별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 부처    | 주거복지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
|-------|-------------------------------------------------------------------------------------------------------------------------------------------------------------------------------------------------------------------------------|
| 행정안전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br>-읍·면·동 복지담당 인력의 주거복지에 대한 낮은 이해도<br>-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주거위기정보 부족                                                                                                                                               |
| 보건복지부 | <드림스타트><br>-인적정보관리의 주거사항을 최저주거기준과 연동시킬 필요<br>-육구사정 주거관련 항목을 주거권과 연결하여 별도 항목으로 측정할 필요<br>-아동복지기관협의체에 주거복지센터, 마이홈센터 등 주거복지업무 담당기관 포함<br>-양육환경 사정도구 변화 필요<br><아동행복e음 시스템><br>-주거관련 민간자원을 분류하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br><아동학대전담요원> 2020년 신설 |
|       | <가정 밖 아동청소년 주거서비스><br>-아동복지시설: 적정 침실의 크기와 책상, 침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필요<br>-보호종료 아동: 주거탐색(정보)과 입주조력 지원서비스 필요                                                                                                                         |
| 여성가족부 | <청소년 주거지원서비스><br>-위키스크리닝 척도 문제: 부적절한 주거, 과밀주거 등 문항을 추가할 필요<br>-청소년복지시설(단기쉼터, 중장기쉼터)의 주거공간으로서 규정 미비<br>-자립지원관의 주거연계기능 구체화 및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정합성 미비<br>-쉼터 퇴소 청소년과 아동보육시설 보호종료 아동 간 주거지원의 비형평성 문제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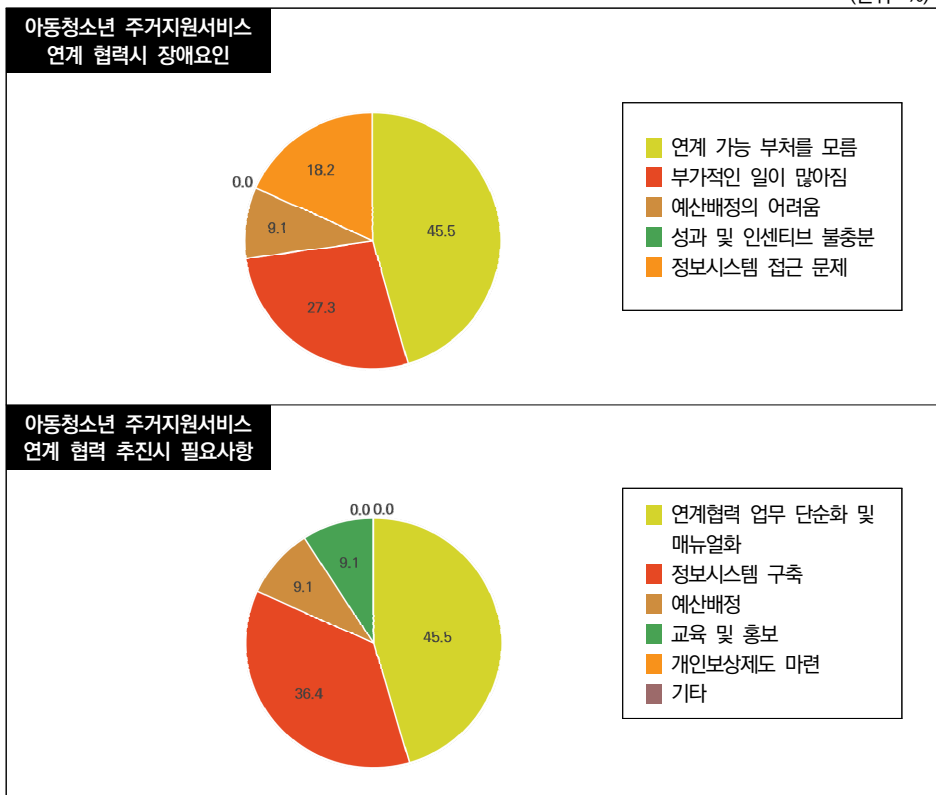
### 3.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1)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연계·협력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의 하나로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무자 협업실태 조사(2020)(부록 5, 6 참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정책은 일반 주거정책에 비해 연계 협력의 정도가 4.6(7점 척도)으로 노인·장애인 3.9, 주택일반 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계 협력의 필요성도 아동·청소년 분야는 6.3으로 (노인·장애인 6.7), 주택일반 5.7에 비해 높다(부도 10-12 참조).

그림 3-5 |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서비스 연계 협력 추진 시 필요사항 및 장애요인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자료: 이 연구 수행의 하나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전문가, 정책실무자 대상)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즉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분야는 현재 부처간 정책연계 정도 및 필요성 모두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계획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협력 추진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는 ‘어느 곳과 연계가 가능한지 알지 못함’이다. 이어 ‘잔업 및 부가적인 일이 많아짐’, ‘예산 배정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협력 추진시 필요한 과제로는 연계 협력 업무 단순화와 매뉴얼화(45.5%), 정보시스템 구축(36.4%), 교육 및 홍보, 예산 배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5> 참조).

## 2)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 (1) 법제도의 정비: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주거권의 명시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제2항에서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주거기본법」은 2020년 현재 지원 대상 아동의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주거 빈곤으로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과 참여권이 위협받는 아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의 주거권이 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

서는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동 복지를 실시하는 여러 주체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고 기관간 연계를 이룰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활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1년 동안의 청소년은 어느 법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위기청소년’을 포함하거나,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의 의무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관계사업에 있어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설계 및 사업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때는 아동 혹은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구와 같이 보호자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주거권 보장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권 보장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는 후술할 아동·청소년 보호자가 적절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임할 때, 아동·청소년의 이익과 보호자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킬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아동복지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 (2) 주거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 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저렴하고 규모와 시설이 적절한 주택 확대

우리나라 아동주거 빈곤가구는 2019년 전국 약 60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은 매년 2600여명, 청소년 쉼터 퇴소 아동은 100여명이 발생하고 있다(국토교

---

통부 2019. 10. 24. 보도자료). 그러나 아동·청소년 가구에게 보다 넓은 면적의 주거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총 3만 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수요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또 2020년 「주거종합계획」 상에서 발표한 2천호의 보호종료 아동 우선지원(국토교통부 2020c) 역시 보호종료 아동 혹은 청소년 쉼터 퇴소 아동의 규모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공급량이다.

## ②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급여 신설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아동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분석한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는 ‘주거임차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에서 부담감이 크고, ‘주거관리비에 대한 부담’ 역시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게다가 ‘재계약 거부 불안감’,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불안감’ 역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가장 높다(임세희 2020). 주거비 부담은 통계적으로 아동가구의 식품 섭취 부족, 공과금 및 공교육비 체납, 원하지 않은 퇴거, 필요한 냉난방을 할 수 없음 등의 박탈 경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임세희 외 2018).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주거의 질과 주거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주거급여의 신설이 필요하다.

## ③ 청소년 자립 지원 주거정책 설계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쉼터(2년이상) 퇴소 청소년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의지가 매우 약하거나 오히려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보호자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보호와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함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성인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적절한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지원과 통합사례관리도 병행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자립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이들이 자립을 지원하는

---

종합적, 복합적인 주거정책의 설계와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 ④ 모니터링 제도 구축 및 피드백 제도 마련

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거나 수당 등의 각종 지원을 받았을 경우, 수혜자나 보호자는 주거개선을 위해서 이를 활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모니터링하고 적극 이후 조치에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관련 지원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보호자가 술을 마신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아동은 단지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를 적극 방지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3) 정보연계 및 서식 표준화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쉼터 퇴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곳과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각 기관마다 상이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서 지원이 끊기게 된다. 보호자가 있는 아동가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흔하게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아동 정보의 표준화 및 기관간 정보연계 등 정보시스템의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4) 교육 및 소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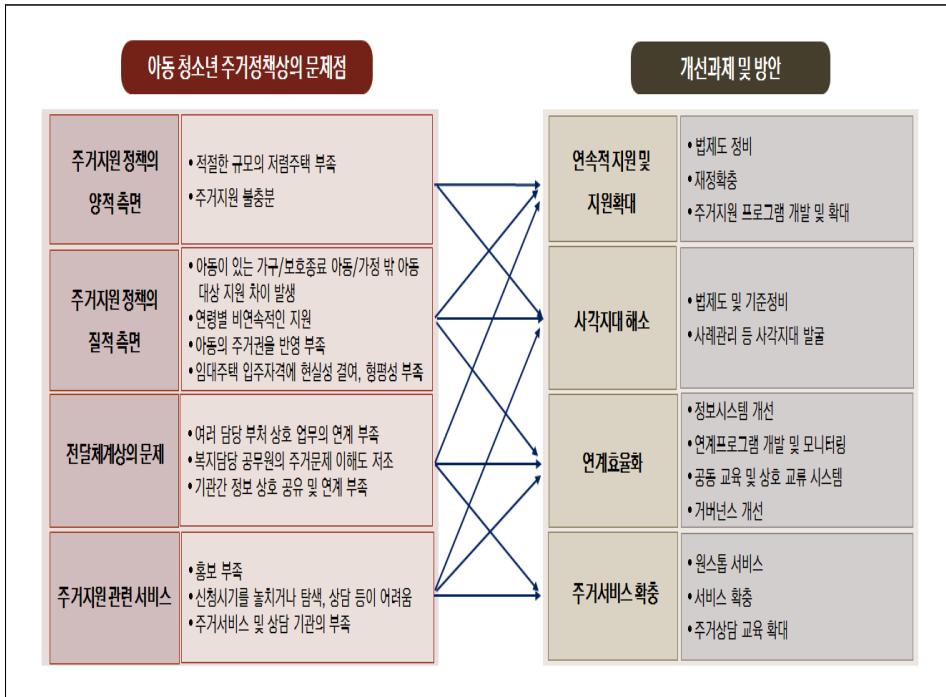
이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 이유로 ‘어느 곳과 연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가 응답률이 높다. 주택 및 주거복지 담당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담당공무원에게 모두 주거복지 교육과 사례관리 교육을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을 높일 필요가 있고 연계 협력 업무를 단순화하고 매뉴얼화하여 업무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5) 주거 관련 서비스 연계 운영

주거정보 및 탐색 지원에 있어서 주거복지기관을 확대하고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공동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연령에 따른 서비스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주거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 아동·청소년 주거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자료: 저자 작성





## CHAPTER 4

#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1.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개요 ..... 95
2.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문제점 ..... 108
3.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120



---

## 04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노인·장애인 대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여러 부처 및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시범사업 중에 있다. 이 장에서는 노인·장애인 주거지원정책 현황, 관계 기관 별·기관 간 주거지원서비스 추진과 연계 실태를 분석하여 전달체계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거주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지원 전달체계에서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고 지자체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방분권을 앞두고 향후 발전방향으로 좋은 사례이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교육과 공동기획,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 1.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개요

#### 1) 노인·장애인 주거 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의 목적은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탈시설을 강조하던 패러다임에서, 시설을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서비스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설이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공간을 강조하고,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 과제를 수

---

립하여 장애인의 인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화를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근거와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sup>1)</sup>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였다(보건복지부 2020a).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관계부처 합동 2018)은 「탈시설 및 주거 지원 강화」 부분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재가장애인에게 대한 주택지원 강화’를 세부과제로 채택하여 자립생활주택 지원(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공간으로 제공), 자립정착금 지원(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기준 마련, 주거급여를 소득·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등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계획에 의해 주거·건강의료·요양돌봄·서비스연계 지원 등을 정책에 담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목표의 공통점은 주거복지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에서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사업의 주요 대상에 대한 초점이 다르다. 특히 국토교통부 사업의 경우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명명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 지역거주민이 대상인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접근하는 두 부처 사업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주거생활의 열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반 주거복지정책에 노인·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1) 이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커뮤니티 케어’로 표기함

---

하다. 노인·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주거정책 개발이 오랜 기간 누적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케어 등 새로운 정책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및 민간차원에서의 연계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기관간 연계 현황을 파악한 조사 결과 중앙부처 연계 현황의 경우 연계 협력의 필요성이 높고 실제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정책은 주로 공공임대와 노인·장애인 대상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6> 참조).

한편 지자체에서 연계 협력의 필요성은 높는데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정책은 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타나(<그림 2-17> 참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연계 협력 시 지자체에서 '어느 곳과 연계가 가능한지 알지 못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그림 2-20> 참조)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두 부처의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정합성과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노인·장애인 주거 현황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0a)결과,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26.5%),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18.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7.3%) 순이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24.6%),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16.9%),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16.6%) 순으로 높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노인가구의 10년 이상 무주택 상황은 79.6%이고,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10년 이상 무주택 상황은 70.7%이다. 노인·장애인 가구 조사 결과는 주거정책의 실효성과 정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상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7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a)에서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나, 병원·시설에서 지내는 현실이다. 돌봄은 가족(특히 여성)에게 ‘가혹한 간병’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52만명) 수발 가족 중 여성 73%(38만명), 자녀 중에서는 딸·며느리 86%(2016년 장기요양보험 통계)가 돌봄제공자인 것으로 나타난다(황성준 외 2019).

돌봄의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황성준 외 2019). 이에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5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 케어)’을 2026년 전국적인 확대 및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본 절에서는 노인·장애인 주거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노인·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와의 연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노인·장애인 주거 관련 제도 및 정책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2005년 9.1%)이다. 전체 노인 가구는 438.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2019년)이다. 2025년에는 약 1.5배 증가한 594만 가구(28.3%)로 예상된다. 노인가구 급증으로 은퇴 이후 수입의 급감, 낮은 연금수령 비율 및 적은 수령액, 노인 1인 가구의 지속적인 문제 등이 상존한다(강미나 2018).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87점으로 2017년 2.91점, 2018년 2.89점에서 하향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7년 5.3%, 2018년 4.1%, 2019년 3.9%로 나타나 일정부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장애인가구 비율은 전체가구 중 4.7%를 차

지한다. 지역별로는 도지역(5.6%), 광역시 등(4.4%), 수도권(4.3%) 순으로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소득별로는 소득하위가구에서 장애인가구 비율(8.6%)이 높다(국토교통부 2020a).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7)를 재분석한 장애인가구의 주택 이외의 거처 현황을 살펴보면, 일터의 일부 공간(공장, 농장, 상점, 어장 등)과 다중이용업소(PC방, 만화방, 찜질방, 기원) 및 기타 거주 66.6%, 고시원과 고시텔 14.6%, 숙박업소 객실 12.8%,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6.0%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이다.

#### (1) 전체 중앙부처의 주거관련 복지 서비스

전체 중앙부처의 주거 관련 복지서비스는 26개이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1 | 전체 중앙부처 주거관련 복지서비스**

| 사업명             | 내용                                                                        |
|-----------------|---------------------------------------------------------------------------|
| 버팀목대출보증         |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지원                |
|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위탁하여 대출 지원                                  |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 -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지원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                                           |
|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 - 노후·불량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
| 취약계층 환경성질한 예방사업 |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지원                         |
|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 -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주거공간 지원                   |

|                                                   |                                                                                                    |
|---------------------------------------------------|----------------------------------------------------------------------------------------------------|
| 납북피해자 지원                                          | - 납북피해자의 주거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 지원                                                                            |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냉방기기 지원) | -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 - 취약·간급위기 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 -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지원                                                  |
| 노숙인 등 복지지원                                        | - 노숙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재활과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 국민임대주택 공급                                         |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 공급                                                             |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 -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시설 개선                                                               |
| 행복주택 공급                                           | -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교체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 기여                           |
| 사할린 한인지원                                          | - 영구귀국한 모든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을 지원하여 귀국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 주택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대출 지원                                          |
| 제대군인 대부지원                                         | -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WellInfoBoxList.do>.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누리집-주거편”을 참고하여 표로 구성(2020.7.30. 검색).

## (2) 노인·장애인 관련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제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추진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주거지원 장벽 완화, 신속·편리한 주거 지원, 주거환경·시설 품질제고,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한다. <표 4-2>는 현행 노인·장애인 관련 임대주택 공급지원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2 | 노인·장애인 관련 임대주택 공급지원 제도

| 제도             |                      | 개요                                                                                                                         | 노인·장애인 입주 자격                                                                                                                                                                    |
|----------------|----------------------|----------------------------------------------------------------------------------------------------------------------------|---------------------------------------------------------------------------------------------------------------------------------------------------------------------------------|
| 영구임대주택         |                      |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서 도입된 국내 최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임               | · <b>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b>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순위),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br>· <b>만65세 이상인 사람</b>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국민임대주택         |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공급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 <b>65세 이상</b>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br>· <b>만65세 이상</b> 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 행복주택           |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도심내 다양한 용자를 활용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짓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b>65세 이상인 사람</b><br>(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br>(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
| 고령자복지주택        |                      | 주택의 자충부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개동을 1~2층에는 복지관,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 | <b>65세 이상</b> 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중 소득인정액 이하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
| 기존주택<br>매입임대주택 | 일반<br>매입<br>임대<br>주택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                                             | 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b>장애인</b> 등<br>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

|  |                       |                                                                                                             |                                                                                                                                                                                          |
|--|-----------------------|-------------------------------------------------------------------------------------------------------------|------------------------------------------------------------------------------------------------------------------------------------------------------------------------------------------|
|  | 고령자<br>매입<br>임대<br>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개량하거나 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철거 후 신축 포함)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b>장애인</b><br>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b>장애인</b> 등<br>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b>장애인</b> |
|  | 기존주택<br>전세임대주택(일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도입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br>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b>장애인</b> 등<br>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b>장애인</b> |
|  | 공공지원<br>민간임대주택        |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                                                             |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임. 이중 고령자는 <b>65세 이상</b>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자료: 국토교통부 2020b, 211~321. 'II-4 주거복지 부문'을 참조하여 재구성.

### (3) 주택전세자금 대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융자제도로 주거안정월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이 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다.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수도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반가구·신혼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국토교통부 2019b, 226~227).

### (4)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27조(주택의 보급)에 근거하여 2004년 복권기금으로 지원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매년 1천 가구를 목표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관과 거실의 출입문 폭 확대, 문턱 낮추

---

기, 장애인용 입식부엌 및 욕실 등을 설치·개선하여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한 가구당 50% 지원과 지방세 50%로 예산을 확보한다. 한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했는데, 해당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현재 각 지자체에서 수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 소유 또는 장기간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임대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 (5) 지원주택

지원주택은 공공이 제공하는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한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남기철 2018) 주택으로서 ‘지역사회생활 유지서비스가 결합된 저렴한 영구주택’이다. 대상자의 조건은 ‘지원서비스가 결합되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이다. 주택의 조건은 ‘공공이 제공하며 저렴하면서 거주가능해야’ 한다(민소영 2018). 지원주택에 대한 욕구는 실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한울공동체 주택(거주시설 퇴소 이후 거주지 대안이 없는 정신장애인 대상)의 LH소유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2015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기존 민간주택 활용), 2017년 충청복지관의 성인 재가발달장애인 대상 SH소유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4. 6.)는 지원주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최초의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주거복지정책에 중요하다.

#### (6) 지방정부별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생활은 장애인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장애인 분리를 방지하는 탈시설 정책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628개, 이중 30인 이상 대규모시설이 45%이다. 입

소장애인은 2만 4,609명으로 이중 자립 욕구가 높은 18~64세 청년·중년 장애인이 86%를 차지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상당수(인권위 및 서울·부산·대구 등 지자체별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35%~57%가 탈시설 희망)가 탈시설-자립을 희망한다(정희경 2020). 그간 지자체별로 다양한 탈시설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하여왔다. 반면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 부재로 장애인과 거주시설 등 이해당사자의 혼란이 있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 중이다.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전주에서는 탈시설 전환주거 및 자립정착금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4-3 | 지방정부별 탈시설 추진 계획 수립 현황

| 시·도   | 계획명                     | 시설화<br>현황(수립당시) |       | 추진기간      | 목표<br>인원 |
|-------|-------------------------|-----------------|-------|-----------|----------|
|       |                         | 개소수             | 거주인원  |           |          |
| 서울특별시 |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 | 43              | 3,088 | 2013~2017 | 600      |
|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 | 42              | 2,546 | 2018~2022 | 800      |
| 전주시   | 전주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5               | 235   | 2015~2019 | 177      |
| 대구광역시 |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계획   | 57              | 1,749 | 2015~2018 | 100      |
| 광주광역시 |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 73              | 976   | 2017~2022 | 137      |

자료: 정희경 2020.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지원 정책방향' 미발표 발제문을 참고하여 재작성.

서울시는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설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비 추가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5년 자립원·자립인애원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을 내리고 연구용역을 통해 거주인 138명의 지역 사회 이주계획을 마련하고, 탈시설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대구광역시는 2018년까지 약 70명의 탈시설을 성공시켰고,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이후 희망원 내 노숙인시설 장애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년간 137명이 자립생활을 한다.

---

#### 4) 노인·장애인 주택 관련 법률

주거권의 정의와 내용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는데, 특히 ‘적절성’의 개념은 주거의 권리로서 매우 중요하며 1) 점유의 법적 안정성, 2)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3) 경제적 적합성, 4) 물리적 거주 적합성, 5) 접근가능성, 6) 입지 적합성, 7) 문화적 적절성이 포함되어야 한다(하성규 2010).

선진국의 주거권 보장 관련 법률은 1988년 제정된 미국의 「공정주택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에서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주택의 매매와 임대에서의 차별(3604절), 주거용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의 차별(3605절), 중개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3606절)이 불법임을 규정하여 주거권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법은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제1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3항)는 조문에서 주거권의 근거와 국가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의 제2조(주거권)에 의하면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장성, 안정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은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거권을 상실한 채 살아갈 확률이 높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이자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히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에 ‘집’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앞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주택을 법제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주거 및 주택관련 법률은 <표 4-4>와 같다.

표 4-4 | 국내 주거 및 주택 관련 법률

| 법률명                              | 제정일<br>(시행일)             | 주요 내용                                                                                                                 |
|----------------------------------|--------------------------|-----------------------------------------------------------------------------------------------------------------------|
| 주거기본법                            | '15.6.22.<br>(15.12.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정책 기본원칙 설정</li> <li>주거종합계획 수립</li> <li>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li> </ul> |
| 주택법<br>(구 주택건설촉진법)               | '72.12.30.<br>(73.1.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의 건설 및 공급</li> <li>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시장관리</li> </ul>                                |
| 주택도시시기금법                         | '15.1.6<br>(15.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도시시기금 설치 및 운용</li> <li>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운영</li> </ul>                              |
| 주거급여법                            | '14.1.24<br>(15.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 실시에 필요한 사항</li> </ul>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br>특별법(구 임대주택법)       | '84.12.31<br>(85.1.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li> <li>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li> </ul>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br>지원에 관한 법률      | '12.2.22<br>(12.8.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 수립</li> <li>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li> </ul>                          |
| 공동주택관리법                          | '15.8.11.<br>(16.8.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 분쟁조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br>법률             | '06.5.24<br>(06.9.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건축부담금 산정, 납부</li> <li>부담금 징수 및 배분</li> </ul>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02.12.30<br>(03.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li> </ul>                                       |
|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br>특별법              | '05.12.30<br>(06.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계획 수립</li> <li>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li> </ul>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br>관한 특례법         | '17.2.8<br>(18.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li> </ul>                                      |
| 공공주택 특별법<br>(구 국민임대특별법)          | '03.12.31.<br>(04.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li> <li>공공주택건설, 운영·관리</li> </ul>                              |
| 장기공공임대주택<br>입주자 삶의 질<br>향상 지원법   | '09.3.15<br>(1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의무</li> <li>노후 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 리모델링·재건축</li> </ul>   |
| 부도공공건설<br>임대주택 임차인<br>보호를 위한 특별법 | '07.1.19<br>(07.4.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보호대책 수립</li> <li>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절차</li> <li>재정 및 주택도시시기금 지원</li> </ul>        |
| 택지개발촉진법                          | '80.12.30<br>(81.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li> </ul>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09.5.22<br>(09.1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H 설립목적, 자본금, 사업범위</li> <li>NH 자금조달 및 손익금처리</li> <li>토지매입 및 공급 등</li> </ul>    |

자료: 국토교통부 2020b, 7 인용.

국내 주거 및 주택관련 법률 중 노인·장애인이 정책대상으로 직접 언급되거나 주거 취약계층 혹은 수급권자가 언급된 관련 법률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주택도시시기금법」 등인데 <표 4-5>는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4-5 | 노인·장애인 주거 관련 법률

| 법률명                      | 제정 목적                                                                   | 정책 대상                                                                                                                                                                                          | 법률 포함사항                                                                  |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약자의 정의(제2조)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상인 사람</li> <li>-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li> </ul> </li> </ul>          | 주거지원계획, 주거 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설정, 안전 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 명시 |
| 주거기본법                    | 주거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권(제2조)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li> </ul> </li> </ul>   | 주거종합계획 수립,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거실태조사 등 명시                         |
| 주거급여법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권자의 범위 명시(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li> </ul> </li> </ul>                                     | 임차료 지급, 주거급여 실시, 수선유지비 지급 등 명시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li> </ul>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임대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 명시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2020.9.13.검색. 참고하여 저자 작성

---

## 2.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문제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a)을 발표한 이후 2019년 4월 1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통합돌봄의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2024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자인 초고령사회 2025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서 모든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주도형 정책’ 이기에 보건복지부는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보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에서 2020년 8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보건복지부 2020a)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배경은, 국민의 돌봄 불안(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 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여 포용적 복지 강화 필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에서 출발한다.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주요서비스인 주거, 보건·의료, 복지·돌봄과 공통기반 구축(통합돌봄창구, 총괄추진단, 민·관 협의체 등), 지역케어회의 등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방향은 <표 4-6>과 같다.

표 4-6 |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 추진주체             | 추진방향                                                                                                                                                                                                                                                                                                                                  |
|------------------|---------------------------------------------------------------------------------------------------------------------------------------------------------------------------------------------------------------------------------------------------------------------------------------------------------------------------------------|
| 중앙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요소 구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반 구축</li> <li>핵심1) 주거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li> <li>핵심2) 방문건강 및 방문 보건의료 실시</li> <li>핵심3)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li> <li>핵심4) 돌봄 대상자 중심의 민·관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li> <li>핵심5) 병원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초를 법률과 각종 제도에 반영 추진</li> </ul>                 |
| 중앙정부<br>·<br>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가 주도하여 다직종 연계를 구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의 욕구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여 해결 방안 마련</li> <li>-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다직종 연계 구현</li> <li>- 선별적 복지에서 욕구 중심의 보편적 복지로의 시각 전환</li> </ul> </li> </ul> |
| 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진단을 기반으로 핵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자체별 통합돌봄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와 복지 간 통합을 위한 노력에 집중</li> <li>-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및 모형 개발</li> <li>- 다직종 연계 협력을 통한 대상자 발굴·연계 강화</li> </ul> </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5-10. 참조 재구성.

커뮤니티 케어의 2020년 재정 규모는 국비 167억원(보조율 50%)이며 지방비를 포함하면 334억원이다. 유형별 지원액은 노인 106.5천 만원, 장애인 116.6천 만원, 정신질환자 51.6천 만원이다. 사업추진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역
- (노인 사업)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장애인 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사업) 경기 화성시

## 1) 노인 커뮤니티 케어

주요 선진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수십 년의 기간에 걸쳐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키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2년 지역포괄케어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영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10~20년 후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황정준 외 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a)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4대 핵심요소 중 하나인 주거 부분은 노인맞춤형 케어연계주택, 집수리사업,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이 포함되어 있다. 집수리사업과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등 임차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진행되는 선도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돌봄 관련 연계사업을, 국토교통부는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2020년 8월 현재 노인 커뮤니티 케어는 광주 서구를 비롯해 총 12개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다.

#### ■ 광주서구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례

- (인력) 4개의 팀(사회복지직, 간호직 12인 채용(전입 6인 포함))
- (예산) 한해 서구 예산 + 2억2천만원(중앙 50%, 시비25%, 구비 25%)
- 노인관련 26개 사업수행
- (3단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행정단위별로 관련 담당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및 돌봄 논의
  - 1단계: 1개동에서 동주민센터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중독센터전문가, 복지관직원, 공무원 등 대상자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회의)
  - 2단계: 3-4개동씩 권역별로 묶어서 대상자선정과 문제해결 방안관련 협의
  - 3단계: 구단위의 care 회의
- 노인편의주택: 2019년 예산 16억원 중 8억원을 주택공급에 사용
  - : 주로 경사, 문턱 등을 없애는 개보수, 1인당 400만원한도이나 심의를 통하여 600만원까지 가능
  - : 대상가구는 사회복지담당자가 건보에서 만성질환자 명단을 받아서 상담 후 수리
  - 대도시내에 케어안심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에는 부지확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

출처: 연구 수행 중 하나로 추진한 담당 공무원 인터뷰(2020년 4월29일) 내용을 요약 작성

#### ■ 전주시 노인 통합돌봄 사례

- (예산) 한 해 예산 19억(중앙 50%, 시비40%, 도비 10%)
- (대상선정 기준) 독거여부, 장애등급, 질환수, 약복용개수, 이동수단(휠체어, 보행기 등), 최근 낙상여부, 소득자산기준 등으로 완산구 대상 526명의 대상자 선정
  - 노인관련 13개 사업수행, 노인 1인당 평균 2.58개의 서비스를 이용, 서비스 사업은 욕구조사를 통하여 결정. 1인 최대 8~10개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 (가장 인기있는 사업)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물리치료)
  - 두 번째로 인기있는 사업은 **작업치료사**의 집수리 사업: 이는 고령자의 동선을 고려해서 집수리를 하고 한 집당 총 400만원 한도내에서 필요한 물품도 구입, 통합돌봄 동회의 심의를 통하여 800만원 까지
- (협업 사례) 평화동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집수리하여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예정(20호의 집수리 완료). 요양병원 경증 어르신 이주 예정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활용하여 인후반촌동(시청 뒤, 낙후지역)에 통합돌봄센터를 건립할 계획

#### ■ 전주시 집수리 관련 특화사업: 해피하우스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에서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면서 집 내부의 경미한 수선(환풍기, 스위치, 싱크대 수전 등)을 담당. 주민 리폼교육도 수행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의료보험 등으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
- 현재 전주시에 4개의 해피하우스 센터

출처: 연구 수행 중 하나로 추진한 담당 공무원 인터뷰(2020년 4월22일) 내용을 요약작성

## 2)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은 거주시설 입소 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개인별 지원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 및 인권제고를 목표로 한다. 지자체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전문상담을 제공한다. 2020년 8월 현재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총 2개의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 ■ 제주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례

- (대상) 발달장애,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사업
- (수행) '희망나래'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주시 위탁을 받아서 사업 수행
- (추진경과) 2019년에는 인프라 구축: 통합돌봄센터 개소, 지원주택 사업 틀 마련, 이동지원 사업 등), 2020년에 비로소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시작
- 욕구 조사결과: ① 돌봄욕구, ② 일상생활지원, ③ 사회적 안전 욕구, ④ 주거지원(주거편의시설 포함)
- (지원주택) 제주시 도시공사에서 20호 제공, 6호는 지원주택(7호는 24시간 긴급지원주택, 7호는 자립생활주택)
- 대상자(기존 시설거주자)는 '행복플래너'의 도움으로 지원주택에 지원, 현재 '행복코치'가 오전 출근 및 등교 전 2시간, 오후 6시간으로 하루 총 8시간, 주 5일 보조, 행복코치와 행복플래너는 희망나래에서 고용

#### ■ 대상자 급여지원 예

- 생계급여(52만원/월)+장애아동수당(10만원/월)=62만원/월
- 문화교육관련 지원: 문화누리카드(8만원/월), 바우처카드(8만원/월)

출처: 연구 수행 중 하나로 추진한 담당 공무원 인터뷰(2020년 7월20일) 내용을 요약 작성

거주시설 장애인은 소규모 그룹홈이나 자립체험주택을 활용한다. 재가장애인은 자립체험주택이나 케어안심주택을 이용하게 된다.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 거주 외에 다양한 돌봄 및 의료서비스가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주거선택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거주다양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 보건의료서비스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거주 공간에서 전문 간호인력이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집중지원홈, 일부공간은 지원주택으로 일부공간은 그룹홈으로 혼합하여 설치하는 혼합형, 노인과 장애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유형과 함께 설치하는 다기능주택, 장애인가족단위 공동체 주거단지 등 다양한 거주유형 마련이 필요하다.

퇴소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두 개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약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서비스, 법률지원도 함께 실시한다(임종한 2019).

---

### 3)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한국의 정신건강시스템을 검토한 OECD의 전문가들은 “Making Mental Health Count”(2014)에서 “정신건강 모델을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보호모델, 즉 커뮤니티 케어로 옮기고 1차 진료와 보호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OECD 2014, 권오용 201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정신병원과 시설에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정신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현실에 대하여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우려하였다. 그 대안으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원서비스를 증가하고, 부양의무제, 등급제로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정신질환자의 지역 복귀와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는 자립체험주택 운영, 종합케어서비스, 방문 관리 및 동료상담가 지원 등이다. 또한 퇴원예정자의 정보 제공 동의율 제고 및 외래치료 명령제도 개선, 정기적인 방문관리 실시, 정신재활시설 확충 등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립지원주택(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게 한다(임성한 2019).

2020년 8월 현재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는 경기 화성시 한 곳에서 추진 중이다.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LH공사를 통해 자립지원주택을 확보하고, 월 주거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주거지원팀에서 방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 4) 연계형 케어안심주택 공급 사례

현재 진행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주거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 LH, 지역공사 등 기관 연계형과 지자체모델인 자체형이 있다. 이 장에서는 연계형 사례를 제시한다.

표 4-7 | 연계형 케어안심주택 공급 사례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재정                                                         | 사업대상                                         | 사업개요                                                                                                                                                                                                     |
|--------------------------------------------|------------------------|--------------------------------------------------------------|----------------------------------------------|----------------------------------------------------------------------------------------------------------------------------------------------------------------------------------------------------------|
| 부산<br>공유주택<br>(국토교통<br>부 연계)               | 2019.9<br>~2021<br>.8. | 2,000백만원<br>(행정안전부<br>지역사회<br>활성화기금<br>10억원,<br>지자체<br>10억원) | 통합돌봄<br>대상자 중<br>주거제공이<br>필요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뜰사업 + 지원주택모델화사업</li> <li>• 주거약자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li> <li>• 새뜰사업의 생활환경개선 인프라 위에, 복지-건강-주거-여가-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li> </ul>  |
| 충남<br>고령자<br>복지주택<br>(국토교통<br>부·<br>LH 연계) | 2019<br>~2021          | 27,600백만원(국비 12,470, 지방비 10,630, LH 4,500)                   | 주거취약<br>사각지대<br>저소득<br>독거노인<br>120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취약자를 위한 복합기능시설</li> <li>• 1F: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커뮤니티케어 허브 창구 운영</li> <li>• 2F: 입주자를 위한 건강증진, 생활편의시설 배치</li> <li>• 3F~ 고령자 및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 임대주택</li> </ul> |
| 서귀포형<br>케어안심<br>주택<br>(지역공사<br>연계)         | 2020                   | 200백만원<br>(국비 100,<br>지방비 100)                               | 요양병원 및<br>급성기<br>병원에서<br>퇴원하는<br>노인<br>10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원노인 주거지원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지원</li> <li>• 입주 노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주택개조</li> <li>• 방문 한의진료지원, 안심복약 지원, 방문간호 연계</li> <li>•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네트워크 운영</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92~110.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

## 5) 2020년 중점 타부처 연계사업

2020년에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타부처 연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보건복지 분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사업), LH의 고령자 복지주택사업/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임대상가 복합재건축(생활SOC연계형)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새뜰마을(취약지역 개조사업), 국민건강보험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이 있다. 주거지원 관련 연계사업의 개요는 <표 4-8>과 같다.

표 4-8 | 2020년 중점 주거지원 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 사업명                           | 사업<br>주체             | 사업개요                                                                                                                                                                                                                            |
|-------------------------------|----------------------|---------------------------------------------------------------------------------------------------------------------------------------------------------------------------------------------------------------------------------|
| 도시재생 뉴딜사업                     | 국토<br>교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의 건설계획을 수립·시행</li> <li>•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총 5개 유형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국비 등 지원</li> </ul>  |
|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br>개조사업(새뜰사업)    | 국토<br>교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중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극히 취약한 지역의 안전과 위생 등 '삶의 질'이 한계수준에 달한 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을 집중개선</li> <li>• 선정지역에 대해 4년간 국비기준 최대상한액 50억원,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시 70억원까지 지원</li> </ul>    |
|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 한국토지<br>주택공사<br>(L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li> <li>•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상부는 주거시설, 하부는 복지시설 복합건축</li> </ul>                                    |
| 공공리모델링<br>매입임대주택사업            | 한국토지<br>주택공사<br>(L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리모델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1~2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강화</li> <li>• 일반가구 중심의 임대주택 외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내 입주자 수요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li> <li>• 고령자, 청년 등 1~2인 취약가구에 기존 매입임대 수준인 주변 전세시세의 30% 기준 임대</li> </ul> |
| 임대상가 복합재건축<br>(생활 SOC 연계형) 사업 | 한국토지<br>주택공사<br>(L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후 30년 영구임대단지 임대상가의 구조·설비를 장애인·노약자 등 주거약자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생활SOC 인프라를 확충</li> <li>• 노후 임대상가를 "생활SOC 시설 + 임대상가"로 복합개발</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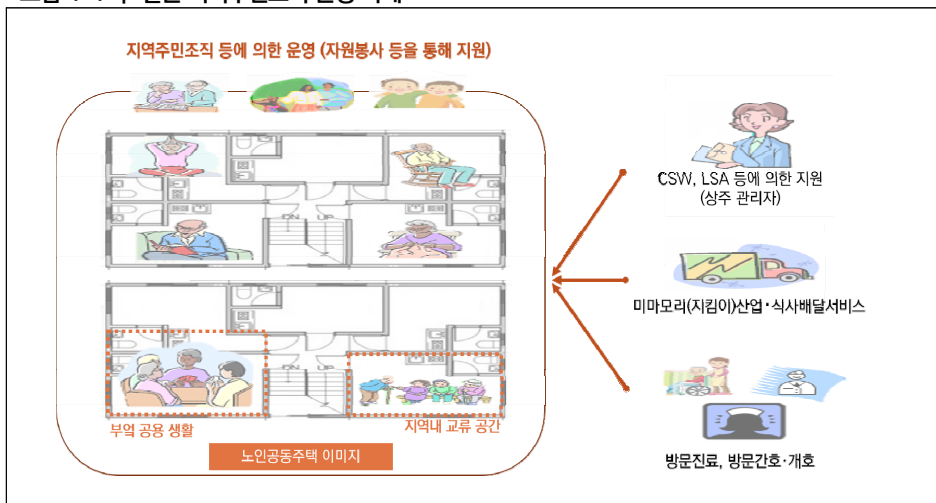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348-374.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

## 6)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와 시사점

일본 돗토리시 난부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저소득 고령자 등의 주거를 확보하여 지역교류와 공동생활에 의한 안심, 기존자원의 활용을 통한 비용 효율화,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 지원, LSA (Life Support Advisor) 에 의한 수시 상담체제, 외부의 의료기관 및 개호(介護)서비스 사업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부록 2 참조).

이는 빈 집을 빌려서 개보수하여 인건비와 주거비(월세) 절감, 저소득자도 이용하기 쉬운 요금 설정, 연금생활 고령자도 이용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교류공간을 만들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독거였던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LSA에 의한 지원체제 코디네이터 제도를 실시, 필요에 따라 의료·개호 서비스나 배식을 지켜보기 서비스 등의 생활서비스 지원도 한다.

그림 4-1 | 일본 지역주민조직 운영 사례



주: CSW(certified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LSA(life support advisor): 생활지원 전문인

미마모리(지킴이) 산업:일본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을극복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과 상품들을 일컫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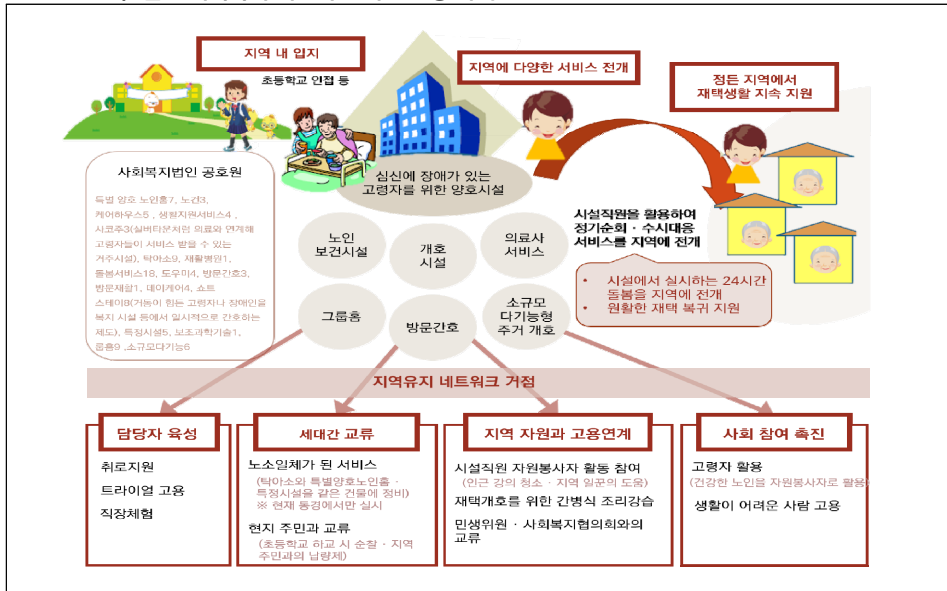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16, 14.

평면도 <http://blog.daum.net/kng9900/22> 이용

일본의 고령자주택은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003), 「주생활기본법」(2006) 등의 제정과 1990년 시니어주택에서 2000년대 초반 고령자전용임대주택 등을 거쳐 2011년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으로 발전하였다. 이 주택은 고령자가 자신들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거주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구조로 설계되었다. 개호의료와 연계된 고령자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관할하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일본 카

시와시에서는 일본의 고령자주택 입주 전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다(부표 8~13 참조).

그림 4-2 | 일본 지역복지 네트워크 거점 운영 사례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16, 49.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자원의 활용 극대화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포괄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인구특성과 비율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지역주민과 연결되어 가능한 한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거모델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택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수리하거나 개보수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저소득자나 연금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하기 쉽게 설계되었다.

둘째, 지역복지 네트워크 풀가동 시스템의 구축이다. 지역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세대 간 교류를 상당히 중시한다. 실시주체는 주민, 행정기관은

---

사업화 운영지원에 중점을 두어 관 주도를 탈피하는 형태로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요양을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의 경우 방문개호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하여 이동하지 않고 살고 있는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의료서비스 이용은 높은 수가와 접근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방문의료서비스가 더욱 필요한데 지역소재 병의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긍정적 효과 확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농어촌주택 개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접근로/현관,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등의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손잡이 등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통해 대상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택만족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향후 대상가구와 주택개조 비용을 확대하고, 대상가구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시공할 때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여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설계도 요구된다.

## 7) 연계 및 향후 과제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나 복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물리적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케어의 목표가 지역에서 자립하여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주거란 내가 사는 주택을 포함한 주변 도로, 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주거지, 지역, 동네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인 노인·장애인 등의 활동영역은 주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익숙한 지역에서 행해진다. 이에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물리적 환경개선도 중요하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 내 주거개선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주택 내부의 개보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작업치료사에 의한 노인과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

---

한 맞춤형 주택개조가 확산 및 정착될 필요가 있고 현물급여의 집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여 보다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지역에서의 이동 및 접근 등에 대한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같은 주택 외부공간은 다루지 않고 있으나, 지역 내 주거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 관련 단위사업은 주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경로당, 노인친화형 골목길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따라서 두 사업을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개선은 도시재생뉴딜에서 지원하고, 제공된 공간의 운영 및 서비스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포용사회 구축을 위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가능한 자택 또는 익숙한 지역과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대상은 급성기 질병 치료를 마치거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수용되어 있는 환자나 시설 입소자 혹은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복합적 만성질환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재가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이 우선대상이다. 앞으로는 의료연계, 복지연계, 지역사회연계 욕구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신체적 기능 및 욕구 상태에 따라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 내 보건의료, 주거, 복지, 장기요양 등 분야 간의 분절성·비효율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 지역의 자원으로 해결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재정 확보,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

---

### 3.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1) 관련 법안 정비

#####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 검토

이 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문제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법률 하나를 두 개의 부처에서 관장하는 한계가 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는 기존법에 근거한 공공주택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들이 독립 주거를 꾸리기 위해서는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등에서의 차별, 시설물(주택포함)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를 명시한다. 주거권 관점에서 보면, 주거는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닌, 물리적 공간을 통해 다양한 상호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서비스가 따르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서비스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탈시설, 탈원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필요한 주거유형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이다. 서울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17. 5. 30.)으로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의 일환인 지원주택의 필요성이 커지자, 지원주택 최초의 법적 기반인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4. 6.)를 시행하였다.

---

## (2)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초를 반영한 법률 및 제도 정비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개별 대상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관련 사업들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는 기존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케어에 실질적인 사업기획과 서비스의 연계 조정, 서비스의 구매·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가 시범사업 시행 2년 차이고 사업 관련 지침도 최근(2020년 7월)에야 배포된 상황이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다양한 돌봄사업과 대상자, 절차, 기준 등을 일관되게 아우르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법안을 신설하기보다는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기초를 연관된 법률과 각종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 제정·제도화와 2014년 「돌봄법(Care Act 2014)」을 제정했고,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구축을 위해 「개호보험법」을 지속적으로 개정(2005, 2014, 2017년), 2014년에 「의료보호종합확보추진법」을 제정하였다.

## (3) 지원주택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주택에 대한 욕구는 실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4. 6.)는 지원주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최초의 법적 기반이다. 노인과 장애인 주택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적 장치이다.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경우 특히 지원주택 형태의 주거지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통합돌봄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 때문에 지원주택의 안정된 물량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전달체계 검토

### (1)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연계

주거복지사업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지자체(도시공사) 등이 관련되어 있다. 주거급여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사업이었는데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자치단체(주거급여 현금급여)와 LH 등(주거현물급여)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노인·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다. 그러나 노인·장애인 주거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역할을 배분하고 있다. 주거약자인 노인·장애인의 경우에는 주택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공급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장애인 주거 관련 소관부처와 부서는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과제별 소관부처·부서

| 목표                      | 과제                  | 세부 추진과제                       | 담당과               |
|-------------------------|---------------------|-------------------------------|-------------------|
| 장애인 권리보장 및<br>종합지원체계 구축 | 탈시설<br>및<br>주거지원 강화 | 사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br>지원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br>장애인권익지원과 |
|                         |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 국토교통부<br>주거복지정책과  |

자료: 저자 작성

### (2) 중앙부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주거기본법」을 토대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적 자원(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

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주거 안정이 가능한 “AIP(Aging In Place)”<sup>2)</sup>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가 선례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을 연계한 주택 공급 및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에서, 거주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해당 사업이 부처 연계 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공통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3)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시 연계

노인과 달리 장애인은 시설 퇴소 후 재가생활 정착지원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시설 생활에 익숙해진 장애인은 자립생활 경험이 없어서 일상생활의 기본인 자립생활 훈련, 주택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 (4)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읍·면·동(주민센터)과 주거지원센터의 연계체계 구축

현행 주거복지 전달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의 LH 및 서울 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지방공사와 지자체가 행정 집행 및 최종 전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SH의 주거복지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간편 집수리,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LH의 주거복지센터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담당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욕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서비스 안내가 부족하다. 또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주거복지 및 주거지원 욕구와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은 주거지원(상담 및 정보제공, 주택지원, 금융지원, 주거급여, 생활지원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거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주거지원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2) 개인이 연령이나 소득, 역량에 구애 없이 자택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safely), 독립적이며(independently), 편안하게(comfortably) 생활하는 것.

---

### (5) 주거복지센터 / 주거지원센터 역할 및 전달체계 정리

「주거약자법」에 근거한 주거지원센터는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임대주택 등의 입주·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 밖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LH에 위탁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SH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중앙주거복지센터 개소를 필두로 2020년 8월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주거상향 설계 서비스, 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시민교육,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간편 집수리,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상기 언급한 센터들의 경우 일정 부분 대상자가 중복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제공 채널이 혼재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과 전달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3) 주거지원 관련 예산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제공과 지원서비스 제공은 관련 내용 및 주무부처가 달라 예산 편성도 제각기이다. 비장애인 중에서도 열악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주거급여, 장애수당,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보호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착을 실현하려는 커뮤니티 케어가

---

가능하려면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가 기본요건이다. 즉, 서비스가 결합된 ‘내 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계획과 보건복지 분야에 지원주택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원주택’과 같은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주거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지원주택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필요한 주거유형이 바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몇 개의 지자체에서는 입주대상자와 운영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주택이나 발달장애인지원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위탁 받아 10년 넘게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부산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 까지 부산복지개발원<sup>3)</sup>이 부산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실행으로 향후 지역사회에서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증가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시범사업을 넘어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운영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리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통합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5) 데이터 시스템 개선사항

이 연구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데이터 생산과 활용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공공-민간 간 데이터 연계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부도 35 참조).

---

3)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수탁자 선정”, 경남데일리(2020.9.1.) 기사 참조.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45>(2020.9.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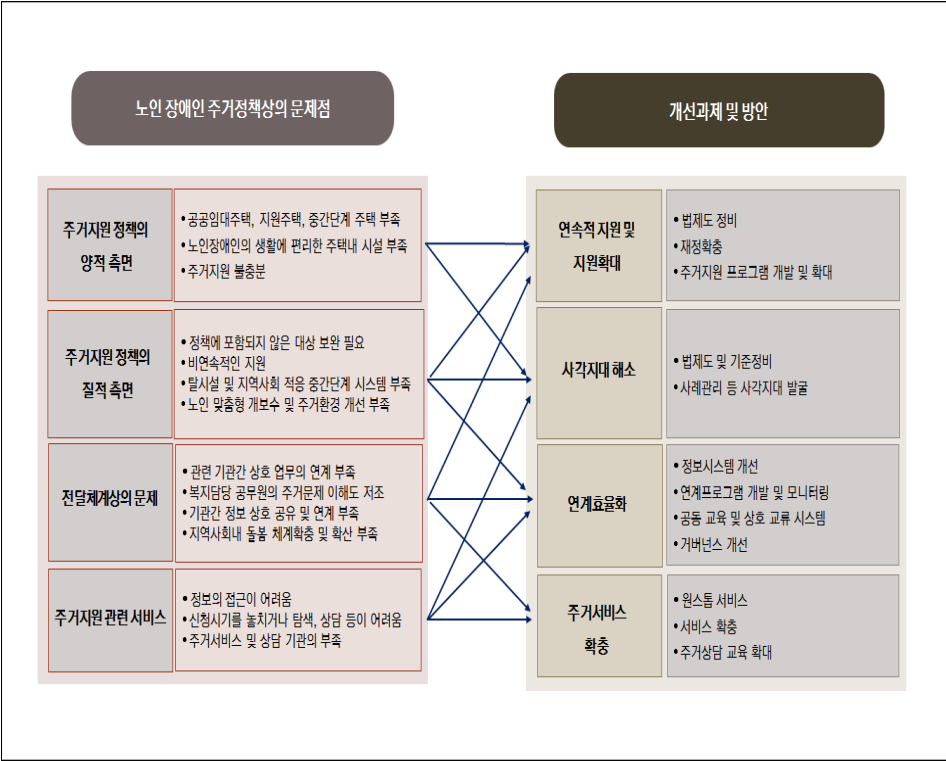
---

데이터 연계와 관련하여 시행 2년 차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병원, 사회서비스원, 복지관 등과 협력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했으나 의료 분야가 결합된 모델은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려워 광주시의 경우에는 2년 차 시범사업에서는 병원과의 연계사업은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 동일한 부처(보건복지부) 관할에 있는 보건-복지의 연계조차 공공-민간으로 구분할 경우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인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의 노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하다. 장애인 커뮤니티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제주시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서비스연계뿐 아니라 데이터의 연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택 공급 및 입주 관련한 사항도 민간영역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연구 조사참여자들은 ‘데이터 양식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는 접수단계(intake)부터 표준화된 양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주거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그림 4-3>에 정리하였다.

그림 4-3 | 노인·장애인 주거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자료: 저자 작성





## CHAPTER 5

#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연계 방향과 개선방안

- 1. 기본 방향 ..... 131
- 2. 연속성: 생애주기별 연속적 서비스 지원 ..... 133
- 3. 포괄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 146
- 4. 효과성: 정책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 152



---

## 05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연계 방향과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정책연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정리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정책에서 연계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담당자 인터뷰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연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련 기관 간의 ‘공동 접수제’ 인센티브제도 등의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한다.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의 개선까지 아동·청소년 및 노인·장애인 가구의 주거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1. 기본 방향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의 목적은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지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거복지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정책연계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 연속성: 주거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서비스 지원
- 포괄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 효과성: 효율적·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

실천방안으로 ① 법령 제도 및 기준 정비, ② 재정지원 확충 및 개선, ③ 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의 실행방안이 있다.

이러한 정책연계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 과제와 이에 따른 정책 제안을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분야로 구분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 기본방향 및 정책제안

| 기본 방향                              | 추진과제                       | 아동·청소년 정책분야                                                                                                                                                                        | 노인·장애인 정책분야                                                                                                                             | 실천수단    |
|------------------------------------|----------------------------|------------------------------------------------------------------------------------------------------------------------------------------------------------------------------------|-----------------------------------------------------------------------------------------------------------------------------------------|---------|
| 연속성:<br>생애주기별<br>연속적인<br>서비스<br>지원 | 법·제도<br>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권 명시적 명기</li> <li>아동, 청소년, 청년의 정의 명확화 및 관련 법령 정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약자법」 등에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등 명기</li> <li>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li> </ul>                                     | 법·제도    |
|                                    | 기준 적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이 있는 가구/보호종료 아동/가정 밖 아동 대상 기준의 형평성 제고</li> <li>최저주거기준 활용 강화-침실 분리기준 적용 강화</li> <li>임대주택 입주자격 현실화 및 형평성 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개조 설계시 작업치료사 참여로 노인·장애인 및 층형 주택개조</li> <li>UD(Universal Design) 반영한 주택개조 및 주거환경 개선</li> </ul>  | 기준      |
|                                    | 주거서비스<br>지속성<br>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복지센터의 연계 및 역할 강화</li> <li>아동청소년 연령에 따라 분절없는 서비스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시설 및 자립 생활 지원 강화</li> <li>시설 장애인에게 중간단계의 주거공급 및 주거탐색 지원</li> <li>IoT·AI를 접목한 주거지원 확대</li> </ul> | 제도개선    |
| 포괄성:<br>주거지원<br>사각지대<br>해소         | 재정지원<br>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렴주택 공급 확대</li> <li>주거급여 신설</li> <li>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li> <li>아동연령에 따른 주거지원 연계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렴주택/지원주택 공급 확대</li> <li>주거지원 관련 예산 확보</li> <li>장애인 주거수당 도입</li> </ul>                           | 재정지원    |
|                                    | 사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 협업 사례관리 강화</li> <li>주거복지서비스에서 사례관리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 협업 사례관리 강화</li> <li>주거서비스에서도 사례관리 기법 도입</li> <li>통합돌봄의 정착 및 확산</li> </ul>                     | 전달·거버넌스 |
| 효과성:<br>효율적·효과적인<br>전달체계           | 정보시스템<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표준화</li> <li>공공-민간, 민간-민간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li> <li>주거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li> <li>정보관리 방안</li> </ul>                                     |                                                                                                                                         | 전달·거버넌스 |
|                                    | 연계<br>프로그램<br>개발 및<br>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목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li> <li>주거복지 교육 확대</li> <li>공동 기획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li> <li>인센티브 및 연계성과 귀속 방안 마련</li> <li>업무단순화 및 매뉴얼 작성 배포</li> </ul> |                                                                                                                                         | 제도개선    |
|                                    | 원스톱<br>서비스<br>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기관 확대 및 콜센터 운영</li> <li>상담원의 민원 책임제 운영</li> <li>주민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연계체계 구축</li> </ul>                                                          |                                                                                                                                         | 거버넌스    |

자료: 저자 작성

---

## 2. 연속성: 생애주기별 연속적 서비스 지원

### 1)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법령 정비 및 시행령 개선

#### (1)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명기

주거권은 「헌법」<sup>1)</sup>과 「주거기본법」<sup>2)</sup>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동 법률에 ‘모든 국민’ 혹은 ‘국민’이라는 표현에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거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라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제3조에 명시적으로 주거권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주거권에 ‘적절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주거기본법」에 이를 반영하여 1) 점유의 법적 안정성, 2)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3) 경제적 적합성, 4) 물리적 거주적합성, 5) 접근가능성, 6) 입지 적합성, 7) 문화적 적절성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

1)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423&lsiSeq=208484#0000>, 2020.10.5.검색.

2) 주거기본법[법률 제16391호, 2015년 제정, 국토교통부]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423&lsiSeq=208484#0000>, 2020.10.5.검색.

위한 보호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위기청소년’을 포함하거나,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의 의무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 (2) 아동·청소년 정의 명확화 및 관련 법령 정비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마다 연령 구분이 상이하다(〈표 5-2 참조〉). 한편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국무조정실)이 제정되면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마다 연령이 제각기 규정되어 정책프로그램의 대상이 상이하고 일부 대상이 중복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5-2 | 아동·청소년 법에 따른 연령 구분

| 관련법    | 법률번호       | 소관부처  | 연령구분       |
|--------|------------|-------|------------|
| 영유아보육법 | 법률 제17209호 | 보건복지부 | 영유아 0~6세   |
| 아동복지법  | 법률 제17206호 | 보건복지부 | 아동 0~18세   |
| 청소년기본법 | 법률 제15986호 | 여성가족부 | 청소년 9~24세  |
| 청소년보호법 | 법률 제17091호 | 여성가족부 | 청소년 0~18세  |
| 청년기본법  | 법률 제16956호 | 국무조정실 | 청년 19세~34세 |

자료: 저자 작성

## (3) 주거약자법 개선

한편 「주거약자법」은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주거권 보장이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제2조 개정).

「주거기본법」상의 내용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상호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약자법」에 추가 혹은 신설할 조항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 주거약자법 검토사항

| 검토조항                                 | 추가 및 삭제 의견                                                                                                                                                                                                                                 |
|--------------------------------------|--------------------------------------------------------------------------------------------------------------------------------------------------------------------------------------------------------------------------------------------|
| 제2조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약자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li> <li>·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li> </ul> </li> </ul> |
|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li> </ul>                                                                                                                                         |
|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추가</li> <li>•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항 추가</li> <li>•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등 관련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li> </ul>                                                      |
|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제2호라목(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포함</li> </ul>                                                                                                                                      |
|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조비용 외 원상회복비용 추가</li> </ul>                                                                                                                                                                       |
|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주거지원이 포함되므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역할 추가 혹은 조항 삭제</li> <li>• 주거기본법에서의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약자법에서의 '주거지원센터'와의 관계 선결 필요</li> </ul>                                         |
| 신설 (지원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절차, 조사, 심사, 결정, 변경 등 사항</li> <li>• 지원서비스 지원인력의 역할</li> <li>• 지원서비스의 종류 명시</li> <li>•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li> </ul>                                                                     |

자료: 저자 작성

#### (4) 조례 제정 및 개정

한편 주거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조례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시행계획을 담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8개 시와 9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8개

---

단체만 주거기본법과 관련한 조례를 마련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특히 일선까지 전달되는 전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광역뿐 아니라 일선의 기초지자체에서 복지 업무는 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주택은 건축, 허가 등의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일선의 담당자들은 주거복지의 영역이 애매해서 어떤 업무까지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p>3)</sup>. 사회복지 업무는 조례에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주거복지 업무를 더욱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 업무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조례 등에서 명기) 하여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전달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의 소관부서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부서와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 관련 조례를 보다 자세하게, 사회복지 조례와 결을 같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 (5) Aging in Place, 탈시설화 지역 내 통합돌봄 법제 정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2015년 11월)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 ‘Aging in Place’, ‘탈시설화 지역 내 통합돌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적인 제도 및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Aging in Place’와 ‘통합돌봄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법률과 조례가 미흡한 곳이 있다. 행정시는 조례를 만들 수 없고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통합돌봄 관련 조례가 준비 중에 있거나 없는 곳도 많다. 또한 선도사업은 조례상 5년, 사회복지사업법상 3년으로 규정하여 두 가지의 근거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

---

3) 연구 수행 중 하나로 추진한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2020.9.16.) 내용 요약

---

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 관련 다양한 법령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이면서 장애인의 경우 이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기준 적정화

### (1) 아동·청소년 정책대상에 대한 제도 간 형평적 자격기준 부여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연령이 중첩되어 정책대상에 대한 관련 정책, 사업, 부처의 영역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지원은 자녀의 양육에 초점(신혼부부,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이 맞추어져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도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6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일한 여건에 있는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소관부처가 나누어지고 있다. 다자녀 가구(국토교통부), 보호종료 아동(보건복지부), 가출청소년(여가부)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동일 여건의 아동들이 다른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표 2-10> 참조). 즉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자립수당, LH 주거 지원, 대학생 교육비 지원, 어학교육 지원, 진로 지원, 자립준비 지원, 청년사회진출 지원, 디딤 씨앗통장, 자립지원시설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 보호종료 아동들이 받는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자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비록 소관부처가 다를지라도 대상에 대한 지원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최저주거기준에서 침실 분리 기준을 강화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서 독립된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학업이나 휴식을 취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범죄에 노출되거나 집 밖으로 걸도는 상황도 침실의 확보를 통해서

---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 6세 이상의 이성이 한 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있지만 주택의 방수나 규모가 청소년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지 못한다. 일정 연령(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이후 독립된 침실 기준을 적용한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가구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독립된 침실을 확보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해서 주거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이행기준 혹은 권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임대주택 입주자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확보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보호종료 아동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면서 2년 정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얻는다. 고시원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하고 좋은 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쉼터퇴소 청소년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청소년 LH 주거취약계층 사업의 자격요건상 소득기준이 1인 월평균 134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 달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70~185만원의 수입이 생기고 공공근로를 할 경우에도 월 17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sup>4)</sup>. 교통비, 주거비, 식비, 학비, 용돈과 저축 등을 생각하면 월 170만원의 수입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34만원 이하로 근로를 제한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여 소득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4) 연구 수행 중 하나로 추진한 인천자립지원단 인터뷰(2020.8.14.) 내용 중.

---

#### (4) 주택 개조 시 작업치료사 참여 및 사업연계로 맞춤형 개조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와 통합 돌봄을 위해서 주거는 문제 해결의 시초를 제공한다. 주택 개조는 자기 집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요한 주거시설을 수선하고 기능을 보완하여 ‘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실제 노인의 가장 높은 정책 수요도 주택 개보수 지원(국토교통부 2020a)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작업치료사가 주택 개조 설계 시에 함께 참여하면 동선에 맞게 맞춤형 개보수가 가능하다.

주택 개량과 개보수 시 중복지원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지원 받은 가구는 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금액의 상한(1회 400만원) 때문에 충분한 집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sup>5)</sup>. 현재 집수리는 주거급여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집수리 사업과 지자체의 집수리 사업도 있다. 여러 집수리사업 관련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필요한 집수리 중 일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노인·장애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집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 가구 선정 시 여러 사업을 연계하고 일정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입구 개선 및 동선에 맞는 집수리(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 공사(에너지 효율화 사업)-도배장판(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의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가구의 맞춤형 집수리가 가능하다. 지역의 사회적기업 등이 지원하면 지역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가구 주택을 편리하게 개조할 수 있다.

한편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집수리를 거부하는 등 횡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5) 연구 수행 중 하나로 추진한 서울시집수리사업단 인터뷰(2020.4.24.) 내용 중.

---

### 3) 주거서비스 지속성 확보

#### (1) 주거탐색 지원 및 주택물색 도우미 확대

주거취약계층은 상당히 많은 가구가 저임금, 장시간 근로가구이거나 한부모가구 등이거나, 아동·청소년이어서 정책의 존재와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서류작성의 시기를 놓치는 등 주거 탐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 가구가 주거 탐색 문의와 상담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주거복지센터,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노인정, 노인복지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주거 탐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경우 주택물색 도우미가 절실한 실정이다. 갑자기 사회에 혼자 나오면 거주공간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어떤 집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집을 구하는 기준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찾는 등 주택물색이 큰 어려움이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고 신청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주거마련’ 관련 교육과 적응 훈련을 통하여 주택마련, 주택금융, 주택점검 방법, 부동산 계약 방법, 주거관리 방법, 공과금 내기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전구 교환, 두꺼비집 확인 등과 같은 사소한 방법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알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도우미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종합지원서비스’에서는 사례관리사가 주 1회 정도 전화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다. 그런데 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청소년이 약 100명으로 과다하다. 청소년들이 절실한 ‘의논할 믿을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들과 보다 긴밀한 접촉과 관리가 필요하다. 주거마련 후에도 모니터링,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음, 음주, 우범화 등-이 줄어들고 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종료 아동뿐 아니라 쉼터에 있는 청소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거와 관련한 업

---

무는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쉽게 수행할 수 있다. 관련 업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나 온라인,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중간단계에서의 주거 공급

보호종료 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동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고시원은 알콜중독자와 노숙인, 혼숙자 등이 같이 살고, 판자로 벽을 만들어서 소음 및 개인생활 보호가 어렵고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 많다. 서울시 도봉구 SH 자립지원관 10호를 운영 중에 있지만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중간단계의 자립훈련 거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일 년 공급계획을 미리 공시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공급 공고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는데 미리 일 년 계획을 알 수 있으면 청소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기다리는 모든 대상계층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아주 중요한 개선사항이다.

#### 인천시 아동자립지원단 사례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지역사회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심리, 사회,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기관으로 20여년간 사업을 수행
  -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 보육원/쉼터/감찰보호소/경찰서/거리에 있다가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근로, 저축, 생활, 학업, 주거 등의 자립 훈련
  - (대상) 만 19세~24세까지 자립준비가 가능한 청소년
  - (지원기간)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 (주거지원: 자립지원관 입소후 상담, 자립훈련 및 사례관리 후 고시원에서 7개월간 혼자 생활하는 연습
  - 고시원비는 지원관에서 지원, 1주일에 2번씩 사례관리. 전기세 등은 아동이 지불하도록 함
  - 고시원에서 자립생활 연습을 하는 동안 주민센터에 주거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류 작성 및 지원(3~4개월 소요)  
→주택탐색(1~2개월 소요)
  - 최대 1년반까지 자립지원을 하고 이후 사례종료를 하지만 행정상 서류가 남아있어서 사후관리.
  -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동행, 집주인과의 집수리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 제공.

자료: 연구의 일환으로 인터뷰(2020.8.14.) 내용을 요약 정리.

### (3)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시 연계 및 중간단계의 주거 공급 확대

장애인의 경우 시설퇴소 후 재가생활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가 없다. 특히, 장기간의 시설 생활에 익숙한 장애인은 자립생활 경험이 없으므로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립생활 훈련, 주택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에서 독립하기 전 사회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주거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절대 수가 부족하므로 공공과 민간을 연계한 중간단계의 주거를 공급하고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림 5-1>에서 제시한 단계 중 ④ 주택지원 필요성 평가, ⑤ 지역사회 전환지원 계획 수립 부분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 내 (가칭)지역통합센터와 LH의 주거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고, ⑥ 주택 마련, ⑦ 주거환경 개선 부분은 LH, SH 제도와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5-1 | 지역사회 전환 절차

| 절차    |                    | 주체별 역할      |                 |           |                       |                   |                  |             | 비고                                                                                                                        |
|-------|--------------------|-------------|-----------------|-----------|-----------------------|-------------------|------------------|-------------|---------------------------------------------------------------------------------------------------------------------------|
| 시설장애인 | 재가장애인<br>(입소대기자 등) | 장애인<br>(가족) | 탈시설<br>지원<br>조직 | 지자체       | 주거<br>서비스<br>기관       | 발달<br>센터          | 보조<br>기센<br>터    | 기타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통합센터(탈시설 지원조직)</li> <li>지역서비스센터(주거서비스기관)</li> </ul>                              |
| ①퇴소결정 | ①시설입소 필요           | ●           | ○<br>(홍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개인의 결정(시설)</li> <li>장애인 가족의 결정(재가)</li> </ul>                                  |
|       |                    | ●           | ○<br>(작성)       | ○<br>(접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서</li> <li>주거지원 신청(주택, 주거서비스)</li> <li>무연고자 후견 지정</li> </ul>         |
|       |                    | ●           | ●<br>(조사 주관)    |           |                       | ○<br>(동행 조사)      | ○<br>(동행 조사)     | ○<br>(연금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연금공단)</li> <li>개인별지원계획 조사 (발달센터)</li> <li>보조기기 조사 (보조기기센터)</li> </ul> |
|       |                    |             | ●<br>(평가)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 자가주택 이용 등</li> </ul>                                                           |
|       |                    | ●           | ●<br>(참여)       |           | ○<br>(주거지<br>원<br>계획) | ○<br>(개인별<br>계획)  | ○<br>(보조기<br>계획)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전환지원 계획</li> <li>주택, 주거환경, 주거서비스,<br/>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추가서비스</li> </ul>            |
|       |                    |             | ●<br>(담당)       | ○<br>(지원) |                       |                   | ●<br>(LH,<br>SH) |             | LH, SH 제도 연계                                                                                                              |
|       |                    |             | ●<br>(담당)       | ○<br>(지원) |                       | ○<br>(보조기<br>기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D 주택개조</li> <li>보조기기 제공</li> </ul>                                                |
|       |                    | ●           | ○<br>(지원)       |           | ○<br>(지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일자에 시설퇴소</li> <li>시설지예산 ⇒ 주거서비스</li> </ul>                                       |
|       |                    | ●           | ○<br>(이용)       |           | ●<br>(담당)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시설 센터(초기정착 지원)</li> <li>발달 센터(2년 이후 지원,<br/>개인별지원계획 등)</li> </ul>                 |
|       |                    | ●           | ●<br>(이용)       |           | ○<br>(지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서비스 이용지원</li> <li>2년 단위 개인별지원계획</li> </ul>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회의자료 2020. 지역사회 전환과정 선행연구 및 서울시 예시를 참고하여 도식화함.

#### (4) IoT·AI를 접목한 주거지원 확대

‘노인 7명 중 1명은 장애인’ 일 정도로 65세 이상에서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인구 고령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집단 거주시설에 거주하거나 취약한 거주지를 주거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돌봄 공백 시간이 발생하는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IoT·AI 기술 등을 접목한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만이 아닌 물리적 공간을 필요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sup>6)</sup>과, ‘IoT 활용 장애인거주시설 돌봄지원 시범사업’<sup>7)</sup>, ‘IoT 활용 양로시설 돌봄지원 시범사업’<sup>8)</sup>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이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노인·장애인(시설입소자 포함)의 돌봄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IoT·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양로시설 15개, 장애인시설 85개 총 10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및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예산은 기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체계를 활용하고, 노인·장애인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기기 및 시설 상황에 맞춘 다양한 센서를 설치할

6)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국 255개 보건소 중 24개 보건소를 선정했고,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개월간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개인에게 AI 생활스피커, 활동량계,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를 지급하여 스마트폰과 앱을 연동하여 자신의 건강정보를 전송하면, 담당팀에서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과 신체활동에 관한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게 됨(메디컬 이코노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830736&memberNo=49312582&vType=VERTICAL>. 2020.10.29.검색.)

7) 이 사업은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시대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됨(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IoT. 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계획(안)).

8) 이 사업은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시대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됨(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IoT. 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계획(안)).

예정이다. 시설의 각 센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각 시설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는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가정에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스마트 전등, 가스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응급안전요원, 119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 스마트 홈케어 기기 (제주도 사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0, 76.

향후 자립주택, 지원주택 등에도 IoT·AI 기술을 접목한 일종의 ‘시스템 주택’이 설치되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에서 취합된 정보가 관내 소방서나 의료기관에 전송되어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듯이, 지역사회와의 재가주택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돌봄센터나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정보를 취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주택 설계 시 IoT·AI 관련 장치가 내장된 시스템주택을 시공하거나,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도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과제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기술 개발·실증’ 부분에 스마트홈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 개발 착수,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에 탈시설 전환 장애인에게 LH에서 주택을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노인·장애인 물량에는 IoT·AI 관련 장치가 내장된 시스템주택을 공급하고, 정보취합과 처리, 적절한 조치 제공 등은 보건복지부의 돌봄 관련 기능수행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3. 포괄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 1)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1) 저렴주택 물량 확대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저렴주택의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다자녀 유형’과 ‘20~’ 22년 3년간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을 1.7만 가구로(국토교통부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19. 10. 24)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부담 과다,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 가구는 전국에 약 60만 가구(‘19년 주거실태조사), 보호종료 가구는 매년 약 2600명이 발생하고, 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까지 합하면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가 시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5%가 배정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 매입임대물량이 없는 경우가 있고 LH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게는 배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LH조례나 규정을 점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사업자로 LH를 명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2)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체계 마련

주거약자법에 근거한 주거지원센터의 역할은 주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환경이나 개조 등에 관한 업무이다. 주거기본법에 의한 LH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개조/정보제공/실태조사 등 일정 부분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커뮤니티 케어,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의 신속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운영기관과 주거지원센터·주거복지센터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LH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주택 정보를 취합하고, 지원주택 실시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거주공간+지원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등과 맞물려 향후 커뮤니티 케어가 더욱 확산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공급물량 확보는 물론이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주거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LH/지역도시공사, 복지 관련 기관, 읍·면·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진행 중인 주거 관련 유사사업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 혹은 신설할 필요가 있다. 주택 지원 혹은 입주 후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사업자 혹은 지원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과 적용도 필요하다.

## (3) 아동주거급여 및 장애인주거수당 신설

현행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인 104만 가구('19.12월)에게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구당 평균 월 13.5만원의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비용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아동가구의 주거급여와 장애인 주거수당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

의 경우 단순 주거비용만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주택 내 편의시설 관리 및 유지 등)이 소요된다<sup>9)</sup>. 지원대상을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장애인 혹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확보되어야 하므로, 주거지원 인정조사표(가칭) 등의 장치를 통해 대상자와 급여량을 산정할 수 있다. 호주나 미국의 경우 국가보험에서 주거지원 관련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도의 주거수당을 마련해서 급여대상을 장애인에 국한할지 혹은 기존의 주거급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4) 아동·청소년 연령별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주 대상이다. 만 12세 이후에는 위기 개입, 집중 사례 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례 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하에 만 1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즉 만 13세 이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드림스타트를 통해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없다. 주거 위기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된 사적 공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 13세 이후의 주거 위기는 아동 발달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2020년 7월 29일 제11차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발표하였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그림 5-3>와 같이 연계하고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0). 이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아동은 드림스타트에서 사례 관리를 하되, 13세 이상이 되어 드림스타트서비스가 종료된 아동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넘겨 관리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까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지자체 청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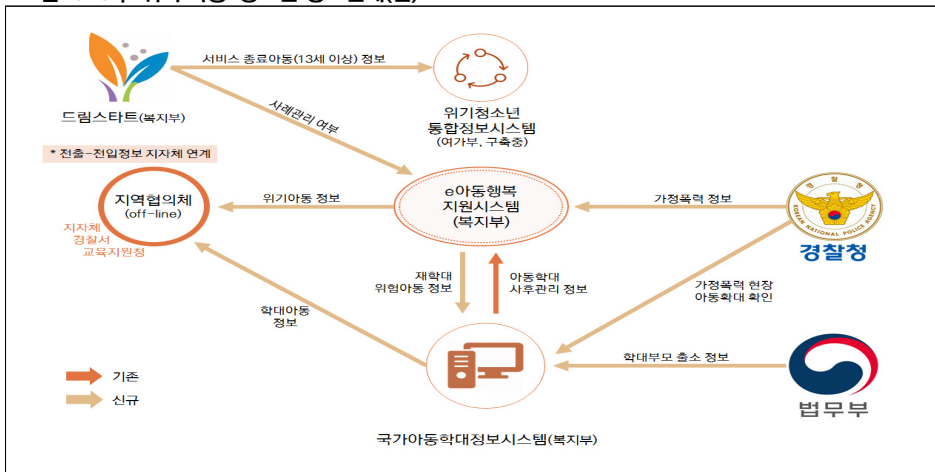
9) 장애인은 무장애 관련 시설(단차제거, 문 폭 확대) 설치를 추가지원(380만원)하고, 고령자(만 65세-)는 수선유지 급여 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함.

년안전망팀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현재 구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보연계안은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빈곤의 상황에서는 아동 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강지영 2017).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주거 빈곤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정보가 수집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 빈곤에 처한 13세 이후 청소년 사례 관리의 체계적 개입을 위한 조직, 드림스타트와 유사한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을 활용하여 13세 이후 청소년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3 |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연계(안)



자료: 교육부 2020, 3. 그림 재인용

## 2) 사례관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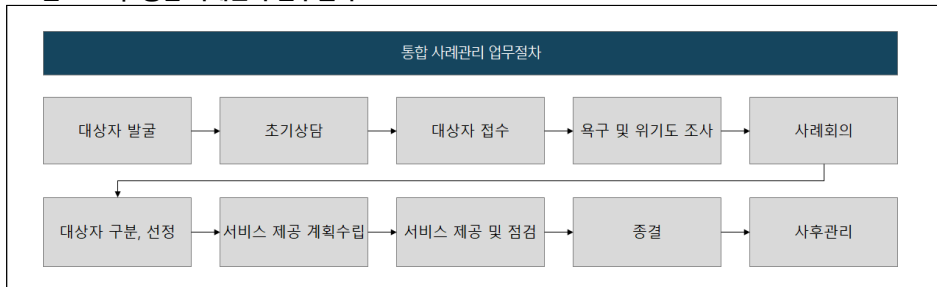
### (1) 민관 협업 사례관리 강화

사례관리의 목적은 하나의 대상자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사업에서는 사례관리가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주거복지 영역에서는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정책 담당자가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은 상황이다.

사례관리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공공영역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그 체계가 통일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의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4> 참조).

민간영역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의 경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 절차와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복지자원(세부사업, 프로그램 단위)의 관리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정보공유 통합지원시스템은 공공영역에게는 민간영역에서의 사례관리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민간영역에게는 민간-민간영역에서의 정보 교류와 민간-공공영역에서의 정보연계가 가능하게 하여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공공영역의 연계 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민간영역에서의 연계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된다.

그림 5-4 | 통합 사례관리 업무절차



자료: 박규범 외 2019.

---

통합사례관리의 과정에 있어 공공영역은 통합 사례회의를 주관하고, 서비스연계 및 조정(사전 역할), 자원 배분 및 중복 조정(사후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영역은 복합적 욕구대상자 발견 시 통합사례회의를 요청하고, 서비스 중복에 대한 조정 요청, 자원 배분에 대한 중재 요청, 공공의 조정·중재에 대한 협력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통합 사례관리의 체계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두 영역 간의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윤수 외 2009).

주거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업과 정보공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원칙 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 (2) 주거복지서비스에서 사례관리 활용

사회복지정책에서 사례관리는 필수요소이다. 그런데 주거복지에서는 사례관리 기법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인력 부족의 문제 때문이다. 한번 정책대상자로 선정해서 이를 지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례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의 문제도 있다. 특히 사례관리는 방문이 기본이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까지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이면서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사례관리가 필수요소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사례관리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에서도 사례관리기법을 이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의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 4. 효과성: 정책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 1) 정보시스템 개선

#### (1) 서식 표준화

현재 아동·청소년이나 노인·장애인 대상의 주거정책은 정보가 분절적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호종료 아동 등의 기록이 지자체간 자료로 연결되지 않아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간의 정보망 등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중앙과 지자체, 공공과 민간 간 정보망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례관리 등의 기록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과 민간, 지자체간 자료연계가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이해도에 있어서 담당자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 DATA를 동일한 양식으로 입력하여 통일된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전산시스템 등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담당자만 교육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옆 부서 및 관련 업무부서에서도 함께 교육받도록 하여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2) 민관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와 대상자를 중심으로 기관간 협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끊김 없는 업무처리(seamless process)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시설 간 협력적 상호관계가 필요하다.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협업과 대상자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하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단계인 발굴, 신청, 조사, 집행, 사후관리 단계에서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신청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신청은 국토교통부

---

의 마이홈 포털 등 각 서비스 주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주체별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덧붙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일괄적인 복지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집행단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을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과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만, 조사기능만 연계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등 주거 관련 이력정보는 각기 관리되어 대상자 중심의 이력 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이력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수급이력 및 대상자 관리정보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선 지방자치단체 읍·면·동과 전담기관인 공공센터와 사회복지시설 간 정보연계가 중요하다. 현재 주거복지 전담기관인 주거복지센터 등은 LH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주거서비스 전담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부는 민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관 정보공유도 어렵고, 민-민 업무협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서비스 민관협업과 민민연대가 필요하다. 차세대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은 민간시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바탕으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3) 주거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사업 단위 또는 업무주체 단위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향후는 대상자의 욕구 파악에 따른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복지대상자의 욕구는 복합적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전달체계 내에서 해당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욕구 사정과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필

요하다.

사례관리 수행 시 관에서 민간으로 제공하는 정보공유 항목은 대상자의 정보, 가구 정보, 자격정보, 급여이력정보, 소득 및 재산, 사례관리 이력, 민간 서비스 수혜이력 등의 정보이다.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민간시설에 활용 가능한 정보는 아래 <표 5-4>와 같다.

**표 5-4 | 원스크린 정보 항목**

| 구분      |           | 내용                          |
|---------|-----------|-----------------------------|
| 대상자정보   | 기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연락처, 주소 등 |
|         | 가구원정보     | 관계, 성명, 연령 등                |
|         | 가구원이력정보   | 자격(보장)이력, 급여이력, 소득재산 정보 등   |
|         | 소득재산      | 소득소계 재산소계 등                 |
| 이력정보    | 자격이력      | 관리행정지역, 보장구분(자격명), 보장상태 등   |
|         | 수혜이력      | 급여서비스명, 지급주기, 지원금액 등        |
|         | 시설서비스이력   |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 제공기간, 담당자 등   |
| 사례관리 정보 | 사례관리이력    | 사례관리번호, 대상자유형, 진행상태, 담당자 등  |
|         | 사례관리 상세이력 | 욕구 및 문제영역, 주요 원인, 종합의견, 등   |

자료: 함영진 외 2019. 203.

공공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례관리 정보의 공동활용을 상호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민간시설로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즉, 민간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연계가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5>와 같다.

표 5-5 | 민간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행복e음 정보연계 필요 항목

| 사례관리<br>프로세스 | 행복e음 보유정보                                    |                                 |                                     |
|--------------|----------------------------------------------|---------------------------------|-------------------------------------|
|              | 대상자정보                                        | 이력정보                            | 사례관리정보                              |
| 대상자발굴        | 성별, 학력, 개인특례유형, 재산소득, 기타소득, 일반재산, 금 소득재산상세 등 | 관리행정동, 서비스결정보장구분, 지원종류 등        | 상담종류, 상담일자, 상담시·군·구, 상담자명, 상세상담내용   |
| 초기상담         | 성별, 학력, 개인특례유형, 시설수급자여부, 입소시설명, 심한장애여부 등     | 관리행정동, 소관부처, 개인별급여지급내역 등        | 상담종류, 상담일자, 상담시·군·구, 상담자명, 상세상담내용   |
| 대상자접수        | 성별, 가구원 주소정보, 특례정보, 학력정보 등                   | 관리행정동, 서비스결정보장구분, 자가가구수혜내역 등    | 상담종류, 상담일자, 상담자명, 상세상담내용 등          |
| 육구 및 위기도 조사  | 성별, 학력정보, 수급권자와의 관계, 부양완화대상여부 등              | 관리행정동, 서비스결정보장구분, 지원종류          | 관리행정동, 서비스결정보장구분, 지원종류 등            |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부양완화대상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장애인연금수급여부, 소득재산상세조회 등   | 상담종류, 상담일자, 상담경로, 상세상담내용 등      | 상담종류, 상담일자, 상세상담내용                  |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성별, 학력, 급여서비스, 소득 재산, 상담내역, 취득자격 등           | 관리행정동, 자가가구수혜내역, 급여자격 이력 등      | 상담종류, 상담일자, 상담가구원, 상담업무구분, 상담내용 등   |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성별, 입소시설명, 건강상태, 장애정보, 상담내역 등                | 관리행정동, 서비스결정보장구분, 지원종류, 소관 부처 등 | 상담종류, 상담일자, 상담가구원, 상담업무구분 등         |
| 종결           | -                                            | 관리행정동, 서비스결정보장구분, 지원종류 등        | -                                   |
| 사후관리         | 성별, 개인특례유형, 시설수급자여부, 입소시설명 등                 | 서비스결정보장구분, 지원종류, 개인별급여지급내역 등    | 상담종류, 상담일자, 상담채널, 상담시·군·구, 상세상담내용 등 |

자료: 함영진 외 2019. 227.

민관협업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도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형화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비정형 세부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관리 관련 매뉴얼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 |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민간시설 항목**

| 구분   | 내용                                                                                                             |
|------|----------------------------------------------------------------------------------------------------------------|
| 개인정보 | 육구, 종교, 주거사항, 식생활수준, 개인력, 저축, 부채, 입원이력유무, 심리상태                                                                 |
| 가구정보 | 생태도, 가계도, 가족력, 가족관계(리커트 5점)                                                                                    |
| 사례관리 | 사례관리대상 등록사유, 사례관리대상 등록일, 욕구긴급성, 강점, 자원활용현황, 경제위기성, 공식 및 비공식 자원, 환경수준, 능력수준, 사회관계, 사정/재사정 요인, 사정/재사정 결과, 능력 수준, |
| 주거정보 | 주거사항(방 개수), 주거사항(부엌 유무), 화장실 등 주거 환경 실태                                                                        |

자료: 함영진 외 2019. 재구성

#### (4) 정보 관리 방안

민간 복지시설에서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어 민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 및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의뢰체계 구축, 공동이용 DB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프로그램 정보뿐만 아니라 자원에 참여한 대상자의 이력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정보관리체계 수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주거복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여러 정보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관련 행정데이터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를 수집 관리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가 어떤 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가 어떠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다양한 시스템 간 정보의 연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통합된 공공과 민간의 정보시스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안과 백업 등 정보관리체계

---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체계 수립이 중요하고, 데이터 보안과 유실 방지를 위한 백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복지 정보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주관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 적재 그리고 활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주거복지 정보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관장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정보플랫폼으로 하여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거복지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기관 측면에서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보를 포함한 공공과 민간의 통합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고, 통합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공업무 지원 및 인센티브 혜택 부여로 공공과 민간의 통합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2)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 (1) 공동목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담당자 인식조사에서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2점(7점 만점)으로 도출되었다(부도 7 참조). 그러나 ‘어느 곳’과 연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일’을 연계할 수 있는지 모르는 문제가 크다. 먼저 여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가 증진될 때 공동 목표 발굴 및 공동 기획, 공동 협의체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연계 업무를 단순화하여 이를 매뉴얼화한다면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동 기획을 위한 예산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도 가능할 것이다.

---

부처 간(기관 간), 부처 내(기관 내) 공동 학습 및 공동 문제 제기 등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의 목표추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동 학습과 공동 의견 교환 및 소통이 별도의 업무나 잔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2) 주거복지 교육 확대

주 담당업무에 따라 담당자들의 상호 이해도에 매우 차이가 있다. 즉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주거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고 본인의 업무영역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주택건축 관련 공무원은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 보다는 건설 관련 허가 등에 더 친숙한 편이다.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주택건축 관련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쁜 복지 관련 업무와 사업에 새로운 업무가 더 추가될 것을 우려하여 교육 자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 평가점수에 주거복지 항목을 넣고 담당공무원이 교육이수 시 개인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연계 활성화를 위한 동기 개발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연계·협력의 장애요인은 ‘잔무가 많아짐’, ‘성과의 귀속문제’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계·협력을 통하여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반감되고 성과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과정의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어느 부처(기관, 과, 개인)의 성과로 평가되는가’가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처간 연계·협력의 성과의 경우 추가가점 부여제도와 공동성과제를 도입하여, 관련 담당자가 속한 부처(기관, 과, 개인)에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평가지표에 주거복지지표를 넣어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부처간 업무 연계를 촉진하고 연계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연계·협력의 장애요인 중 예산 배정의 어려움의 비율도 높다. 일부 예산을 연계·협

---

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예산항목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거개보수나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서비스 등 여러 관련 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연계·협력이 중요한 사업에서 활용해 볼 수 있다.

#### (4) 업무 매뉴얼 작성·배포 및 담당자 교육 확대

주거지원정책,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마이홈 등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은 해당 사업마다 매뉴얼 숙지를 요구받는다. 그런데 정책 전달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한 경우 자가로 간주하여 무주택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담 결과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 법이나 부처 업무상에서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비주택으로 분류되고, 비주택은 자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 기인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담당자가 순환하더라도 신입 담당자가 업무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임하도록 개선훈 필요가 있다.

### 3) 원스톱서비스 제공

#### (1) 상담 담당기관 확대 및 콜센터 운영

현재 주거지원 관련 문의 시 응답이 한정적이며 계속 전화나 문의를 다른 곳으로 연결시켜서 실제 도움이 되는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연구 수행 중 하나로 추진한 2020. 7. 14. 인터뷰 조사 중). 이는 주거복지센터나 LH 등에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업무가 업무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 한편 담당자 조사에 따르면 의외로 주거복지 업무에 대해서 내용의 난이도가 높지 않으므로 교육을 통하여 상담의 역할을 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연구 수행 중 하나로 추진한 2020. 10. 6. 아동청소년 포럼

---

논의 중). 따라서 현재 주거복지센터 외에도 주민자치센터, 기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마이홈 앱처럼 수요자가 직접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의 개발과 개선, 업무의 단순화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앱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 즉 고령층, 장애인 등은 상담요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상담자들이 문제를 간단하게 검색하여 해당 요건 및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상담원 책임제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물리적, 심리적인 정보 접근성이 수월하려면 주택 및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와 정보 제공이 원스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의 일원화, 중복 및 사각지대 발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읍·면·동 수준에서 의뢰된 사례나 각 센터를 개별 방문한 사례를 막론하고 각 센터별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례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이 달라서 센터의 물리적 통합이 어렵다면, 최초에 사례를 접수한 기관에서 시스템상 표준화된 서식을 공유하여 사례관리를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다산콜 센터처럼 상담 요원이 문의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답 내지는 상담에 응할 필요가 있다.

## (3) 주거복지센터 역할 및 전달체계 정리

주거복지의 전담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되 복지서비스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거 상담, 사례관리, 긴급주거지원 방안 수립 등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케어 전담기관을 포함한 주거지원 관련 민간기관과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인건비를 지

---

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네트워크가 중요한 지역 기반 특화사업(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집수리사업,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전달체계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지원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SH나 LH의 임대주택 등을 매입해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 시행되고 있는 이들 전달체계를 확대 활용하고, 거주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전달체계와의 연계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간 다수의 복지 관련 서비스가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위탁되면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 면이 있다. 현재 일반 복지상담은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업무 중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례관리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팀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 예이다. 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이 아닌 주거복지센터나 주거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하는 연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CHAPTER 6

# 결론 및 향후 과제

- 1. 결론 ..... 165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67



---

## 06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장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및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주거지원정책은 국민이 편리하게, 그리고 정책 공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 아동·청소년의 주거지원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교육부와 법무부도 포함이 되어 있어 주된 업무라고 하기에는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향후 과제의 범주로 남겨둔다.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 계획에 대한 연구도 향후 추진과제로 남긴다.

### 1. 결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시기를 거쳐 노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를 경험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은 생애주기에서 가장 취약하고 사회복지 측면서의 욕구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시기이다. 여러 기관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개별 기관마다 이행하는 사업과 정책이 분절적이고 이원적이어서 대상기준이 다르다. 또한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는데, 실제로 목적과 구성이 다른 여러 기관의 연계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기관에서 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상호 소통과 교육, 사업 공동기획과 모니터링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모든 복지서비스의 시작점이자 최종 귀결점인 ‘주거’이다. 실제 현장에서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라도 복지서비

---

스의 효과가 배가된다고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 비부담이 과다하거나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가 약 60만 가구, 노인과 장애인 가구가 약 62만 가구에 달한다. 이 연구는 이들 주거취약계층, 그중에서도 생애주기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정책연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주거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시작하는 시도이다.

주거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주거복지수준이 제고되고 사각지대의 해소와 중복수혜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는 업무담당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잔무가 늘어나고, 연계 업무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현재 업무도 많아서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정책의 연계·협력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다. 그리고 연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공급하는 업무 담당자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정책공급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성 높은 정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속성: 주거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서비스 지원’, ‘포괄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효과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이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거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계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을 통하여 서로 ‘알아야 한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야 협력을 구할 파트너를 찾을 수 있고 함께 기획할 수 있다.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업무의 단순화 및 매뉴얼화,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 공유 및 열람, TF, 위원회 협의회, 전문관 제도를 통한 인력 공유, 교육공모워크숍 등의 방법이 효율적이다.

한편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열람 및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필요도가 매우 높았다. 현재 범정부 시스템뿐 아니라 여러 시스템에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민간-민간, 지역간 정보의 제한으로

---

서비스가 단절되어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식을 표준화하고 보급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거지원 정책의 관련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체감도와 정책효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거복지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 보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정보자원 통합, 정보 표준화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개선방안이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의 주거서비스를 강화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중에서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역할이 크고 범위가 넓으며, 아동 영역에서 소년원 등 범죄와 관련된 아동은 법무부와 관련이 되는 등,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야를 포괄해서 검토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상의 한계가 있어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노인·장애인의 영역에서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정책이 따로 있고 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따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은 다른 연구와 전문가의 역할로 남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발전되어야 할 연구 방향과 과제는 먼저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시스템, 모니터링이다.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업무내용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방향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실천적인 연구이다. 현재 아동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이 있으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실천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 번째로는 통합돌봄의 연구과제이다. 고령화의 속도에 따라 통합돌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통합돌봄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고 지역의 분권과 맞물려서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통합돌봄에서 주거·의료·복지의 각 분야에서 역할이 잘 맞추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은 행복e음, 범정부 전산시스템 이외에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주거정책 영역에서 점검이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전문적이므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 참고문헌

REFERENCE



### 【인용문헌】

- 강미나, 김진범, 이현지, 김태환, 김현진, 주현태, 서종균. 2010.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 강미나, 유미경, 조윤지, 이동우. 2016.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국토연구원.
- 강미나. 2018. “함께 잘 살기 위한 주택정책 방향모색”.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 강지영. 2017.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7(2). 41-71.
- 강혜규, 정영철, 함영진, 김희성, 추병주, 이대영, 김태은. 20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관리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설교통부. 2004. 주택종합계획(‘03~’12).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2019. 경기도 쉼터 퇴소 청소년 주거권 세미나 (2019.8.27.) 발제문.
- 고경훈, 이병기, 김건위, 최흥석, 김서용, 왕재선, 임채홍. 2017. 다부처 서비스 전달체계 협업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11월 29일.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8a.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11월19일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8b.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안) (2018~2022).
- 관계부처 합동. 2019.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2월 26일.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0.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시대(주거복

- 
- 지로드맵 2.0). 3월 19일. 보도자료.
- 교육부. 2020.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7. 29.
- 국토교통부. 2017.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2019a.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10월 24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19b. 주거급여사업안내.
- 국토교통부. 2020a.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국토교통부. 2020b. 2020 주택업무편람.
- 국토교통부. 2020c. 2020년 주거종합계획.
- 권오용. 2019. “커뮤니티 케어와 정신장애인의 자립지원”. 2019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 권오정. 2012. 노인세대를 위한 주거시설 현황과 노후 주거대안 탐색.
- 김민규. 2013. 커뮤니티 공간이 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대구광역시 매천지역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통권57호. 127-136.
- 김상운, 김용균, 성기창, 박광재, 강병근. 2012.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개조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8(2). 19-31.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 김성희, 황주희, 이민경, 심석순, 김동주, 강민희, 정희경.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희, 김은혜, 이진숙. 2010.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주현, 안용진. 201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환경만족 결정요인 차이 연구. 주택도시연구. 8(1). 1-17. SH도시연구원.
-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영. 201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

## 학교

- 김현호. 2012. 지역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남기철. 2018.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의”.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의회.
- 문영임, 김수정. 2018.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의 쟁점과 법적 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9(2). 163-193. 사회복지법제학회.
- 문효곤, 백혜선. 2015.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유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통합 운영방안. 주거학회논문집. 26(5). 113-121. 한국주거학회.
- 민소영. 2018. “우리나라 지원주택 현재와 전망”. 2018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국토연구원.
- 박규범, 윤기찬, 김은하, 한은희, 이우식, 최솔지, 이인수. 201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복지분야 사례관리 정보 표준화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 박금령, 최병호. 2019.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500-5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서연, 전희정. 2018.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만족도 비교 연구. 도시행정학보. 31(4). 27-54. 한국도시행정학회.
- 박신영. 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33-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하나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논문집. 사회복지연구. 제46권 제2호. 101-123.
-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논문집.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2호. 137-159.
- 변용찬, 이태진, 허수정, 강미나, 김인순, 박신영, 서종균, 이인혜, 임성만, 홍미령, 홍인옥. 201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부. 2017a. 2017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7b.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안내 -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8.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2018. 12. 26.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0a.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 보건복지부. 2020b.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 보건복지부. 2020c.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 업무 안내.
- 보건복지부. 2020d.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보건복지부. 2020e.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보건복지부. 2020f. 202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0g.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
- 복지로. 복지뉴스·이슈.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위기아동 보호망 강화한다.  
www.bokjiro.go.kr. 2018. 02. 21.
- 봉인식. 2013.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재편 가능성에 대한 연구. 주택도시연구.
- 신용주. 2012.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언. 주거환경. 10(3), 159-171.
- 신화경, 이준민. 2008. 고령사회 노인주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5-25.
- 안은희. 2013.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8). 87-94.
- 엄석진, 김기훈, 김동욱, 윤지웅, 강혜진, 김준형. 2019. 주요 분야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2020.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안. 전년 대비 5.3% 증액된 1조 1,789억 원 편성. 알림소식. 2020. 9. 1.
- 유니세프.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6조.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3>.  
2020. 12. 28 검색
- 이다은, 서원석. 2017. 가족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의 인식 비교 연구. 주택도시연구. 7(2). 37-53. SH도시연구원.
- 이원섭, 양하백, 정옥주, 박인권. 2005.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Ⅲ) :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이재춘, 강미나, 박미선,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이태진, 임덕영, 전지현, 최은영, 김준희, 강혜경, 신연철, 정선화, 최지희, 김지선, 전홍규, 최민아, 유은영, 손준태. 2020. 포용적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 연구. 중간보고회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이태진, 현사웅, 김선미, 우선희, 김정은. 2010.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호선, 정지웅, 고아라, 임수경. 2017.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권 지표개발 및 정책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임덕영, 정소이, 구아라. 2019.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지원 방안 연구 : 탈시설 지원을 중심으로. 토지주택연구원.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세희, 최은영, 김희주, 김기태, 김동민, 김승환, 2018. 아동주거권옹호연구보고서-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임세희. 2019. 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1(4). 7-30. 한국사회복지학회.
- 임세희. 2020.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가정내 아동을 중심으로-. 세계주거의날 아동주거권 컨퍼런스. 서울주택공사·서울하우징랩·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최. 2020. 10. 5.

- 
- 임세희, 김희주. 2019.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지원 후 삶의 질 변화. 한국사회정책. 26(3). 287-319.
- 임세희, 최은영, 김희주, 김기태, 김동민, 김승환. 2018.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연구보고 2018-09.
- 임세희, 김선숙. 2016.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논문집. 한국아동복지학. 제56호. 133-164.
- 임세희, 김희주. 2019.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지원 후 삶의 질 변화. 한국사회정책학회 논문집.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3호. 287-319.
- 임세희, 박경하. 2017.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 한국사회정책학회 논문집.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4호. 31-62.
- 임종한. 2019. “커뮤니티케어와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 2019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 정기성, 기윤환. 2018. 수요특성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분석-인천광역시 청년, 육아가족, 노인 계층 중심으로-. 주택연구 제26권 제4호. 29-52. 한국주택학회.
- 정보선, 조응경, 이상엽. 2018.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수요추정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연구. 8(1). 37-52. SH도시연구원.
- 정윤수, 권현영, 고윤석. 2009. 공공, 민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MyGov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희경. 2020.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지원 정책방향. 미발간.
- 제주특별자치도. 2020. 2020년 제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서.
- 조윤지. 2019.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국토연구원.
- 지규현. 201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의 적정성 평가. SH도시연구원.
- 차미숙, 이원섭, 김창현, 임은선, 이미영, 박재희. 201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 
- 지역간 연계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천현숙, 오민준. 2013. 노인주거문제와 지원방안. 국토정책 Brief, 1-6.
- 천현숙. 2019.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정책 목표와 발전 방향. 주택도시연구. 9(1). 1-11. SH도시연구원.
- 최은영. 2019.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 실태와 제언. 2019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 토론회.
- 하성규. 2010.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 17(1). 321-351.
- 한겨레 21. 2019a. 고아들의 18 청춘. 제1255호.
- 한겨레 21. 2019b. 나는 진실을 원합니다. 제1256호. 자립 복지는 복불복?
- 한겨레 21. 2019c.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제1286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내부회의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IoT·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계획(안). 내부회의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다부처 서비스 전달체계 협업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 한은희. 2018. 행복e음 소득조사를 위한 연계정보 현황 및 특성 분석. 사회보장정보원.
- 함영진, 강혜규, 정영철, 김윤희, 김희성, 이기호, 이민경, 김가희, 김정준, 김지연, 김태은, 이정은, 정은우. 2019.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발간.
- 함영진, 정해식, 안수란, 강혜규, 김태은, 김 선, 박지환, 김이배, 안기덕, 오민수, 이대영, 이동영, 이영글, 조미정, 박규범. 2017.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행정안전부. 2019a. 협업행정 매뉴얼(교육용).
- 행정안전부. 2019b.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2019. 2. 26. 보도자료)[https://www.mois.go.kr/f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68995](https://www.mois.go.kr/f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68995)(20. 12. 28 검색)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행정안전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주요 분야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 연구용역.

황성준, 김정득, 김은정, 곽아람, 지은구, 고관우, 박은옥, 윤재호. 2019. 제주형 커뮤니티 케어 운영모델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참고 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2018. 경기도조례 제5911호(5월 2일 일부개정).

경기도. 2018. 2018년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9. 법률 제16734호(12월 3일 일부개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2019. 국토교통부훈령 제1211호(7월 29일 일부 개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2020. 국토교통부훈령 제1325호(10월 19일 일부 개정).

대한민국헌법. 1987. 헌법 제10호(10월 29일 전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법률 제16736호(12월 3일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법. 2020. 법률 제17201호(4월 7일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12월 31일 타법개정).

소년법. 2018. 법률 제15757호(9월 18일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2020. 법률 제17206호(4월 7일 일부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7. 법률 제14839호(7월 26일 타법개정).

영유아보육법. 2020. 법률 제17209호(4월 7일 일부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18. 법률 제15457호(3월 13일 일부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법률 제16390호(4월 23일 일부개정).

---

장애인복지법. 2019. 법률 제16733호(12월 3일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0. 법률 제17344호(6월 9일 타법개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법률 제17217호(4월 7일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2018. 법률 제15358호(1월 16일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2019. 법률 제16391호(4월 23일 일부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2020. 국토교통부훈령 제 1310호(7월 29일 일부 개정).

청년기본법. 2020. 법률 제16956호(2월 4일 제정).

청소년 보호법. 2020. 법률 제17091호(3월 24일 타법개정).

청소년기본법. 2020. 법률 제17285호(5월 19일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2018. 법률 제15988호(12월 18일 일부개정).

초·중등 교육법. 2020. 법률 제17496호(10월 20일 일부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8. 법률 제15354호(1월 16일 일부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3. 대통령령 제24425호(3월 23일 개정).

#### 【 웹사이트 】

경남데일리 홈페이지.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4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수탁자 선정”. (2020. 9. 1.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0년 9월 13일 검색)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2020년 9월 28일 검색)

메디칼이코노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830736&memberNo=49312582&vType=VERTICAL> (2020. 10. 29. 검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  
List.do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누리집-주거편”. (2020. 7. 30. 검색)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20년 10월 11일 검색)  
서울시 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2020년 9월 28일 검색)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020년 9월 13일 검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sis.or.kr/lay1/S1T750C767/>  
contents.do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성도”. (2020. 9. 1. 검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index.do> (2020년 9월 28일 검색)

#### 【 해외자료 】

OECD. 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Modernization Act. 2010.  
일본 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카시와시. 2018. 토요  
시키다이 지역 고령사회종합연구회의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미국. 1988. 공정주택법.  
영국. 1990. 커뮤니티케어법.  
영국. 2014. 돌봄법(Care Act 2014).  
일본. 2005. 개호보험법.  
일본. 2003.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일본. 2006. 주생활기본법.  
일본. 2014. 의료보호종합확보추진법.  
일본 카시와시 홈페이지.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400/p046619.html>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에 대하여”.  
(2020. 6. 1. 검색)  
일본 카시와시. 2017. 카시와시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등록에 관한 지도지침.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400/p046619.html> (2020. 6. 1. 검색)

---

일본 후생노동성. 2016.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책 사례집.

**【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 SUMMARY

---



### Enhancing inter Ministry Linkage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Kang Mina, Cha Misook, Kim Eunnan, Lee Jaechoon, Kim Jung-Hee, Lim Sehee, Ham Youngjin

**Key words:** Collabo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Housing Policy,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Elderly, the Disabled, Delivery System

The absolute shortage of housing inventories has been partially resolved, but the gap in housing standards still persists. About 600,000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about 620,000 households of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re either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under heavy housing costs, or live in non-residential buildings. A high percentage of households with children, adolescent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re social security-related vulnerable groups, and various institutions provide supports to respond to their complex welfare needs. However, as individual institutions are currently implementing projects and policies in a discrete manner, there are problems such as inconsistent target criteria, poor information sharing, and blind spo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llabo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so as to enhance the public satisfaction and to ensure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of policy supplie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llaboration

---

among related agencies to efficiently implement housing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adolescent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policies and institutional status of the housing-vulnerable class, various kinds of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And experts from various related agencies took part in this study as research advisers. Through on-site surveys and interviews about integrated care pilot projects, the actual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project were identified. An in-depth research was conducted by recruiting experts on children, youth,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information system.

The three basic directions of “continuous and equitable service support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the vulnerable class”, “prevention of housing support beneficiary omission”, and “preparation of an efficient and effective delivery system” were presented, and policy measures were prepared and presented to strengthen specific policy links, including the readjus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to strengthen residential rights. Policy measure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delivery systems were proposed, including measures to enhance housing stability by strengthening housing services for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s well as to link information systems, such as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s study is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considered ways to promote collaborated effort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ter-ministerial policies on target households.

## 부 록

APPENDIX



### ■ 부록1: 선행연구

부표 1 | 주거빈곤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선행연구

| 구분         | 연구자 및 연구내용 요약                                                                                                                                                                                                                                                                                                                                                                                                                                                                                                                                                                                                                                                                                                                                                                                    |
|------------|--------------------------------------------------------------------------------------------------------------------------------------------------------------------------------------------------------------------------------------------------------------------------------------------------------------------------------------------------------------------------------------------------------------------------------------------------------------------------------------------------------------------------------------------------------------------------------------------------------------------------------------------------------------------------------------------------------------------------------------------------------------------------------------------------|
| 1) 주거빈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정만·허용창·오옥찬·윤수경(2015):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우울)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li> <li>• 박정만·오옥찬·이건민(2015): 중층적 주거취약, 그리고 비주거취약 집단을 유형화, 주거취약 집단의 다수는 비수급자인 빈곤층이고 그 상황을 벗어날 확률이 현저히 낮음을 밝힘</li> </ul>                                                                                                                                                                                                                                                                                                                                                                                                                                                                                                                                             |
| 2) 공공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다은·서원석(2017): 가족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특징 및 시사점</li> <li>• 정기성·가윤환(2018): 계층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을 분석, 이에 따라 육아가족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내 디자인 및 커뮤니티 시설 특화 주택 공급 확대, 청년과 육아가정 계층을 위한 역세권 주택 공급, 산단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 필요성 제시</li> <li>• 정보선·조용경·이상엽(2018):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특별공급 가구의 입주자 수요특성 분석</li> <li>• 지규현(2017): 2016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 입주자의 주거 서비스 수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과 입주경로에 따른 차이를 분석</li> <li>• 김주현·안용환(2018):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만족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커뮤니티 요인이 상대적으로 주택성능 이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힘</li> <li>• 김민규(2013): 커뮤니티 공간이 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매천지역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사례지역으로 연구</li> <li>• 봉인식(2013): 중앙-지자체 협력적 공급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li> <li>• 천현숙(201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공급계획수립 및 정책평가, 공공임대 주택과 주거서비스의 결합 등 공공임대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또한 제시함)</li> </ul> |
| 3) 주거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서연·전희정(2018):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만족도보다 높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는 주택시설 및 근린환경 모두에 의해 영향 받는 반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만족도는 주로 근린환경에 의해 영향</li> <li>• 문효곤·백혜선(2015): 각 부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유사사업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주거현물급여 사업을 중심으로 자가수급자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추천함</li> <li>• 김태영(2016):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유사 주거비 지원 제도 통합, 다른 제도와의 연계, 전담인력 확대, 일원화된 전달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함</li> <li>• 이태진 외(2010): 주거급여의 위상과 의미, 기초보장제도와 주거급여제도의 내용과 실제, 주거급여의 원칙 등 제시</li> </ul>                                                                                                                                                                                                                                                                            |
| 4) 주택개량/개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영임·김수정(2018):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거주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사업의 방향성 수립,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및 탄력적인 지원금 운용,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인 설정과 이를 규제하는 법적 제재 수단 정비의 방법을 제시함</li> <li>• 김상운 외(2012): 국내 주택개조 지원은 기간에 제한이 있고 담당자의 전문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복지선진국의 사례 중 전문적인 주택개조 지원센터 설립, 주택개조 관련 전문가 양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자해택 확보 등을 국내에 적용할 것을 제안함</li> </ul>                                                                                                                                                                                                                                                                                                                                                                                                                               |

부표 2 | 아동, 노인, 장애인의 주거관련 선행연구

| 구분                  | 연구자 및 연구내용 요약                                                                                                                                                                                                                                                                                                                                                                                                                                                                                                                                                                                                                                                                                                                                                                                                                                                                                                                                                                                                                                                                                                                                        |
|---------------------|------------------------------------------------------------------------------------------------------------------------------------------------------------------------------------------------------------------------------------------------------------------------------------------------------------------------------------------------------------------------------------------------------------------------------------------------------------------------------------------------------------------------------------------------------------------------------------------------------------------------------------------------------------------------------------------------------------------------------------------------------------------------------------------------------------------------------------------------------------------------------------------------------------------------------------------------------------------------------------------------------------------------------------------------------------------------------------------------------------------------------------------------------|
| 1) 아동주거빈곤<br>및 주거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세희(2010):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은 주거불안정과 모(부)불건강, 아동의 비 학업활동을 증가시키고, 비주거지출은 감소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힘</li> <li>• 임세희김희주(2019): 주거 개보수 또는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빈곤 상황이 개선된 아동가구의 경험을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li> <li>• 임세희김선숙(2016):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밝힘</li> <li>• 임세희박경하(2017):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li> <li>→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 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남</li> <li>• 임세희(2019): 주거권과 관련하여 아동주거빈곤의 규모 추정, 제도도적 개선과제를 도출</li> </ul>                                                                                                                                                                                                                                                                                                                                                                                             |
| 2) 노인/장애인<br>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오정(2012): 곧 다가올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노인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후 주거대안을 노후의 상황별 기준으로 제시함</li> <li>• 신용주(2012): 정부의 공식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의 특성, 주거실태 및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노인가구의 경제, 사회적 특성과 제도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li> <li>• 신하경, 이준민(2008): 고령화 시대 노인주거복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 지원정책방향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함</li> <li>• 안은희(2013): 미국과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 시설 중 대학연계 노인전용주거의 현황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국형 노인주거시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li> <li>• 강미나 외(2016): 고령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개조를 통한 Aging in Place 방안을 제시</li> <li>• 강미나 외(2010):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연구」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특성 및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를 추정하여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을 제시</li> <li>• 김정희 외(2010): 장애인의 주거선호 등을 파악</li> <li>• 천현숙 외(2013): 노인 가구 유형별로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 실태에 차이가 있으니 노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노인가구주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분석하며 정책을 제시함</li> <li>• 이호선 외(2017): 장애인의 주거권보장을 위해서 주거권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주거상황을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li> <li>• 임덕영 외(2019):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도출을 위해 시설의 정의,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 공급하는 주택의 조건을 명시</li> </ul> |

---

## ■ 부록2: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는<sup>1)</sup>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이다. 0세(임산부)부터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정 포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의 영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과정은 접수, 가정방문, 사례관리 계획,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실행의 순으로 이루어 지는데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변화를 확인한다.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인적정보 관리, 욕구 조사, 양육 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제공계획, 서비스 실행, 서비스 점검, 종결심사의 단계를 거친다(보건복지부 2020f, 52). 이 중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보는 인적정보관리와 욕구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인적정보 관리는 대상자의 주거상황, 가구유형, 가족사항, 소득현황, 대상자별 개별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보건복지부 2020f, 54-55). 욕구조사는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을 통해 표출된 욕구를 총체적,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서비스 개입의 근거를 확보한다.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의 10개 욕구영역에 대해 조사한다(보건복지부 2020f, 55). 인적정보 관리(보건복지부 2020d, 215-216)에서 주거사항으로 취합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부표 3> 참조).

욕구조사(보건복지부 2020f, 224-234)에서 조사하는 주거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5. 경제’, ‘5-01. 기초생활해결의 B-주거비 부족’, ‘D-난방비 부족’, ‘E-공과금 부족’을 조사한다(<부표 4> 참조).

---

1)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1\\_01.asp](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1_01.asp). 2021.1.21. 검색

부표 3 | 드림스타트 인적정보관리상 주거에 관한 사항

|         |                                                                                                                                                                                                                                                                                   |  |      |                                                                                                                                                                                                                                                                                       |  |
|---------|-----------------------------------------------------------------------------------------------------------------------------------------------------------------------------------------------------------------------------------------------------------------------------------|--|------|---------------------------------------------------------------------------------------------------------------------------------------------------------------------------------------------------------------------------------------------------------------------------------------|--|
| 주거형태    | <input type="checkbox"/> 단돈주택<br><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연립<br><input type="checkbox"/> 아파트<br><input type="checkbox"/> 무허가/옴막/비닐하우스<br><input type="checkbox"/> 여관/고시원/쪽방<br><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주거구분 |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주: )<br><input type="checkbox"/> 전세(전세금: 만원)<br><input type="checkbox"/> 월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br><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br><input type="checkbox"/> 무상임대<br><input type="checkbox"/> 시설/그룹홈( )<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주거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긴급 보수 필요 <input type="checkbox"/> 노후 <input type="checkbox"/> 폭염 취약 <input type="checkbox"/> 한파 취약 <input type="checkbox"/> 환기 부적절 <input type="checkbox"/> 협소한 공간 <input type="checkbox"/> 악취/불결                            |  |      |                                                                                                                                                                                                                                                                                       |  |
| 주거환경    | <input type="checkbox"/> 소음 <input type="checkbox"/> 유흥가 <input type="checkbox"/> 대로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거주기간 | (    년    )개월                                                                                                                                                                                                                                                                         |  |
| 가옥구조    | <input type="checkbox"/> 방( )개 <input type="checkbox"/> 거실 ( )개<br><input type="checkbox"/> 주방( )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 )개<br><input type="checkbox"/> 욕실( )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욕실겸용 ( )개                                                                   |  | 난방방법 | <input type="checkbox"/> 기름보일러 <input type="checkbox"/> 가스보일러<br><input type="checkbox"/> 연탄, 화목보일러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난방(아동<br><input type="checkbox"/> 전기판넬 (이)<br><input type="checkbox"/> 전기매트, 전기온돌 <input type="checkbox"/> 없음<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화장실양육환경 | <input type="checkbox"/> 공용 <input type="checkbox"/> 단독 //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 <input type="checkbox"/> 본채 <input type="checkbox"/> 별채<br>침실/놀이공간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협소 ) |  | 컴퓨터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

자료: 보건복지부 2020f, 215-216.

부표 4 | 드림스타트 욕구조사의 5. 경제 영역

| 욕구영역    | 주요현상     | 대상자 | 주요 원인 및 원인 제공자 |      |       |      |       |      | 주요 원인                    |
|---------|----------|-----|----------------|------|-------|------|-------|------|--------------------------|
|         |          |     | 제공자 1          | 원인 1 | 제공자 2 | 원인 2 | 제공자 3 | 원인 3 |                          |
| 5<br>경제 | A-식비 부족  |     |                |      |       |      |       |      | 신체질병/장애                  |
|         | B-주거비 부족 |     |                |      |       |      |       |      | 정신질환                     |
|         | C-의복비 부족 |     |                |      |       |      |       |      | 지적장애                     |
|         | D-난방비 부족 |     |                |      |       |      |       |      | 신체허약/노환                  |
|         | E-공과금 체납 |     |                |      |       |      |       |      | 무기력감/의지없음                |
|         | F-통신비 부족 |     |                |      |       |      |       |      | 교육·학습 부족                 |
|         | G-의료비 부족 |     |                |      |       |      |       |      | 상해<br>보호자의 부재(가출 및 사망 등) |

자료: 보건복지부 2020f, 224-234.

부표 5 | 드림스타트 욕구조사의 8. 생활환경 영역

| 욕구영역               |                      | 주요현상               | 대상<br>자 | 주요 원인 및 원인 제공자   |             |                  |             |                  |             | 주요 원인                                                            |                                                                                                 |
|--------------------|----------------------|--------------------|---------|------------------|-------------|------------------|-------------|------------------|-------------|------------------------------------------------------------------|-------------------------------------------------------------------------------------------------|
|                    |                      |                    |         | 제<br>공<br>자<br>1 | 원<br>인<br>1 | 제<br>공<br>자<br>2 | 원<br>인<br>2 | 제<br>공<br>자<br>3 | 원<br>인<br>3 |                                                                  |                                                                                                 |
| 8.생<br>활<br>환<br>경 | 주거<br>내부<br>환경<br>개선 | A-화장실 열악           |         |                  |             |                  |             |                  |             | 시설부족<br>시설낙후<br>시설위험<br>시설부재(장애인<br>편의시설 등)<br>쓰레기방치             |                                                                                                 |
|                    |                      | B-주방시설 열악          |         |                  |             |                  |             |                  |             |                                                                  |                                                                                                 |
|                    |                      | C-위생환경 열악          |         |                  |             |                  |             |                  |             |                                                                  |                                                                                                 |
|                    |                      | D-도배·장판 열악         |         |                  |             |                  |             |                  |             |                                                                  |                                                                                                 |
|                    |                      | E-냉난방 열악           |         |                  |             |                  |             |                  |             |                                                                  |                                                                                                 |
|                    |                      | F-전기/가스시설열악        |         |                  |             |                  |             |                  |             |                                                                  |                                                                                                 |
|                    |                      | G-상하수도시설열악         |         |                  |             |                  |             |                  |             |                                                                  |                                                                                                 |
|                    |                      | H-지붕노후(누수등)        |         |                  |             |                  |             |                  |             |                                                                  |                                                                                                 |
|                    |                      | I-벽/담 등 노후         |         |                  |             |                  |             |                  |             |                                                                  |                                                                                                 |
|                    |                      | J-주택내 이동곤란         |         |                  |             |                  |             |                  |             |                                                                  |                                                                                                 |
|                    |                      | K-사생활 공간부족         |         |                  |             |                  |             |                  |             |                                                                  |                                                                                                 |
|                    | 주거<br>외부<br>환경<br>개선 | A-학습환경 열악          |         |                  |             |                  |             |                  |             | 도서산간<br>지역<br>유흥업소<br>밀집지역<br>공장<br>밀집지역<br>자연재해<br>다발지역<br>우범지역 | 6.편의/기<br>발시설 낙<br>후·부재<br>7. 위험물<br>방치<br>8. 쓰레기<br>방치<br>9. 정보부족<br>10. 도시<br>계획(강제<br>철거·퇴거) |
|                    |                      | B-교통접근성 열악         |         |                  |             |                  |             |                  |             |                                                                  |                                                                                                 |
|                    |                      | C-상습침수             |         |                  |             |                  |             |                  |             |                                                                  |                                                                                                 |
|                    |                      | D-철거 등 공동수용        |         |                  |             |                  |             |                  |             |                                                                  |                                                                                                 |
|                    |                      | E-거주지 이전           |         |                  |             |                  |             |                  |             |                                                                  |                                                                                                 |
|                    |                      | F-화재·폭발 위험물에<br>노출 |         |                  |             |                  |             |                  |             |                                                                  |                                                                                                 |
|                    |                      | G-생활환경 열악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2020f, 224-234.

드림스타트에서는 욕구조사 후 아동의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을 사정한다.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은 드림스타트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 현재 및 미래의 발생 가능한 위기 요인 등 사례관리사의 전문가적 시각을 통해 종합적으로

---

파악하는 과정이다. 드림스타트 개입 여부, 서비스 개입 방향 및 수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보건복지부 2020f, 56). 즉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에서 나타난 위기에 따라 위기 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로 나눈다. 재사정 주기 또한 각각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f, 56-57). 양육 환경과 아동 발달에 쓰이는 사정도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영아용(0세~만 3세 미만), 유아용(만 3세 이상~7세미만), 취학아동용(만 7세 이상~13세 미만)으로 구분한다(보건복지부 2020f, 265). 주거빈곤 관련 항목은 ④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⑥ 안전 위협 환경 방치 ⑦ 아동건강 위생 불량 ⑨ 성장발달환경 미제공 부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f, 279-300).

양육환경 사정 도구에서 1, 2번 문항(① 아동학대, 방임, ② 가족갈등 및 배우자학대) 중 1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위기개입’ 사례로 분류한다. 8개 문항(③ 양육자 장애 및 심각한 질환 ④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⑤ 양육자 알코올·약물·도박중독 등 ⑥ 안전 위협 환경 방치 ⑦ 아동건강, 위생 불량 ⑦ 식사제공 미흡 ⑨ 성장발달환경 미제공 ⑩ 양육태도 미흡) 중 4개 이상인 경우 ‘집중사례관리’로 분류된다. 8개 항목(③~⑩) 중 1~3개가 확인되면 ‘일반 사례관리’로 판정된다(보건복지부 2020f, 272-273).

양육환경 사정 도구에서 주거관련 항목은 다음의 <부표 6>와 같다.

부표 6 |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사정도구에서 주거관련 항목

| 문항<br>(※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v 표 해주십시오) |                                                                                                                                                                                                                                                                                                                                                                                                                                                                                                                                                             | 없음 | 장후<br>또는<br>의심 | 있음 |
|---------------------------------|-------------------------------------------------------------------------------------------------------------------------------------------------------------------------------------------------------------------------------------------------------------------------------------------------------------------------------------------------------------------------------------------------------------------------------------------------------------------------------------------------------------------------------------------------------------|----|----------------|----|
| 4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 0  | 1              | 2  |
|                                 | <div>만 3세미만</div> <div>만 3세이상~7세미만</div> <div>만 7세이상~13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를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br/>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br/>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br/>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div>                                                                                                                                    |    |                |    |
| 6                               |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아이를 방치한다.                                                                                                                                                                                                                                                                                                                                                                                                                                                                                                                                | 0  | 1              | 2  |
|                                 | <div>만 3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집안에 기어 다니거나 보행기를 타다 낙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br/> <input type="checkbox"/> 집안에 아이가 움직일 때 다칠 수 있는 뾰족한 모서리들이 있다.                 </div> <div> <div>만 3세이상~7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집안에 아이가 걸어 다니나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br/> <input type="checkbox"/> 집안에 아이가 돌아다니다 다칠 수 있는 뾰족한 모서리들이 있다                 </div> </div> <div> <div>만 7세이상~13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집에서 누전 등이 위험 요소가 있다                 </div> </div>                                                                    |    |                |    |
| 7                               | 아이의 건강 및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0  | 1              | 2  |
|                                 | <div>만 3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아기의 체온조절에 위험이 될 만한 상황(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습도가 너무 높은)에서 조절해 주지 않는다.<br/>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먼지나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                 </div> <div> <div>만 3세이상~7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매우 덥거나, 추운 방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다.<br/>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먼지나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                 </div> </div> <div> <div>만 7세이상~13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매우 덥거나, 추운 방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다.<br/>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먼지나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                 </div> </div> |    |                |    |
| 8                               | 아이의 인지발달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환경, 자극,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 0  | 1              | 2  |
|                                 | <div>만 3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딸랑이, 악기 등 음을 내는 놀이감이나 시각, 청각을 자극할 만한 놀이감이 거의 없다.                 </div> <div> <div>만 3세이상~7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집에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 책, 한글 카드 등이 거의 없다.                 </div> </div> <div> <div>만 7세이상~13세미만</div> <div> <input type="checkbox"/>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놓인 공간이 없거나 매우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다.                 </div> </div>                                                                                                                                                                  |    |                |    |

자료: 보건복지부 2020f, 279-300.

대상아동에 대한 욕구 사정 후 사례회의를 거쳐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운다(보건복지부 2020f, 61). 서비스 제공계획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써 지역서비스 제공 관리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20f, 62).

주거복지는 드림스타트의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 중 맞춤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의 기본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면담이다(보건복지부 2020f, 71). 건강검진, 영양·안전·권리·학대·인터넷 중독·발달 및 양육 교육 등이 필수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20e, 72). 그 밖의 서비스는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주거복지관련 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에 속한다(보건복지부 2020f, 72).

맞춤형 서비스는 행복e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복e음의 자원 분류체계는 희망복지지원단과 공동 사용한다. 다음 표(<부표 7>)의 ‘예제’는 행복e음 상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공 서비스명이다(보건복지부 2020f, 241).

**부표 7 | 드림스타트 복지지원 분류체계상의 주거지원**

| 대분류      | 중분류              | 예제                                                                                   | 설명                                                                                                                         |
|----------|------------------|--------------------------------------------------------------------------------------|----------------------------------------------------------------------------------------------------------------------------|
| 2. 주거(3) | 2-1. 주거환경개선      | 집수리지원(일반), 화장실개보수지원, 지붕개량지원, 도색·도배·장판지원, 누수·방수지원, 보일러교체·수리, 전기공사·점검, 방충망설치·수리, 방역서비스 | -도배, 장판, 방역, 편의 시설 등의 마련 및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br>-주거시설 내·외부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일련의 직접 서비스 |
|          | 2-2.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 임시주거지원, 임대주택지원, 이사지원, 시설입소지원                                                         | 주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으로 주거지원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지원 서비스                                                                |
|          | 2-3. 주거관련 비용지원   | 전세비지원, 월세비지원, 이사비지원, 공인중개사수수료지원                                                      | 전·월세비와 같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중개수수료 등 주거관련 현금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 2020f, 241.

## ▣ 부록2: 일본 노인 지역포괄케어 사례

### 1)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대응 사례

단카이세대<sup>2)</sup>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향해,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각 지자체의 대응사례를 전국에 공유하여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협력을 바라며 선진적인 대응사례를 정리하고 있다.<sup>3)</sup>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중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의료, 개호예방 생활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다(황성준 외, 2019).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 케어의 요구가 증대되고,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존엄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주택 제공은 기본이며,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거주, 생활지원, 개호, 의료, 예방 등의 서비스가 30분 이내에 접근가능 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 (1) 돗토리시 난부초 사례

##### ○ 지역 개요

| 인구      | 고령자비율  |        |
|---------|--------|--------|
|         | 65세 이상 | 75세 이상 |
| 11,568명 | 31.05% | 17.57%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16.

돗토리현 남부에 위치한 난부초는 11,568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31.05%, 75세

2) 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이 많아서 연령별 인구 구성상 두드러지게 팽대한 세대를 일컬음.

3)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지역포괄케어 전반에 걸친 것 이외에 의료 · 개호 · 예방 · 생활지원 · 거주 등 특색 있는 분야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의 각 지자체가 참고할만한 대응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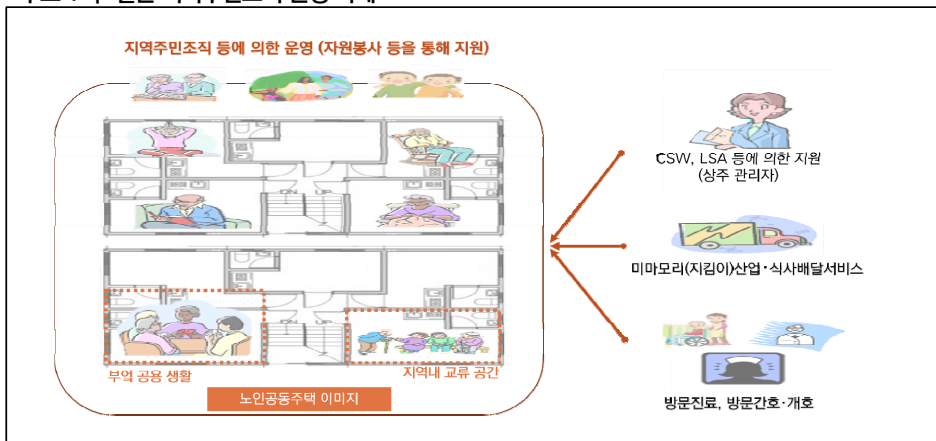
이상 17.57%로 고령자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독거 고령자의 증가와 개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지역유대 감소, 낮은 연금수급액 등의 당면 과제가 있는 지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 등이 지역주민과 연결되어 가능한 한 지역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모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기존자원인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저소득자의 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 ○ 사업개요

|      |                                                                                            |
|------|--------------------------------------------------------------------------------------------|
| 실시주체 | - 난부초·도자이초 지역부흥협의회                                                                         |
| 사업비  | - 시설개수비 10,000천엔/시설<br>- 운영비 2,000천엔/시설                                                    |
| 보조율  | - 시정촌 1/3, 현 2/3                                                                           |
| 실시시간 | - 2012년~2014년(3년간)                                                                         |
| 주요내용 | - 기존 민가·공공시설 등의 수리<br>- 의료·개호서비스는 방문간호, 방문개호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필요시 제공<br>- 이용자 부담은 가능한 한 염가로 억제함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16.

### 부도 1 | 일본 지역주민조직 운영 사례



주: CSW(certified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LSA(life support advisor): 생활지원 전문인

미마모리(지킴이) 산업:일본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율극복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과 상품들을 일컫는 말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16, 14.

평면도 <http://blog.daum.net/kng9900/22> 이용, 본문 그림 4-1 재인용

---

실시주체는 주민조직이고, 행정기관은 사업화운영을 지원한다. 이 지역은 단카이세대  
대의 고령화로 인해 독거나 두문불출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지역 내의 개호  
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거주시설은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돌봄요양형 의료시설밖에 없  
어, 경증의 고령자나 저소득자를 위한 거주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지역 내에 거주·주  
거·거처 만들기를 위한 지역주민 주체의 대응이 시작되어 행정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고령자 등의 주거를 확보하여 지역교류와 공동  
생활에 의한 안심, 기존자원의 활용을 통한 비용 효율화,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지원,  
LSA에 의한 수시 상담체제, 외부의 의료기관 및 개호서비스 사업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원은 지역주민의 대응에 맞는 모델사업을 난부초가 매칭하고 보조율은 시정촌  
1/3, 현 2/3이다. 보조대상 시설의 개수비는 10,000천엔/시설이고, 운영비는 2,000  
천엔/시설이다. 월세수입 약 5~6만엔 정도이다. 네트워크 및 사회자원은 LSA(Life  
Support Advisor), 의료기관, 개호서비스 사업소와의 연계체제, 자원봉사(배식, 지켜  
보기 등; 난부초 내 헬퍼 연수 수강자를 활용), 빈 집 등이다.

빈 집을 빌려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인건비, 주거비(월세) 억제, 저소득자에게도 이  
용하기 쉬운 요금설정이 가능하여, 연금 생활을 하는 고령자도 이용하기 쉽다. 지역교  
류 스페이스를 만들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독거였던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LSA에 의한 지원체제 코디네이터를 실시, 필요에 따라 의료·개호서  
비스나 배식 지켜보기 서비스 등 생활을 지원한다.

향후 이용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집의 연장선상에서 이용하게 하여 안심감을 조성  
하면서 장래에도 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자를 증가  
시켜, 면적확대나 정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면적의 정비를 위해 주민 자원봉사자  
나 빈집 수 확보 증가, 희망자에 대한 보급개발이 과제이다.

## (2)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요나고시 사례

해당 사례들은 특별양호노인홈을 중심으로 한 지역포괄케어 체제 만들기의 사례(사회복지법인 코호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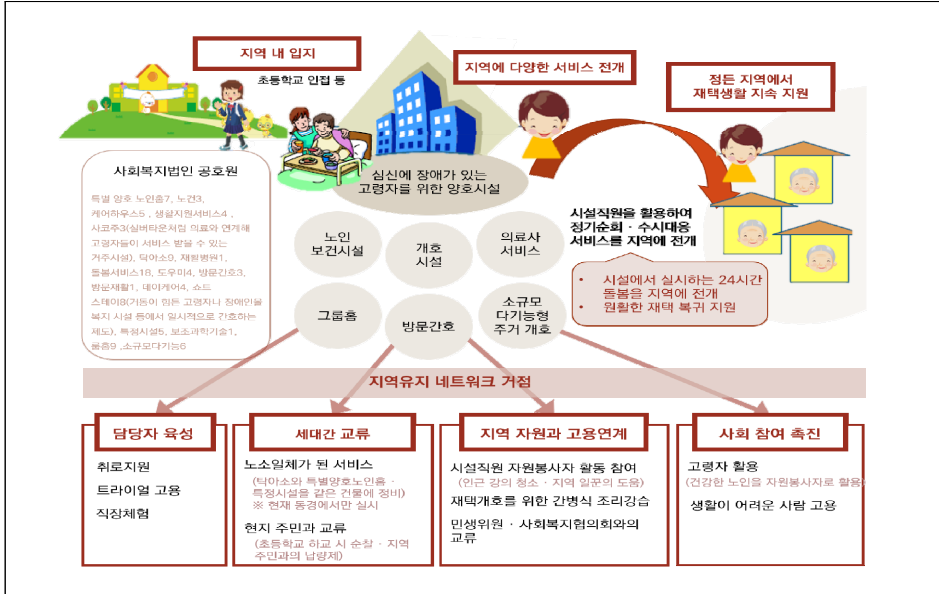
### ○ 지역개요

|         | 인구       | 고령자비율  |        |
|---------|----------|--------|--------|
|         |          | 65세 이상 | 75세 이상 |
| 사카이미나토시 | 36,004명  | 27.4%  | 14.4%  |
| 요나고시    | 150,019명 | 24.9%  | 12.9%  |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16.

〈사회복지법인 코호엔〉은 특별양호노인홈 7개소, 개호노인보건시설 3개소, 케어하우스 5개소, 생활지원하우스 4개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3개소, 보육소 9개소, 재활병원 1개소, 데이서비스 18개소, 헬퍼파견 4개소, 방문간호 4개소, 방문재활 1개소, 데이케어 4개소, 쇼트스테이 8개소, 특정시설 5개소, 복지용구 1개소, 그룹홈 9개소, 소규모다기능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설직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정기순회 및 수시대응서비스를 지역에 전개(시설에서 실시하는 24시간 개호를 지역에 전개, 재택복귀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지원)하고 있다.

부도 2 | 일본 지역복지 네트워크 거점 사례



출처 : 후생노동성 2016. 49. 본문 그림 4-2 재인용.

이 지역은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 개호서비스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고령자를 포함하는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대응이 곤란했고, 지역사회 자원도 부족하여 지역에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업전개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익숙한 지역에 개호 등 거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세대를 넘어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의한 지역포괄케어 거점이 될 수 있다. ② 특별양호노인홈의 기능을 지역에 전개한다. 시설 직원의 노하우, 맨파워 활용에 의한 24시간 정기순회, 수시대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한다(소규모다기능형 재택개호, 치매환자 그룹홈, 의료계 서비스 등을 병설하여 전개). ③ 상기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세대 담당자 육성을 고려한 지속성 있는 지역포괄 케어, 세대 간 교류, 민생위원이나 지역주민 등 지역의 다른 사회자원과 연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로서 거점 의식, 고령자뿐만 아니라 생활 빈곤자 등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고 있다.

해당 대응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와 인접하는 등 정든 지역에 개호 등의

---

거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일체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설기능을 지역에 전개하는 것에 의해 재택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 재택복귀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를 다방면에서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원이 적극적으로 지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세대 간 교류가 증가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된다. 민생위원이나 지역주민 등의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욕구를 시설 측과 주민 측이 상호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주민과 시설의 일체감이 짝트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향후 시설직원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에 뿌리내려가는 것을 기대하고, 지역의 사회자원으로 주민에게 인지되도록, 적극적으로 시설로부터 정보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가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도 종합적으로 지지하는 서비스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의료서비스 중심 제공모델 : 카시와시 도시재생기구<sup>4)</sup>(UR, Urban Renaissance Agency) 주택단지 운영

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카시와시로 구성된 ‘토요시키다이 지역고령사회 종합연구회’는 2010년 5월 13일 협정을 체결, 고령화율 40%를 넘고 있는 토요시키다이 단지 내에 ‘익숙한 장소에서 자신답게 늙어갈 수 있는 마을조성 : Aging in Place’의 제안과 실천을 목표로 [언제까지나 재택에서 안심할 수 있는 마을]과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는 마을]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회는 협정체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5월에 새롭게 2항목(‘생활지원 서비스에 관한 것’, ‘건강조성·개호예방에 관한 것’)을 추가하여 활동을 계속해왔다.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제까지의 성과나 향후 협정체결로부터

---

4) 都市再生機構, Urban Renaissance Agency

1955년에 설립된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으로, 공공주택 임대 사업을 주로 하는 곳으로 한국의 LH와 유사함. 일본 주택공단(1955)→주택도시정비공단(1981)→도시기반정비공단(1999)→현 명칭(2004). 현재는 기존의 물량을 개보수하여 살만한 형태로 유지하는 일에 주력(<https://namu.wiki/w/UR>, 2021.1.24.검색)

---

10년의 고비를 향한 계획 등을 반영한 변경 협정서를 체결하여 장수사회 마을 조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2018).

### ○ 지금까지의 5년(제1단계) + 3년간(제2단계)

[제1단계]는 고령자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에서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 토요시키 단지 내에 24시간 대응의 의료·간호·개호서비스 사업소를 병설한 거점형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을 유치하여 2014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비스를 병설한 주택의 정비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가시화와 지역 내 재택의료·간호·개호서비스의 거점이 되고 있다.

[제2단계]는 2015년 4월부터의 「제5기 카시와시 고령자 생기 플랜」에서 일상생활권역을 의식한 ‘거점형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유도, 저소득자의 거주지원(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월세 저렴화, 기존 자원의 활용 등) 방식을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병설을 필수로 하지 않고, 24시간 대응 재택의료·개호 거점’을 부족지역에 정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재택생활이 가능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카시와 지역의료연계 센터’의 기능강화 충실이나 다직종 연계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연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계발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향후 2018년 4월부터는 ‘제7기 고령자 생기 플랜’에서 일상생활권역별로 24시간 대응하는 ‘재택의료·개호서비스 거점’을 정비하고, 이 거점 정비를 통해 중·중도의 요개호자가 가능한 한 재택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sup>5)</sup>.

---

5) 일본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2001년 법률 제26호

### 3) 카시와시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sup>6)</sup>

2011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주거법) 개정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제도가 창설되었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은 동법에 근거하여 고령자 단독세대 또는 부부세대 등이 거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개호·의료와 연계하여 고령자의 안심을 지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구조의 주택이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기준이다.

|         |                                                                                                                                                                                                                                                                                                                                                                                                                                                                                                                                                                                                                       |
|---------|-----------------------------------------------------------------------------------------------------------------------------------------------------------------------------------------------------------------------------------------------------------------------------------------------------------------------------------------------------------------------------------------------------------------------------------------------------------------------------------------------------------------------------------------------------------------------------------------------------------------------|
| 입주자     | 1. 단독고령자 세대<br>2. 고령자와 동거자(배우자, 60세 이상의 친족,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친족)<br>※ 고령자는 60세 이상의 자 또는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자                                                                                                                                                                                                                                                                                                                                                                                                                                                                                                                |
| 규모·설비 등 | - 각 거주 부분의 바닥면적은 25평방미터 이상<br>※ 단 거실, 식당, 부엌, 기타 주택 부분 공동으로 이용, 충분한 면적의 경우 18평방미터 이상<br>- 각 거주부분에 부엌, 수세식 화장실, 수납설비, 세면설비, 욕실을 갖추는 것<br>※ 단 공용부분에서 공동 이용 적절한 부엌, 수납설비 또는 욕실을 갖추는 것<br>- 배리어프리 구조여야 함(단차 없는 바닥, 난간 설치, 복도 폭 확보 등)                                                                                                                                                                                                                                                                                                                                                                                      |
| 서비스     | - 최소한의 상황파악(안부확인) 서비스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br>1.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거택서비스사무소 등의 직원 또는 의사, 간호사, 개호복지사, 사회복지사, 개호지원전문원, 헬퍼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적어도 일종건물에 상주<br>2.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는 긴급통보시스템으로 대응함                                                                                                                                                                                                                                                                                                                                                                                                                                         |
| 계약관련    | - 서면계약, 거주부분이 명시된 계약일 것<br>- 권리금 및 기타 금전을 수령하지 않는 계약(보증금, 집세·서비스비 및 월세·서비스비의 선금금만 징수 가능)<br>- 입주자가 입원한 경우 또는 입주자의 심신의 상황이 변화한 것을 이유로 입주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거주부분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것<br>-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공사 완료 전에 보증금 및 집세 등의 선금금을 수령하지 않음<br>- 집세 등의 선금금을 수령하는 경우<br>① 집세 등의 선금금의 산정기준, 반환 의무금 금액의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br>②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주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계약해제까지의 일수*일당 계산한 집세 등)를 제외하고 집세 등의 선금금을 반환할 것<br>③ 반환의무를 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집세 등의 선금금에 대해 필요한 보전조치를 강구. 것<br>※ 국가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의 등록사업자 및 입주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임대차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사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입주계약서' 모형을 제시함 |
| 지도지침    | 카시와시는 고령자주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외에, 사업자가 등록에 있어서 배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지침을 개정함(2020.4.7.)                                                                                                                                                                                                                                                                                                                                                                                                                                                                                                                                       |
| 취급요령    | 카시와시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주거사업 등록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카시와시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 사업등록 사무 취급요령'을 개정(2020.4.7.)                                                                                                                                                                                                                                                                                                                                                                                                                                                                                                                       |

출처 : 카시와시 2017.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400/p046619.htm>.l 2020.6.1. 검색.

6) [https://ubin.krihs.re.kr/ubin/mobile/wurban/world\\_city\\_instance\\_view.php?no=1752](https://ubin.krihs.re.kr/ubin/mobile/wurban/world_city_instance_view.php?no=1752).  
2021.1.21.검색

부표 8 |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

양식 1. 상황파악 및 생활상담 서비스의 내용

|                                |                                  |                                                                                                                                                       |                          |                                                                                                                                                                     |                                    |    |   |
|--------------------------------|----------------------------------|-------------------------------------------------------------------------------------------------------------------------------------------------------|--------------------------|---------------------------------------------------------------------------------------------------------------------------------------------------------------------|------------------------------------|----|---|
| 제공형태                           |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 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제공<br><input type="checkbox"/> 위탁                                                                 |                          |                                                                                                                                                                     |                                    |    |   |
| 위탁<br>하는<br>경우<br>의<br>위탁<br>처 | 상호 명칭                            |                                                                                                                                                       |                          |                                                                                                                                                                     |                                    |    |   |
|                                | 주소<br>* 법인의 경우<br>주요 사업소의<br>소재지 | (우편번호)<br><br>(전화번호)                                                                                                                                  |                          |                                                                                                                                                                     |                                    |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등                 |                                  | <input type="checkbox"/> 의료법인<br><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br><input type="checkbox"/> 지정거택서비스 사업자<br><input type="checkbox"/>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                          | <input type="checkbox"/> 지정 거택개호지원 사업자<br><input type="checkbox"/> 지정 개호예방서비스 사업자<br><input type="checkbox"/> 지정 개호예방지원 사업자<br><input type="checkbox"/> 상기 이외의 법인 등 |                                    |    |   |
| 서비스 제공하는 자의<br>인원수             |                                  | <input type="checkbox"/> 의사                                                                                                                           | 인원                       | 인                                                                                                                                                                   |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     | 인원 | 인 |
|                                |                                  |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 인원                       | 인                                                                                                                                                                   | <input type="checkbox"/> 개호지원전문원   | 인원 | 인 |
|                                |                                  | <input type="checkbox"/> 준간호사                                                                                                                         | 인원                       | 인                                                                                                                                                                   | <input type="checkbox"/> 양성연수수료자   | 인원 | 인 |
|                                |                                  | <input type="checkbox"/> 개호복지사                                                                                                                        | 인원                       | 인                                                                                                                                                                   | <input type="checkbox"/> 상기 이외의 직원 | 인원 | 인 |
|                                |                                  |                                                                                                                                                       |                          | 합계                                                                                                                                                                  | 인원                                 | 인  |   |
| 상주하는 장소                        |                                  | <input type="checkbox"/> 동일부지 내<br><input type="checkbox"/> 인접 지역<br><input type="checkbox"/> 근접 지역<br>(소재지 : )                                       |                          |                                                                                                                                                                     |                                    |    |   |
| 상주하는 시간                        |                                  | 일 중                                                                                                                                                   | 시 분 ~ 시 분                | 인원 ( ) 인                                                                                                                                                            |                                    |    |   |
|                                |                                  | 상기 이외의 시간                                                                                                                                             | 시 분 ~ 시 분                | 인원 ( ) 인                                                                                                                                                            |                                    |    |   |
| 매일 1회 이상 상황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                                  |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로부터 거주지로 방문희망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지로 방문(근접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br><input type="checkbox"/> 매일 ( ) 회                                |                          |                                                                                                                                                                     |                                    |    |   |
| 긴급통보서비스의 내용                    |                                  | 제공시간                                                                                                                                                  | 상주일                      | 시 분 ~ 시 분                                                                                                                                                           |                                    |    |   |
|                                |                                  |                                                                                                                                                       | 상기 이외의 일                 | <input type="checkbox"/> 24시간                                                                                                                                       |                                    |    |   |
|                                |                                  | 통보방법                                                                                                                                                  |                          |                                                                                                                                                                     |                                    |    |   |
|                                |                                  | 통보처                                                                                                                                                   | 통보처로부터 재택까지 도착예정 시간 ( )분 |                                                                                                                                                                     |                                    |    |   |
| 비고                             |                                  |                                                                                                                                                       |                          |                                                                                                                                                                     |                                    |    |   |

주: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월정액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30일 이용의 금액을 기재.

자료: 일본 카시와시, "서비스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에 대하여"번역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400/p046619.html>, 2020.6.1. 검색)



부표 11 |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양식 4. 조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 서비스 내용)

|                                |                                          |                                                                                       |                                                                                                                        |   |             |
|--------------------------------|------------------------------------------|---------------------------------------------------------------------------------------|------------------------------------------------------------------------------------------------------------------------|---|-------------|
| 제공형태                           |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 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제공<br><input type="checkbox"/> 위탁 |                                                                                                                        |   |             |
| 위탁<br>하는<br>경우<br>의<br>위탁<br>처 | 상호 명칭                                    |                                                                                       |                                                                                                                        |   |             |
|                                | 주소<br>* 법인의 경우 주요 사<br>업소의 소재지           | (우편번호)<br>(전화번호)                                                                      |                                                                                                                        |   |             |
|                                | 주소<br>* 법인의 경우 본 업무<br>에 관한 사업소의 소<br>재지 | (우편번호)<br>(전화번호)                                                                      |                                                                                                                        |   |             |
| 제공방법                           |                                          | 제공일                                                                                   | <input type="checkbox"/> 365일 대응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             |
|                                |                                          | 내용                                                                                    | <input type="checkbox"/> 조리 <input type="checkbox"/> 세탁 <input type="checkbox"/> 청소<br><input type="checkbox"/> 그 외( ) |   |             |
| 서비스 제공의 대가<br>(계산액)            |                                          | 월액                                                                                    | 약                                                                                                                      | 엔 | 선불금<br>산정방법 |
|                                |                                          | 선불금                                                                                   | 약                                                                                                                      | 엔 |             |
| 비고                             |                                          |                                                                                       |                                                                                                                        |   |             |

자료: 일본 카시와시, “서비스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에 대하여”번역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400/p046619.html>, 2020.6.1. 검색)

부표 12 |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양식 5. 건강유지증진 서비스의 내용)

|                                |                                |                                                                                       |                                                                                                                                                                  |   |             |
|--------------------------------|--------------------------------|---------------------------------------------------------------------------------------|------------------------------------------------------------------------------------------------------------------------------------------------------------------|---|-------------|
| 제공형태                           |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 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제공<br><input type="checkbox"/> 위탁 |                                                                                                                                                                  |   |             |
| 위탁<br>하는<br>경우<br>의<br>위탁<br>처 | 상호 명칭                          |                                                                                       |                                                                                                                                                                  |   |             |
|                                | 주소<br>* 법인의 경우 주요 사<br>업소의 소재지 | (우편번호)<br>(전화번호)                                                                      |                                                                                                                                                                  |   |             |
|                                | 주소<br>* 법인은 본 업무<br>관련 사업소지    | (우편번호)<br>(전화번호)                                                                      |                                                                                                                                                                  |   |             |
| 제공방법                           |                                | 제공일                                                                                   | <input type="checkbox"/> 365일 대응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             |
|                                |                                | 내용                                                                                    | <input type="checkbox"/> 건강상담 <input type="checkbox"/> 혈압 등 측정 <input type="checkbox"/> 정기검진 <input type="checkbox"/> 통원 등 동행<br><input type="checkbox"/> 그 외( ) |   |             |
| 서비스 제공의 대가<br>(계산액)            |                                | 월액                                                                                    | 약                                                                                                                                                                | 엔 | 선불금<br>산정방법 |
|                                |                                | 선불금                                                                                   | 약                                                                                                                                                                | 엔 |             |
| 비고                             |                                |                                                                                       |                                                                                                                                                                  |   |             |

자료: 일본 카시와시, “서비스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에 대하여”번역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400/p046619.html>, 2020.6.1. 검색)

부표 13 | 일본 카시와시 고령자주택 서비스 조사

양식 6. 그 외 서비스의 내용(해당하는 경우만)

|                                |                                |                                                                                       |                                                                                       |   |             |
|--------------------------------|--------------------------------|---------------------------------------------------------------------------------------|---------------------------------------------------------------------------------------|---|-------------|
| 제공형태                           |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 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제공<br><input type="checkbox"/> 위탁 |                                                                                       |   |             |
| 위탁<br>하는<br>경우<br>의<br>위탁<br>처 | 상호 명칭                          |                                                                                       |                                                                                       |   |             |
|                                | 주소<br>* 법인의 경우 주요 사<br>업소의 소재지 | (우편번호)<br>(전화번호)                                                                      |                                                                                       |   |             |
|                                | 주소<br>* 법인은 본 업무 관련<br>사업소지    | (우편번호)<br>(전화번호)                                                                      |                                                                                       |   |             |
| 제공방법                           |                                | 제공일                                                                                   | <input type="checkbox"/> 365일 대응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             |
|                                |                                | 내용                                                                                    |                                                                                       |   |             |
| 서비스 제공의 대가<br>(계산액)            |                                | 월액                                                                                    | 약                                                                                     | 엔 | 선불금<br>산정방법 |
|                                |                                | 선불금                                                                                   | 약                                                                                     | 엔 |             |
| 비고                             |                                |                                                                                       |                                                                                       |   |             |

자료: 일본 카시와시, “서비스제공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에 대하여”번역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40400/p046619.html, 2020.6.1. 검색)

## 부록 4:민간 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부표 14 | 민간영역 사회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목록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공-민간영역의 연계 시스템)

| 시스템명                              | 대상                          | 기능       | 소관부처<br>및 기관 | 내용                                             | 서비스<br>형태 |
|-----------------------------------|-----------------------------|----------|--------------|------------------------------------------------|-----------|
| 보육통합<br>정보시스템                     | 어린이집<br>(지자체-민간)            | 돌봄       |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 전반을 관장하는<br>시스템으로 전반적 업무 지원               | 이용        |
| 예방접종<br>통합관리시스<br>템               | 지자체, 의료기관<br>(지자체-민간)       | 건강       | 보건복지부        | 예방접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br>관리                       | 이용        |
| 드림스타트<br>사례관리 사업                  | 드림스타트센터<br>(지자체<br>희망복지지원단) | 업무<br>지원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br>통합서비스를 제공                     | 이용        |
| 아동자립<br>지원시스템                     | 아동복지시설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보호,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br>자립지원업무 지원                  | 이용        |
| e-아동<br>행복지원시스<br>템               | 아동보호전문기관                    | 업무<br>지원 | 보건복지부        | 위기가동 보호 및 예방활동 관리                              | 이용        |
| 가정위탁지원시<br>스템                     | 가정위탁지원센터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 세대<br>위탁현황 등의 업무 지원              | 이용        |
| 입양정보통합관<br>리시스템                   | 아동권리보장원                     | 정보<br>관리 | 보건복지부        | 입양정보에 대한 통합체계 구축                               | 이용        |
| 지역아동센터중<br>앙지원단홈페<br>이지/평가시스<br>템 | 지역아동센터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적인 관리와<br>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 이용        |
| 자활정보시스템<br>(자활근로)                 | 지역자활센터                      | 통합<br>지원 | 보건복지부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및 매출액<br>집행 현황 관리 지원             | 이용        |
| 자활정보시스템<br>(자산형성)                 | 지역자활센터                      | 통합<br>지원 | 보건복지부        | 자활 수요증가 대응 및 안정적 인프라<br>구축                     | 이용        |
| 취약노인지원시<br>스템                     | 지자체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응급 안전알림, 노인돌봄관리,<br>노인학대예방 등 취약노인을 위한<br>지원시스템 | 이용        |

|                             |                             |                |                                 |                                               |    |
|-----------------------------|-----------------------------|----------------|---------------------------------|-----------------------------------------------|----|
| 보건복지<br>상담시스템               | 129 보건복지<br>상담센터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의<br>상담업무지원                       | 이용 |
| 노후준비<br>정보시스템               | 국민연금공단                      | 행정<br>지원       | 국민연금<br>공단                      |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내역,<br>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br>정보시스템   | 이용 |
| 노인일자리<br>통합정보<br>시스템        | 지자체/<br>노인복지시설              | 통합<br>지원       | 한국노인<br>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br>유형별 업무지원시스템              | 이용 |
| 장기요양<br>통합정보<br>시스템         | 건강보험공단                      | 돌봄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br>제공 및 관리시스템               | 이용 |
| 치매안심<br>통합관리<br>시스템         | 치매안심센터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국가 치매관련 사업 관리                            | 이용 |
| 100세누리<br>시니어<br>사회활동<br>포털 | 시니어클럽<br>(지자체-민간)           | 통합<br>지원       | 한국노인<br>인력개발원                   | 온라인 정보 제공을 통한<br>사회참여정보 접근성 강화                | 이용 |
| 장애인<br>일자리<br>전산시스템         | 장애인개발원<br>(지자체-민간)          | 고용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등 종합적인<br>현황정보 제공                 | 이용 |
| 직업재활<br>통합관리<br>전산시스템       | 장애인개발원<br>(지자체-민간)          | 고용<br>교육<br>행정 | 보건복지부                           | 직업재활서비스 전반에 대한<br>사례관리 제공                     | 이용 |
| e하늘<br>장사정보<br>시스템          | 장례문화진흥원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화장시설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br>예약편의 증진                  | 이용 |
| 사회서비스<br>전자바우처<br>시스템       | 사회서비스<br>제공기관<br>(지자체-민간)   | 돌봄             | 보건복지부,<br>여성가족부,<br>산업통상<br>자원부 | 바우처 관련 접근, 승인, 결제 등의<br>종합적 정보 제공             | 이용 |
| 지역보건<br>의료정보<br>시스템<br>(DW) | 보건소                         | 건강             | 보건복지부                           | 보건행정, 보건진료, 보건사업,<br>보건진료소, 실적, 통계 등 정보<br>제공 | 이용 |
| 전자바우처<br>통계분석<br>시스템(DW)    | 지자체/<br>바우처 제공기관<br>(공공-민간)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바우처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 이용 |
| 정신건강<br>사례관리<br>시스템         | 지역정신보건센터<br>(지자체-민간)        | 통합<br>지원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 정보를<br>통합 관리                     | 이용 |

|                       |                            |          |             |                                     |           |
|-----------------------|----------------------------|----------|-------------|-------------------------------------|-----------|
| 지역보건<br>의료정보<br>시스템   | 보건소<br>(지자체-민간)            | 건강       | 보건복지부       | 전국 보건기관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br>정보시스템        | 이용        |
| CYS-Net<br>종합정보망      | 청소년통합<br>지원위원회<br>(지자체-민간) | 상담       | 여성가족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br>위기청소년 사례 관리        | 이용        |
| 청소년<br>사이버<br>상담센터    | 청소년<br>사이버센터               | 상담       |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의 효율적인 사이버상담<br>운영 지원          | 이용        |
| 통합문화<br>이용권<br>누리집    | 지자체                        | 문화       | 문화체육<br>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업무 지원 및<br>실적관리          | 이용        |
| 주거급여<br>정보시스템         | LH주택공사<br>(지자체-공공기관)       | 행정<br>지원 |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정보 통합 관리 및<br>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원     | 이용        |
| 위(Wee)<br>종합정보<br>시스템 | 학교<br>(지자체-학교)             | 행정<br>지원 | 교육부         | 위(Wee)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br>업무 지원       | 이용        |
| 국가아동<br>학대정보<br>시스템   | 아동보호전문센터                   | 사례<br>관리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 생활        |
| 청소년쉼터<br>행정정보<br>시스템  | 청소년쉼터<br>(지자체-민간)          | 상담       | 여성가족부       | 전국 청소년쉼터의 가출청소년<br>사례관리 정보 입력       | 생활        |
| 사회복지<br>시설정보<br>시스템   | 사회복지시설<br>(지자체-민간)         | 행정<br>지원 | 보건복지부       | 행정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한<br>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이용/<br>생활 |

자료: 함영진 외 2019. 재구성

## ■ 부록 5: 설문지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처간 정책연계 강화 방안에 관한 설문지(실무자용)

2020. 6. 11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처간 정책연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계·협력의 병목지점과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공사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조사의 분석결과는 오로지 순수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연구주관기관: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책임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 연 락 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EMAIL: mnkang@krihs.re.kr

-TEL: 044-960-0349

한국리서치 이해민 부장 02-2100-1216

## I 응답자 일반 특성

### 1-1. 귀하의 소속은?

중앙부처: ( )부, ( )과  
 지자체: ( )도/시, ( )과/팀  
 공사: 기관명 ( ),

### 1-2.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주로 어느 기관과 사업/업무/정보 등의 연계 혹은 협업을 추진하십니까(중복응답)?

- ① 중앙부처      ② 공사(LH, SH, 건강보험공단 등)      ③ 광역자치단체  
 ④ 기초자치단체      ⑤ 민간(NGO, 위탁 등)      ⑥ 기타( )

### 1-3. 다음 중 귀하가 참여하셨던 분야에 모두 ✓를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

| 분야              | 참여 여부 | 참고. 사업명(예시)                                                                                                                                        |
|-----------------|-------|----------------------------------------------------------------------------------------------------------------------------------------------------|
|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       | 영구/국민/5. 10. 50년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지원주택, 복지주택                                                                                          |
| 주거급여 관련         |       | 주거급여                                                                                                                                               |
| 주택금융 관련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보증, 버팀목대출보증, 보증자리론,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
| 주택개량 관련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집수리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 |
| 특정 대상 주거지원      |       | 긴급복지 주거지원, 비주택(쪽방·고시원·여인숙 등) 거주가구 주거지원, 노숙인 주거지원, 노인 주거지원, 장애인 주거지원, 아동가구 주거지원,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청년 주거지원, 통합돌봄관련                                      |
| 주택관련 정보 생산 및 관리 |       | data 생산 및 관리, 행복e음, 세우로 등                                                                                                                          |
| 아동 혹은 청소년 관련 복지 |       | 아동 혹은 청소년 관련 복지                                                                                                                                    |
| 노인 혹은 장애인 관련 복지 |       | 노인 혹은 장애인 관련 복지                                                                                                                                    |
| 기타              |       | ( )                                                                                                                                                |

## II

###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연계 · 협력의 필요성과 실태에 관한 질문

2-1. (주거지원 사업단계별 연계 · 협력의 필요성) 귀하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업무수행중에 사업단계별 연계 ·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를 표시해 주십시오.

| 사업 추진 단계     | 연계의 필요성                                             |
|--------------|-----------------------------------------------------|
| 사업 발굴 및 기획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사업 실행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2-2. (주거지원 분야별 연계 · 협력의 필요성) 주거지원 관련 분야에서 연계 ·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를 표시해 주십시오.

| 분야              | 연계의 필요성                                             |
|-----------------|-----------------------------------------------------|
|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주택개량 관련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주거급여 관련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주택금융 관련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주택관련 정보 생산 및 관리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아동, 청소년 주거지원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노인, 장애인 주거지원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2-3. (주거지원 분야별 연계·협력의 실태) 주거지원 관련 분야에서 현재 연계·협력의 정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요.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계가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를 표시해 주십시오.

| 분야              | 현재 연계의 실태                                               |
|-----------------|---------------------------------------------------------|
|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 (전혀 안되고 있음) 1----2----3----4----5----6----7 (매우 잘되고 있음) |
| 주택개량 관련         | (전혀 안되고 있음) 1----2----3----4----5----6----7 (매우 잘되고 있음) |
| 주거급여 관련         | (전혀 안되고 있음) 1----2----3----4----5----6----7 (매우 잘되고 있음) |
| 주택금융 관련         | (전혀 안되고 있음) 1----2----3----4----5----6----7 (매우 잘되고 있음) |
| 주택관련 정보 생산 및 관리 | (전혀 안되고 있음) 1----2----3----4----5----6----7 (매우 잘되고 있음) |
| 아동, 청소년 주거지원    | (전혀 안되고 있음) 1----2----3----4----5----6----7 (매우 잘되고 있음) |
| 노인, 장애인 주거지원    | (전혀 안되고 있음) 1----2----3----4----5----6----7 (매우 잘되고 있음) |

2-4. (주된 연계·협력 방식) 주거지원 관련 분야에서 부처(기관)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협력의 방식에 대하여 빈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세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     ,     )

- ① 부처간 실무협의 (전화, 이메일)
- ② 실무회의
- ③ 정보공유 및 열람(정보시스템 공유)
- ④ 재무적 연계(재정연계활용)
- ⑤ 법령 및 조례 등 공동 마련
- ⑥ 조직적 연계(TF, 위원회, 협의체, 전문관 등)

2-5. (연계·협력 성과)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계·협력의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를 표시해 주십시오.

| 분야        |                | 연계의 성과                                       |
|-----------|----------------|----------------------------------------------|
| 효율성<br>제고 | 예산측면           | (전혀 높지 않음) 1---2---3---4---5---6---7 (매우 높음) |
|           | 시간절감           | (전혀 높지 않음) 1---2---3---4---5---6---7 (매우 높음) |
|           | 중복수해 해소        | (전혀 높지 않음) 1---2---3---4---5---6---7 (매우 높음) |
| 효과성<br>제고 | 사각지대 해소        | (전혀 높지 않음) 1---2---3---4---5---6---7 (매우 높음) |
|           | 주거 수준 질적<br>제고 | (전혀 높지 않음) 1---2---3---4---5---6---7 (매우 높음) |
|           | 국민체감도 제고       | (전혀 높지 않음) 1---2---3---4---5---6---7 (매우 높음) |
| 기타( )     |                | (전혀 높지 않음) 1---2---3---4---5---6---7 (매우 높음) |

### Ⅲ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3-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연계·협력 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분야                          | 연계추진시 애로사항                                     |
|-----------------------------|------------------------------------------------|
| 잔업 및 부가적인 일이 많아짐            | (전혀 그렇지 않다) 1---2---3---4---5---6---7 (매우 그렇다) |
| 어느 곳과 연계가 가능한지 알지<br>못함     | (전혀 그렇지 않다) 1---2---3---4---5---6---7 (매우 그렇다) |
| 성과의 귀속문제 및 인센티브가<br>충분하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다) 1---2---3---4---5---6---7 (매우 그렇다) |
| 예산배정이 어려움                   | (전혀 그렇지 않다) 1---2---3---4---5---6---7 (매우 그렇다) |
| 정보시스템 접근이 어려워서<br>불가능       | (전혀 그렇지 않다) 1---2---3---4---5---6---7 (매우 그렇다) |
| 기타( )                       | (전혀 그렇지 않다) 1---2---3---4---5---6---7 (매우 그렇다) |

3-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연계·협력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연계를 위한 항목           |                                                     |
|---------------------|-----------------------------------------------------|
| 연계 협력 업무 단순화 및 매뉴얼화 | (전혀 중요치 않음) 1----2----3----4----5----6----7 (매우 중요) |
| 교육·홍보               | (전혀 중요치 않음) 1----2----3----4----5----6----7 (매우 중요) |
| 개인 보상제도 마련          | (전혀 중요치 않음) 1----2----3----4----5----6----7 (매우 중요) |
| 예산배정                | (전혀 중요치 않음) 1----2----3----4----5----6----7 (매우 중요) |
| 정보시스템 구축            | (전혀 중요치 않음) 1----2----3----4----5----6----7 (매우 중요) |
| 기타( )               | (전혀 중요치 않음) 1----2----3----4----5----6----7 (매우 중요) |

3-3. 연계·협력 추진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3가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① 교육·공모·워크숍 등을 통하여 연계사업 발굴
- ② 공동기획
- ③ 조직적 연계(TF, 위원회, 협의체, 전문관 등)
- ④ 정보공유 및 열람(정보시스템 공유)
- ⑤ 재무적 연계(재정연계활용)
- ⑥ 법령 및 조례 등 개편
- ⑦ 교육·공모·워크숍 등을 통하여 연계사업 발굴
- ⑧ 기타( )

3-4. 주거관련 업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선관련 인식

| 분야                   | 정보시스템의 활용현황 및 인식실태                               |
|----------------------|--------------------------------------------------|
| 정보시스템의 필요정도          | (매우 불필요) 1----2----3----4----5----6----7 (매우 필요) |
| 현재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편의성   | (매우 불편) 1----2----3----4----5----6----7 (매우 편리함) |
| 현재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개선필요도 | (매우 불필요) 1----2----3----4----5----6----7 (매우 필요) |

### 3-5. 업무를 처리하는데 데이터 생산과 활용상 개선희망 사항

| 분야             | 개선의 필요성                                             |
|----------------|-----------------------------------------------------|
| 데이터 양식의 표준화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연계 키변수 개발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자료의 접근권한 개선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공공-민간 간 데이터 연계 | (전혀 필요치 않음) 1----2----3----4----5----6----7 (매우 필요) |

※ 키 변수(Key variable) : 두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연결시킬 때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매개변수. 일반적으로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비정형화된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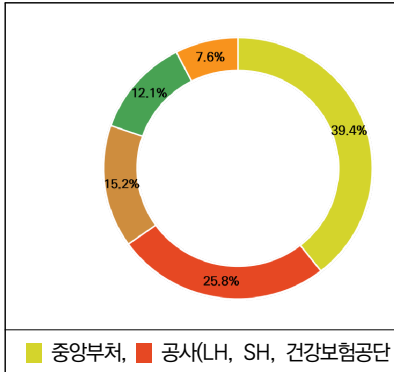
Definition: A variable in common between two datasets, which may therefore be used for linking records between them. A key variable can either be a formal identifier or a quasiidentifier. Key variable Definition -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 3-6. 기타 정책 개선방안](https://www.google.com/search?biw=1920&bih=969&ei=o7DdXtWNJI36wQPw87KwDg&q=key+variable&oq=key+variable&gs_lcp=CgZwc3ktYWIQAziCCAAyAggAMgIIADICCAyAggAMgIIADIECAAQHjIECAAQHjIECAAQHjIECAAQCoFCAAQsQM6BQgAEIMBOgQIABBDogYIABAKEANQxfsCWKKiA2DqowNoBXAAeAGAAy4DiAHWEJIBCDauMTUuMC4xmAEAoAEBqgEHZ3dzLXdperABAA&scient=psy-ab&ved=0ahUKEwiV67DEo_HpAhUNfXAKHfC5DOYQ4dUDCAw&uact=5, 200608. 12:33 검색</a></p>
</div>
<div data-bbox=)

## 부록 6: 설문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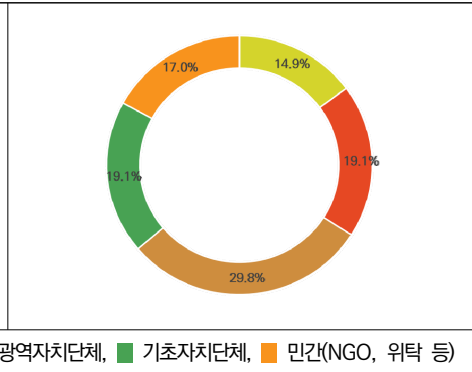
부도 3 | 중앙부처의 협업기관

(단위: %)



부도 4 | 지자체의 협업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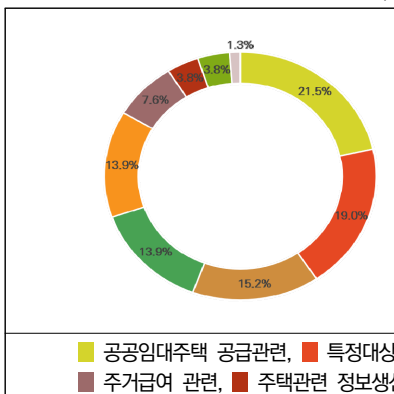
(단위: %)



주: 복수응답결과를 100% 기준으로 조정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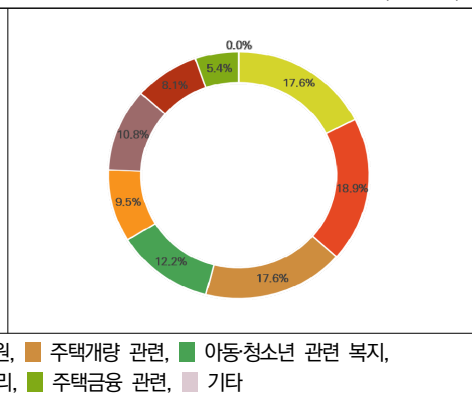
부도 5 | 중앙부처 및 공사의 협업사업

(단위: %)



부도 6 | 지자체의 협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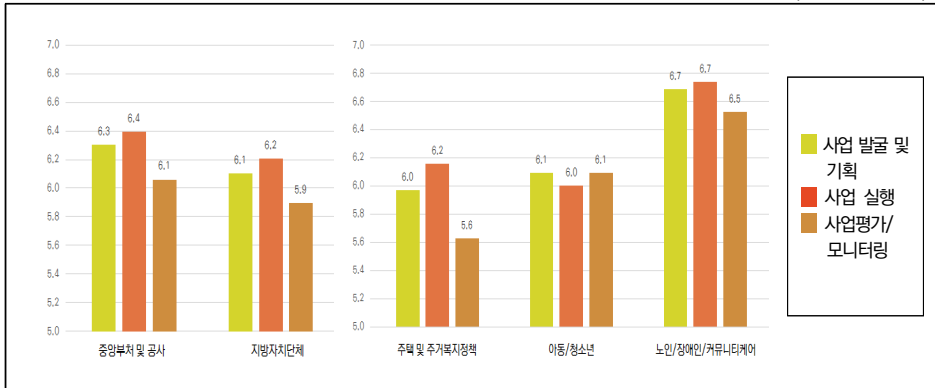
(단위: %)



주: 복수응답결과를 100% 기준으로 조정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도 7 | 사업단계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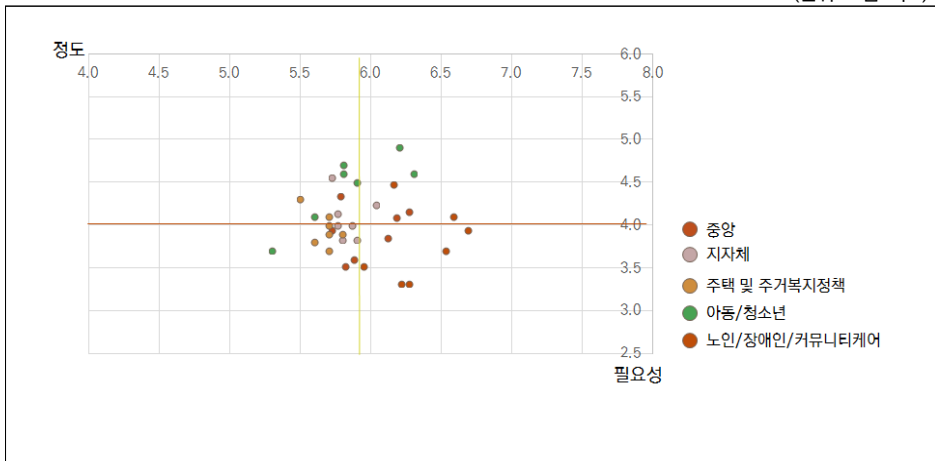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도 8 | 부처 및 업무별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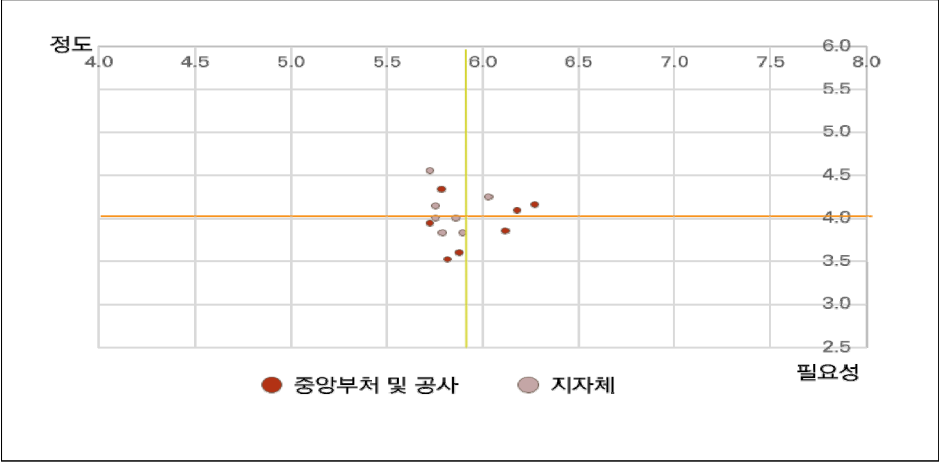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9 | 중앙부처 및 공사, 지자체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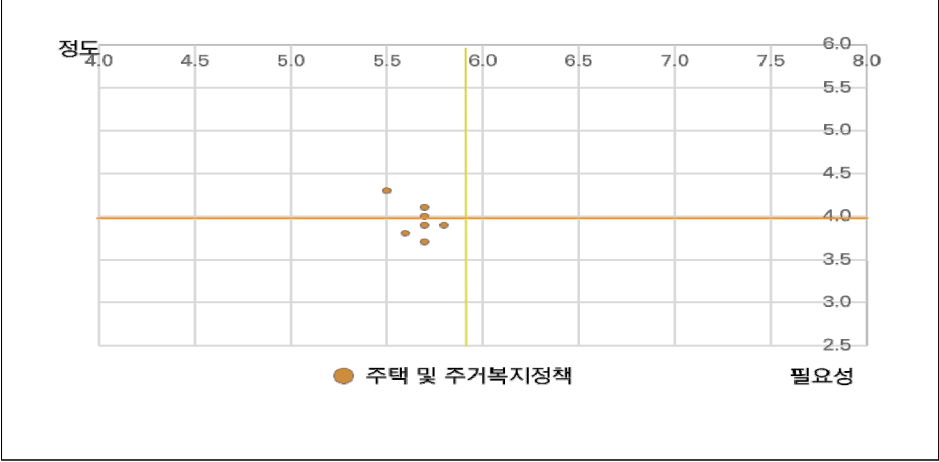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10 |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담당자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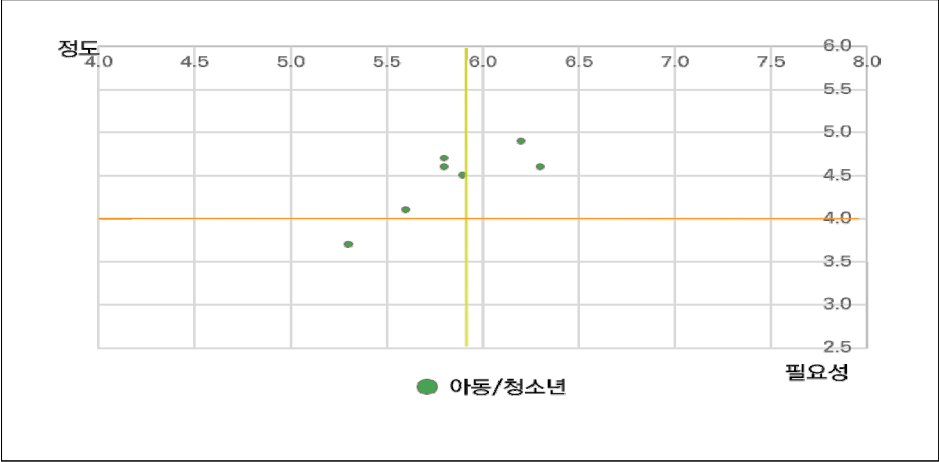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11 | 아동·청소년정책 담당자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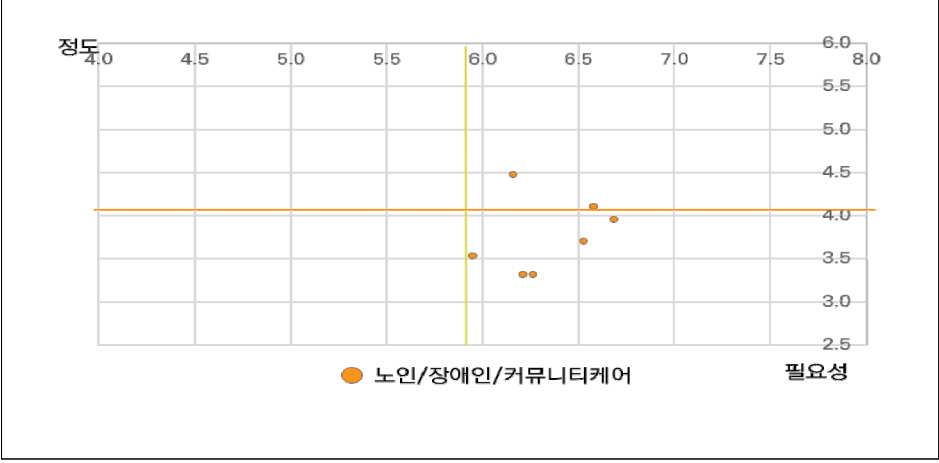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12 | 노인·장애인·커뮤니티 케어 담당자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정도

(단위: 7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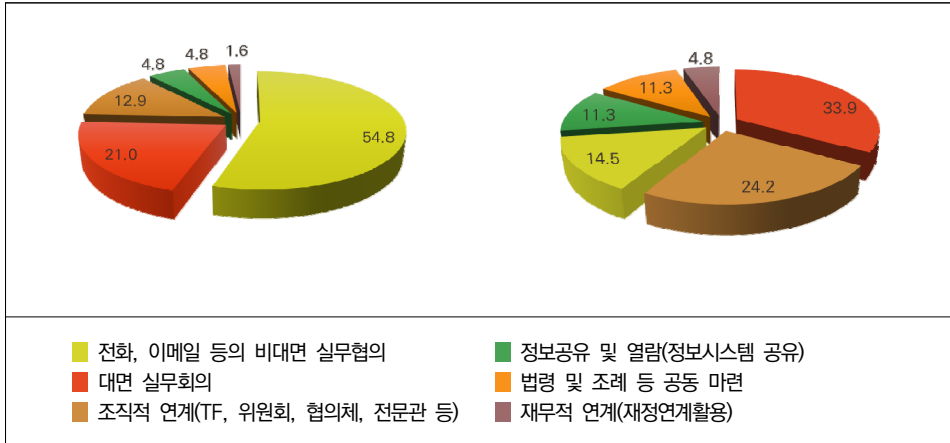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13 | 현재 연계 협력 방법 (1순위)

(단위: %)

부도 14 | 현재 연계 협력 방법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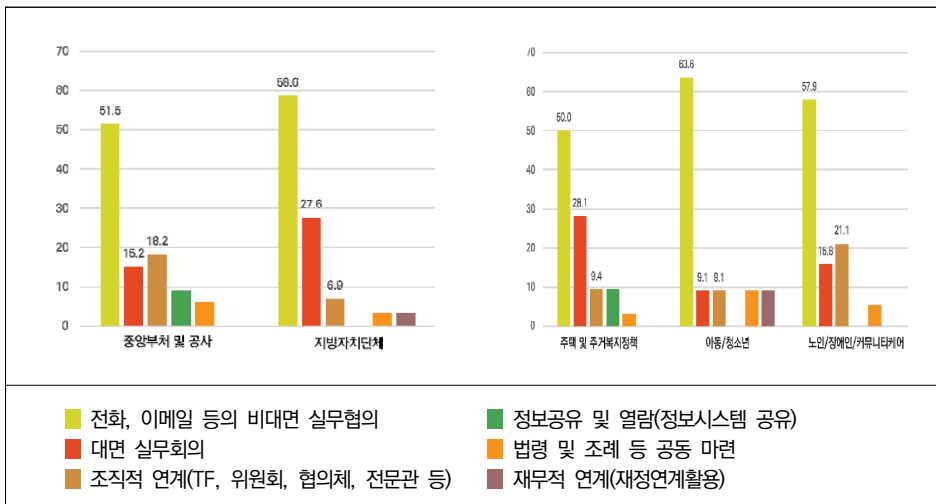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15 |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현재 연계 협력 방법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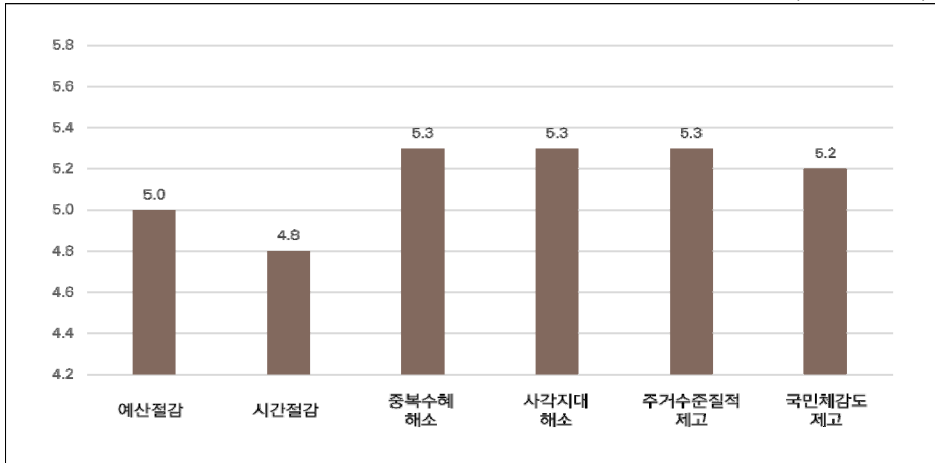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도 16 | 현재 연계 협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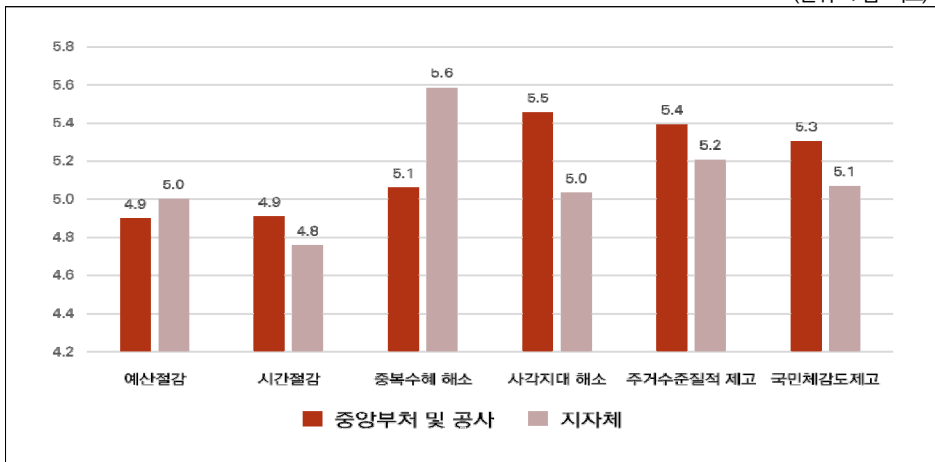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도 17 | 중앙부처 및 공사, 지자체의 연계 협력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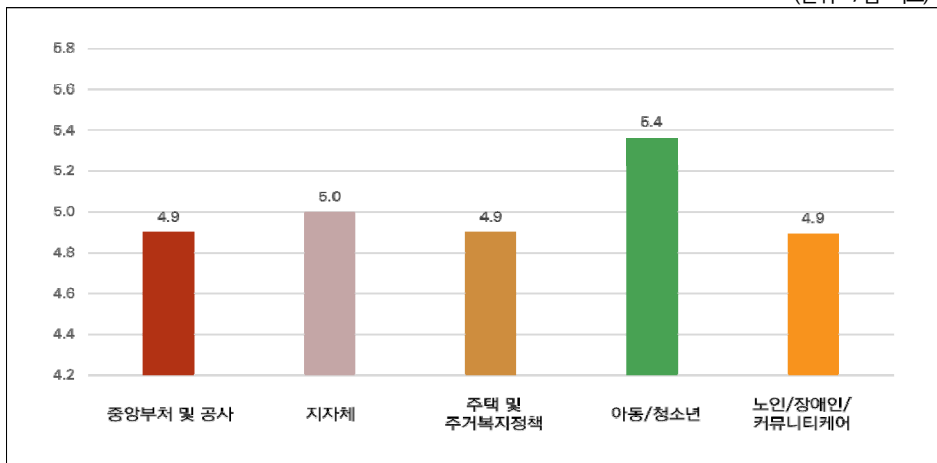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도 18 |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예산절감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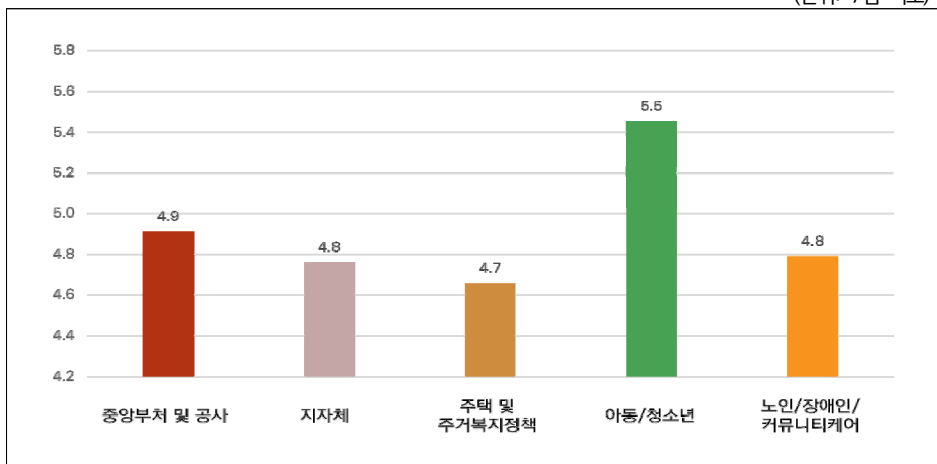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도 19 |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시간절감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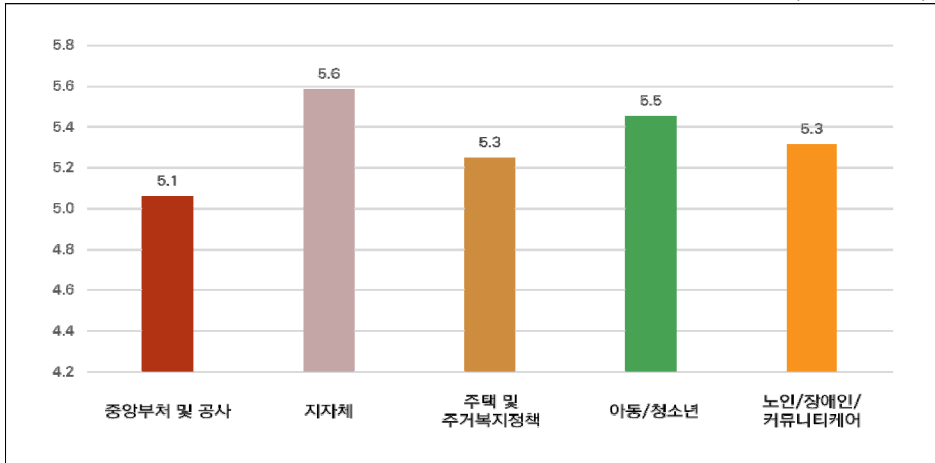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20 |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중복수혜 해소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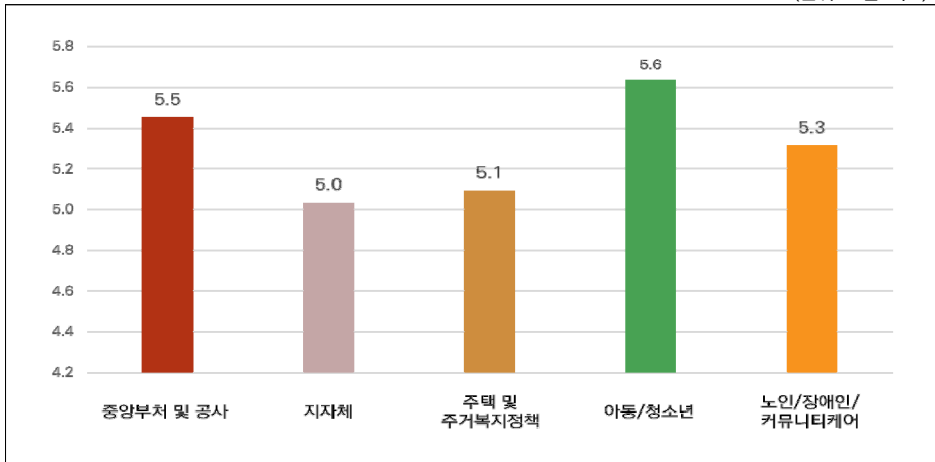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21 |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사각지대 해소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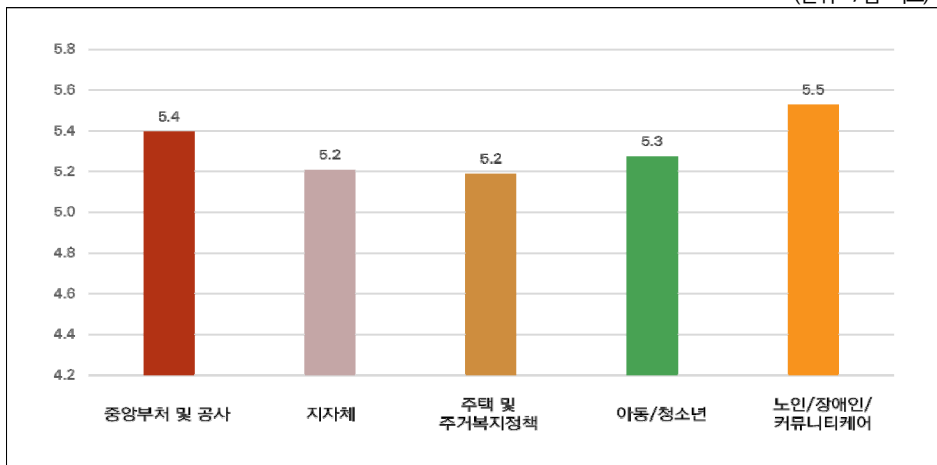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22 |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주거수준 질적 제고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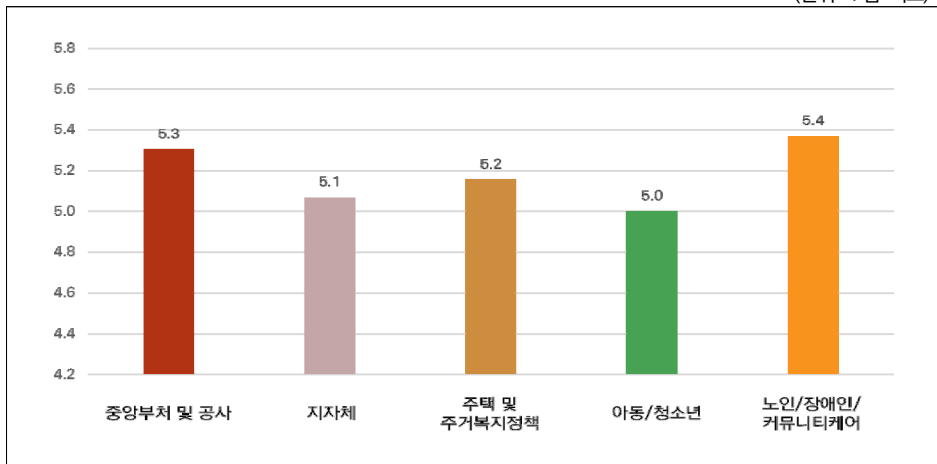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23 |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국민체감도 제고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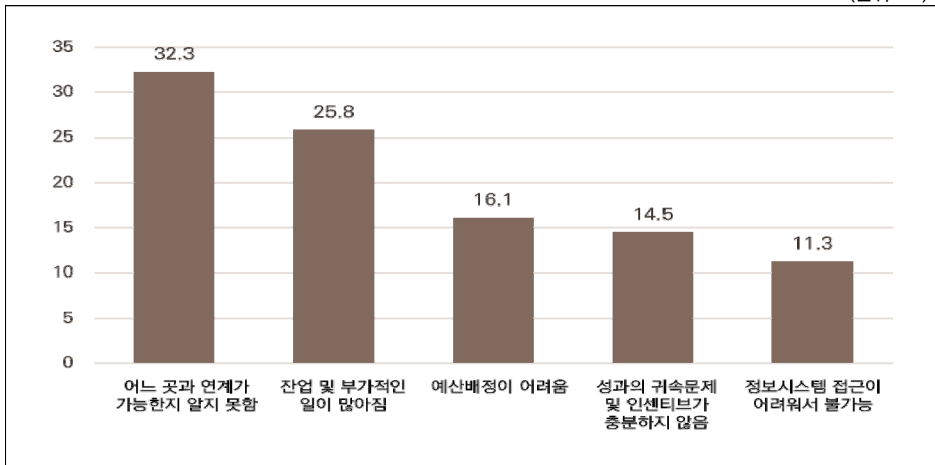
(단위: 7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24 | 연계 협력시 어려운 점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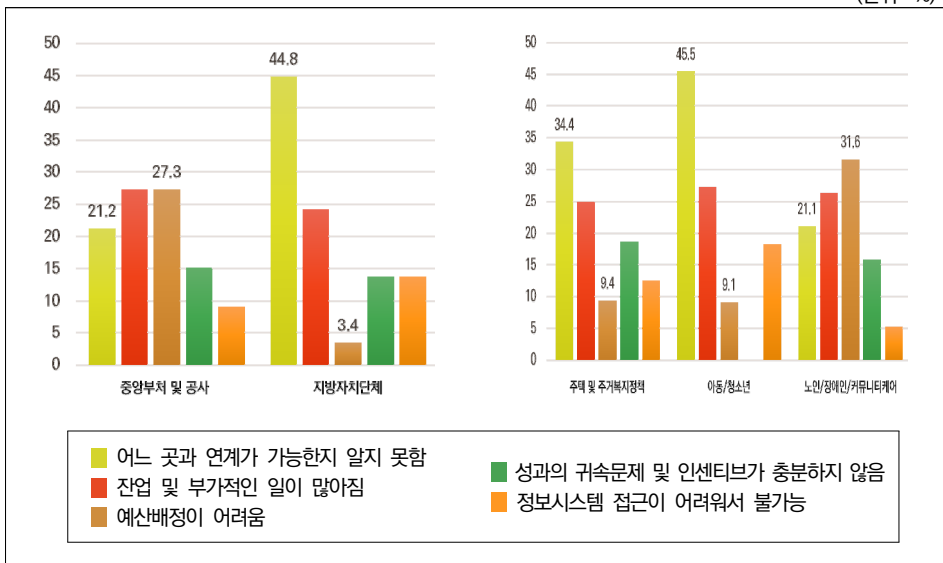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25 | 소속기관별 업무성격별 연계 협력시 어려운 점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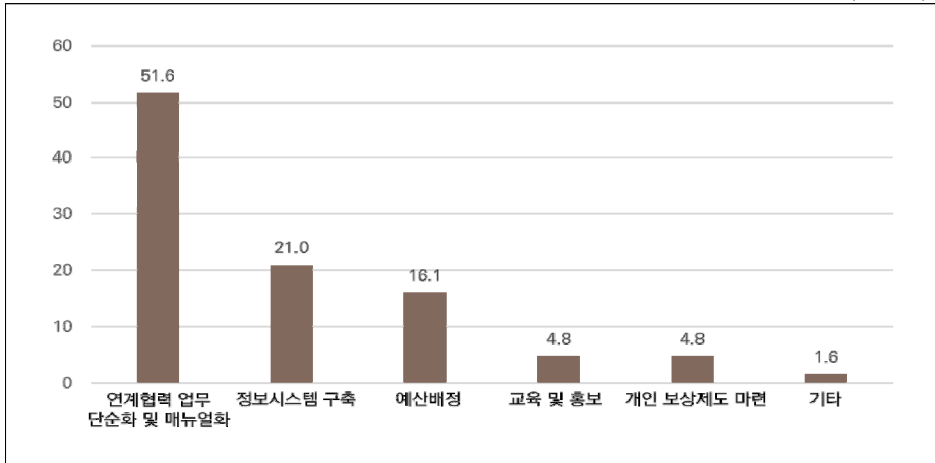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26 | 연계 협력시 필요한 것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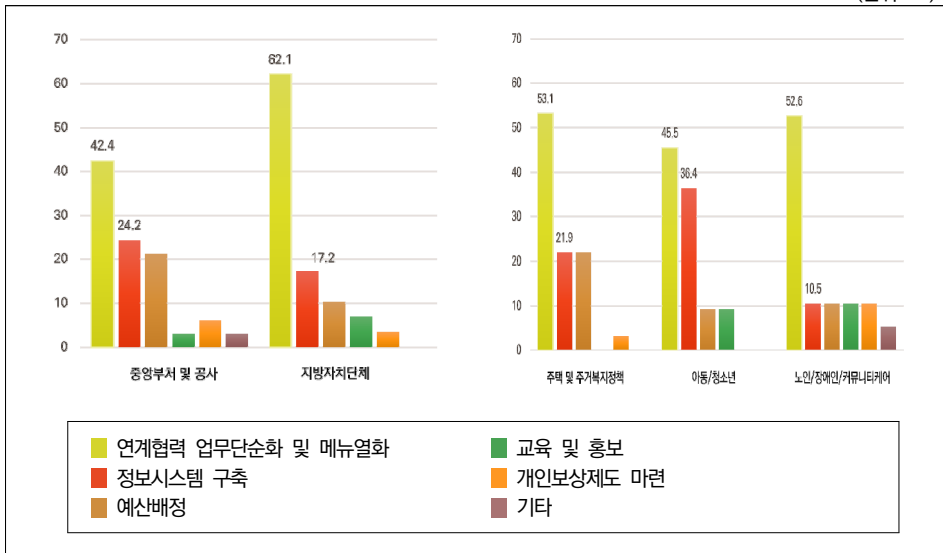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27 | 소속기관별 연계 협력시 필요한 것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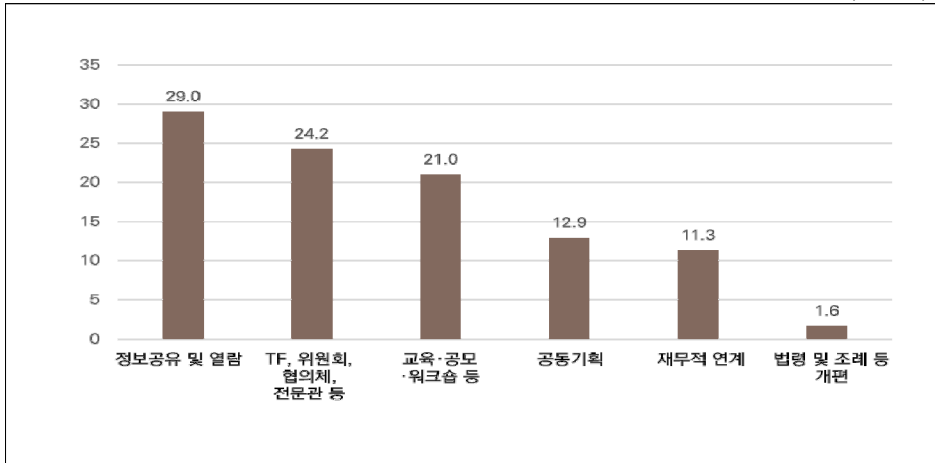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도 28 | 효율적인 연계추진 방법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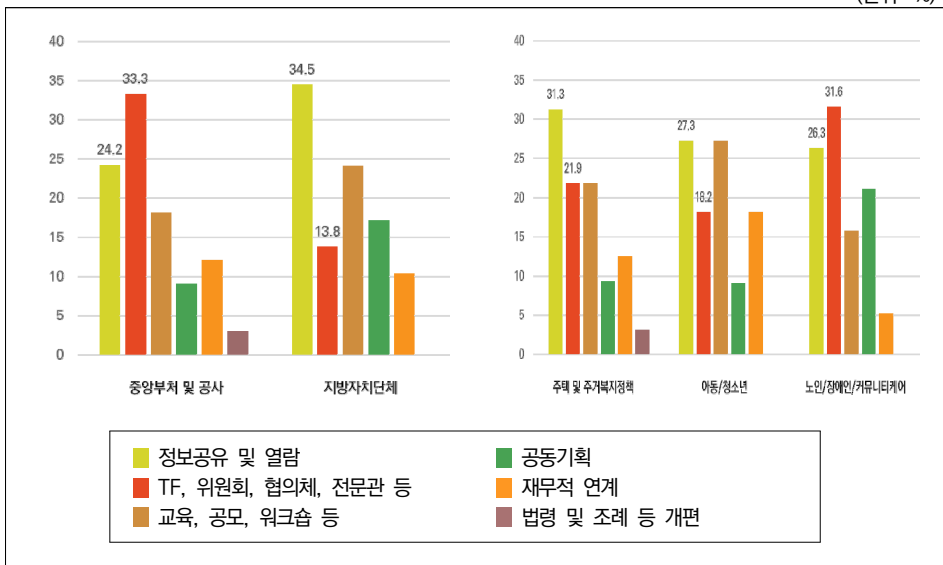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도 29 | 소속기관별 효율적인 연계추진 방법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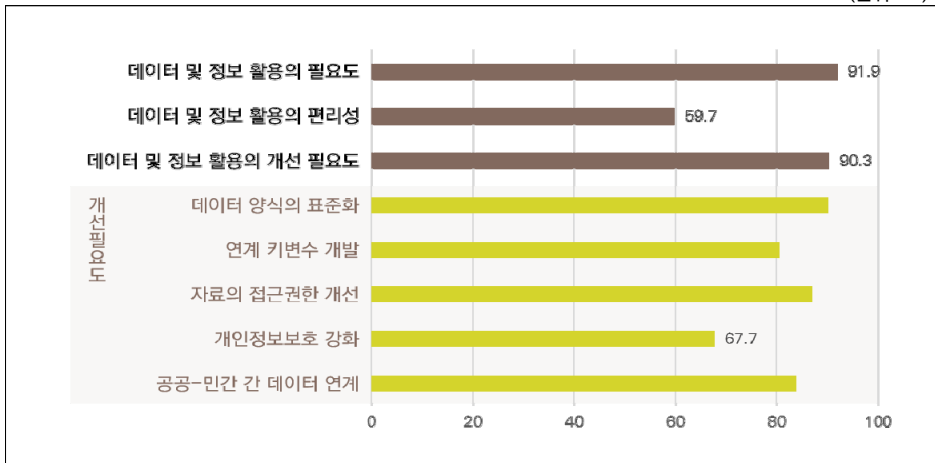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30 | 연계 협력을 위한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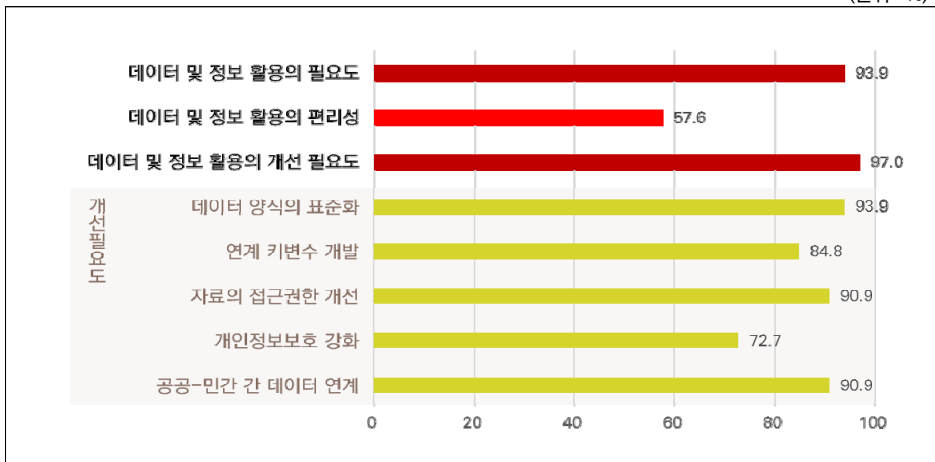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31 | 연계 협력을 위한 중앙부처 및 공사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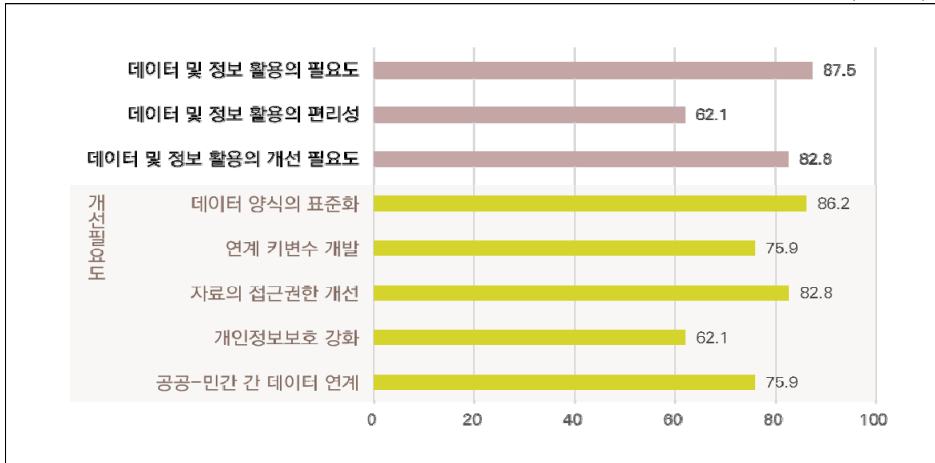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32 | 연계 협력을 위한 지자체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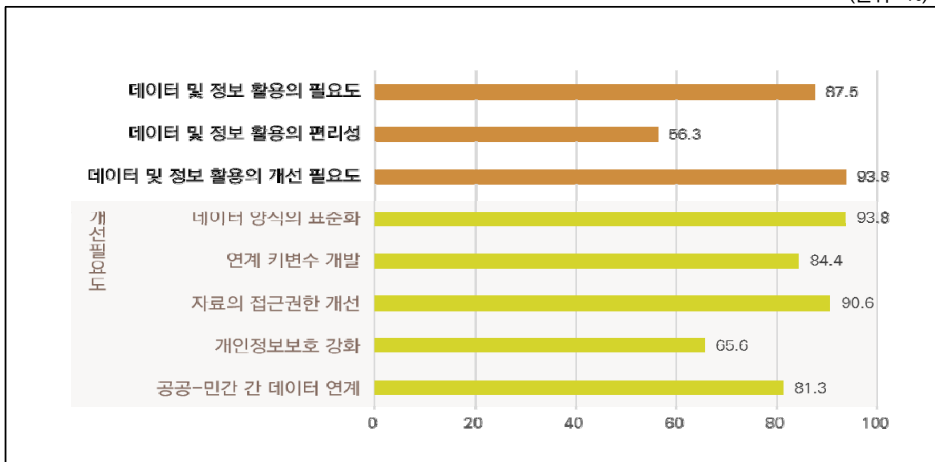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33 | 연계 협력을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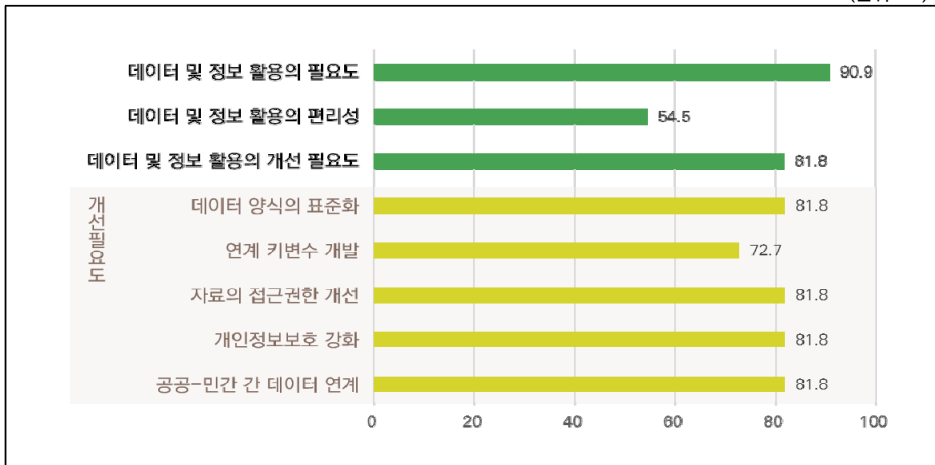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34 | 연계 협력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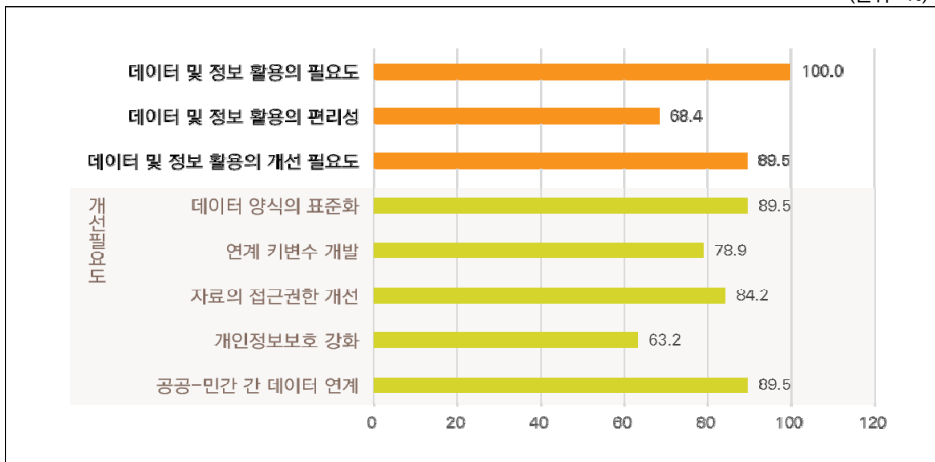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35 | 연계 협력을 위한 노인·장애인·커뮤니티 케어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본 20-16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저 자 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김정희, 임세희, 함영진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 행 2020년 11월 30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대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7,000원

---

I S B N 979-11-5898-581-3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0,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시십시오.

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김정희, 임세희, 함영진. 2020.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Enhancing inter Ministry Linkage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의 개념정립과 이슈

**제3장**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제4장** 노인·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연계 실태와 개선과제

**제5장**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연계 방향과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